



#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 NABO Fiscal Estimates&Tax Issues

### CONTENTS

재정추계&세제 동향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2023년 주요국의 세제개편 동향-소득세제·법인세제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해외 제도 운영 현황  
주요국의 빈집세 도입 현황

재정추계&세제 이슈 | 2024년 달라지는 조세제도  
2024년 육아휴직 관련 제도개선에 따른 재정소요분석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유류세 부담 및 유류세 인하 효과 분석



## Contents

<b>재정운용 실적</b>	<b>3</b>
2023회계연도 총세입 · 총세출 마감	4
2023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7
2023년 4분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동향	14
2023년 사회보험성기금 운용 실적	20
<b>재정추계&amp;세제 국내 동향</b>	<b>27</b>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28
<b>재정추계&amp;세제 해외 동향</b>	<b>37</b>
2023년 주요국의 세제개편 동향 - 소득세제 · 법인세제	38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해외 제도 운영 현황	46
주요국의 빈집세 도입 현황	55
<b>재정추계&amp;세제 이슈 및 분석</b>	<b>65</b>
2024년 달라지는 조세제도	66
2024년 육아휴직 관련 제도개선에 따른 재정소요분석	78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유류세 부담 및 유류세 인하 효과 분석	93
<b>한눈에 보는 조세 · 재정지표</b>	<b>99</b>



# 재정운용 실적

2023회계연도 총세입 · 총세출 마감  
2023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2023년 4분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동향  
2023년 사회보험성기금 운용 실적



# 2023회계연도 총세입 · 총세출 마감

태정림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2)

## 1. 총괄

2023회계연도 총세입 · 총세출 마감 결과, 총세입은 497.0조원, 총세출은 490.4조원으로 확정

-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5조원이며, 이월액 3.9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7조원 수준

표 1 2023회계연도 마감 결과

(단위: 조원)

구분	총세입(A)	총세출(B)	결산상 잉여금 (C=A-B)	이월 (D)	세계잉여금 (E=C-D)	
합계	FY2023(a)	497.0	490.4	6.5	3.9	2.7
	FY2022(b)	573.9	559.7	14.2	5.1	9.1
	증감(a-b)	△77.0	△69.3	△7.7	△1.2	△6.5
일반 회계	FY2023(a)	407.9	405.9	2.0	2.0	0.04
	FY2022(b)	493.9	485.0	8.8	2.8	6.0
	증감(a-b)	△85.9	△79.2	△6.8	△0.8	△6.0
특별 회계	FY2023(a)	89.0	84.5	4.5	1.9	2.6
	FY2022(b)	80.1	74.7	5.4	2.3	3.1
	증감(a-b)	9.0	9.8	△0.9	△0.4	△0.5

주: 구성항목별 합계는 억원 단위 반올림에 따른 단수조정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총세입 · 총세출 마감 결과」, 2024.2.8.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 총세입 및 총세출

2023회계연도 총세입<sup>1)</sup>은 497.0조원을 징수하여 전년 대비 77.0조원 감소하였고, 예산 대비로는 37.0조원 부족 수납

- 2023회계연도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전년 대비 51.9조원 감소, 예산 대비 56.4조원 부족 수납
  - ▶ 국세수입 실적 감소는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 자산시장 위축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소, 통관수입액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에 주로 기인
    - \* 전년실적 대비 증감액(조원): 법인세 △22.4,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6.9, 부가가치세 △7.9
- 세외수입은 152.9조원으로 전년 대비 25.1조원 감소하였으며, 공자기금 예수규모 확대 및 전년도 이월금 증가 등으로 인하여 예산 대비 19.4조원 초과 수납
  - \* 예산 대비 수납액(조원): 공자기금 예수금 9.6, 전년도 이월금 5.1, 세계잉여금 이입 4.5

표 2 2023회계연도 총세입 현황

(단위: 조원)

구분	총세입										총세입 증감	
	국세수입					세외수입						
	22년 결산	23년		증감		22년 결산	23년		증감		전년대비	예산대비
		예산	결산	전년대비	예산대비		예산	결산	전년대비	예산대비		
합계	395.9	400.5	344.1	△51.9	△56.4	178.0	133.5	152.9	△25.1	19.4	△77.0	△37.0
일반회계	385.2	390.3	333.9	△51.2	△56.3	108.7	56.0	74.0	△34.7	18.0	△85.9	△38.3
특별회계	10.8	10.2	10.1	△0.6	△0.1	69.3	77.5	78.9	9.6	1.4	9.0	1.3

주: 구성항목별 합계는 억원 단위 반올림에 따른 단수조정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24.2.8.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3회계연도 총세출은 490.4조원으로 전년 대비 69.3조원 감소

- 총세출은 490.4조원으로 예산현액 540조원 대비 90.8%의 집행률을 보임
- 불용액은 45.7조원(불용률 8.5%) 으로 국세수입 감소와 연동한 지방교부세(금) 감액조정(△18.6조원) 및 정부 내부거래(16.4조원), 그 외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실상 불용(10.8조원)으로 구성

1) 총세입은 총계기준으로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으로 총수입(총세입+기금수입-내부거래 및 보전거래)과 다른 개념임

표 3 2023회계연도 총세출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2년 결산	총세출		총세출 증감		이월 (C)	불용 (D=A-B-C)
		예산현액(A)	지출액(B)	전년대비	예산현액 대비		
합계	559.7	540.0	490.4	△69.3	△49.5	3.9	45.7
일반회계	485.0	449.1	405.9	△79.2	△43.2	2.0	41.2
특별회계	74.7	90.9	84.5	9.8	6.4	1.9	4.5

주: 구성항목별 합계는 억원 단위 반올림에 따른 단수조정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24.2.8.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최근 5년 불용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7.9	6.6	8.3	12.9	45.7
세입여건 변화	0.2	-	-	2.1	18.6
내부거래	3.6	3.4	3.1	3.4	16.4
사실상 불용	4.1	3.2	5.2	7.4	10.8

주: 구성항목별 합계는 억원 단위 반올림에 따른 단수조정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세계잉여금은 2.7조원으로 전년 대비 6.4조원 감소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364억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국가재정법」 제90조에 정해진 순서<sup>2)</sup>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국채상환 등으로 처리할 예정
-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6조원(전년 3.1조원)은 각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 따라 자체적으로 세입처리 예정

표 5 최근 5년 세계잉여금 규모

(단위: 조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2.1	9.4	23.3	9.1	2.7
일반회계	0.06	5.7	18.0	6.0	0.04
특별회계	2.1	3.6	5.3	3.1	2.6

자료: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24.2.8.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① 지방교부세 정산, ②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일반회계 세계잉여금 - ①]의 30% 이상), ③ 국채상환([일반회계 세계잉여금 - ① - ②]의 30% 이상)

# 2023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이정훈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7)

2023년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전년(395.9조원) 대비 51.9조원(△13.1%) 감소하였으며, 예산 대비로는 56.4조원(△14.1%) 부족 수납

- 국세수입은 2021~2022년 동안 연속하여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시험하였으나, 2023년은 기업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

▶ 최근 5년간 국세수입 증감률(전년 대비, %):

(‘19) △0.04 ⇒ (‘20) △2.7 ⇒ (‘21) 20.5 ⇒ (‘22) 15.1 ⇒ (‘23) △13.1

표 1 2023년 국세수입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22년 실적 (A)	'23년		'22년 실적 대비		'23년 예산 대비	
		예산 (B)	실적 (C)	증감액 (D=C-A)	증감률 (D/A)	차이 (E=C-B)	차이율 (E/B)
총국세	395.9	400.5	344.1	△51.9	△13.1	△56.4	△14.1
◦ 소득세	128.7	131.9	115.8	△12.9	△10.0	△16.0	△12.2
◦ 법인세	103.6	105.0	80.4	△23.2	△22.4	△24.6	△23.4
◦ 상속세·증여세	14.6	17.1	14.6	0.0	0.3	△2.5	△14.6
- 상속세	7.6	9.0	8.5	0.9	12.3	△0.4	△4.6
- 증여세	7.0	8.2	6.1	△0.9	△12.8	△2.1	△25.5
◦ 부가가치세	81.6	83.2	73.8	△7.9	△9.6	△9.4	△11.3
◦ 개별소비세	9.3	10.2	8.8	△0.5	△5.3	△1.4	△13.5
◦ 증권거래세	6.3	5.0	6.1	△0.2	△3.5	1.1	22.2
◦ 인지세	0.8	0.8	0.8	△0.0	△0.2	△0.0	△2.3
◦ 과년도수입	7.3	4.8	5.7	△1.6	△22.1	0.9	18.9
◦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11.1	10.8	△0.3	△2.5	△0.3	△2.7
◦ 관세	10.3	10.7	7.3	△3.0	△29.4	△3.4	△32.0
◦ 교육세	4.6	4.7	5.2	0.5	10.9	0.4	9.6
◦ 종합부동산세	6.8	5.7	4.6	△2.2	△32.4	△1.1	△19.5
◦ 주세	3.8	3.2	3.6	△0.2	△5.3	0.4	11.0
◦ 농어촌특별세	7.0	7.0	6.6	△0.5	△6.4	△0.4	△6.1

자료: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2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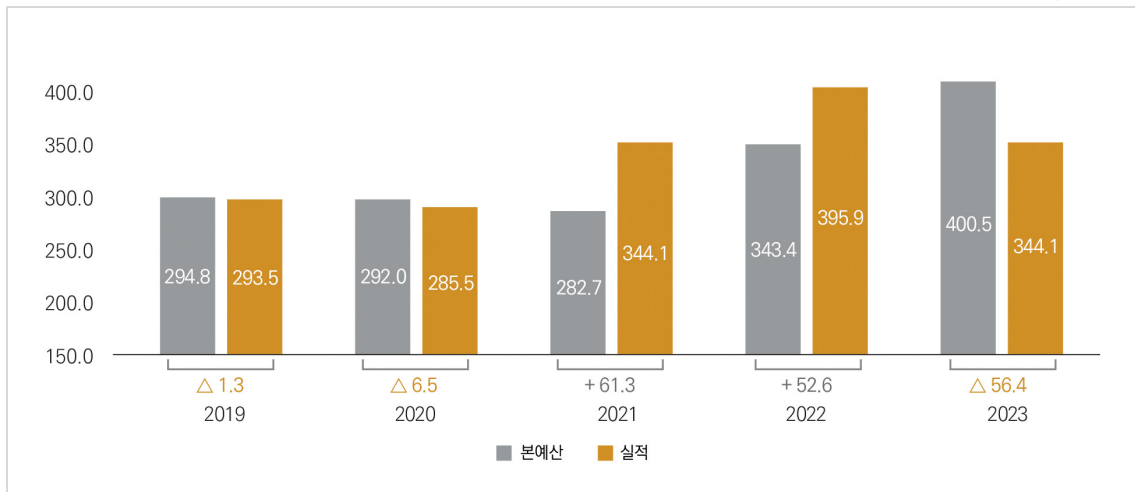


## 재정운용 실적

- 예산 대비로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2021~2022년 본예산 대비 50조원을 초과하는 초과세수를 시현했으나 2023년은 예산 대비 56.4조원(△14.1%) 부족 수납
  - ▶ 국세수입 예산과 실적 차이(본예산 대비, 조원) :  
('19) △1.3 ⇒ ('20) △6.5 ⇒ ('21) 61.3 ⇒ ('22) 52.6 ⇒ ('23) △56.4

그림 1 최근 5년간 국세수입 예산·실적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소득세(115.8조원)는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에 기인하여, 전년(128.7조원) 대비 12.9조원 (△10.0%) 감소**

- 세부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각 전년 대비 14.7조원(△45.5%), 2.5조원(△10.5%) 감소한 반면, 이자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2.6조원(98.2%), 1.7조원(3.0%) 증가

표 2 2023년 소득세 실적 상세

(단위: 조원, %)

구 분	'22년 실적 (A)	'23년		'22년 실적 대비		'23년 예산 대비	
		예산 (B)	실적 (C)	증감액 (D=C-A)	증감률 (D/A)	차이 (E=C-B)	차이율 (E/B)
· 소득세	128.7	131.9	115.8	△12.9	△10.0	△16.0	△12.2
- 종합소득세	23.9	24.7	21.4	△2.5	△10.5	△3.3	△13.3
- 양도소득세	32.2	29.7	17.6	△14.7	△45.5	△12.2	△40.9
- 근로소득세	57.4	60.6	59.1	1.7	3.0	△1.5	△2.4
- 이자소득세	2.6	2.7	5.2	2.6	98.2	2.5	93.3
- 그 외 소득세	12.5	14.1	12.5	△0.0	△0.1	△1.6	△11.4

- 양도소득세(17.6조원)는 부동산 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32.2조원) 대비 14.7조원(△45.5%) 감소
  - ▶ 부동산 매매건수 증감률(필지/동호수 기준, %): 토지 ('21) △5.6 → ('22) △37.8 → ('23) △12.8  
주택 ('21) △20.6 → ('22) △49.9 → ('23) 9.1
  - ▶ 부동산 가격 증감률(12월 가격 기준, %): 토지 ('21) 4.2 → ('22) 2.7 → ('23) 0.8  
주택 ('21) 9.9 → ('22) △4.7 → ('23) △3.5

그림 2 부동산 매매량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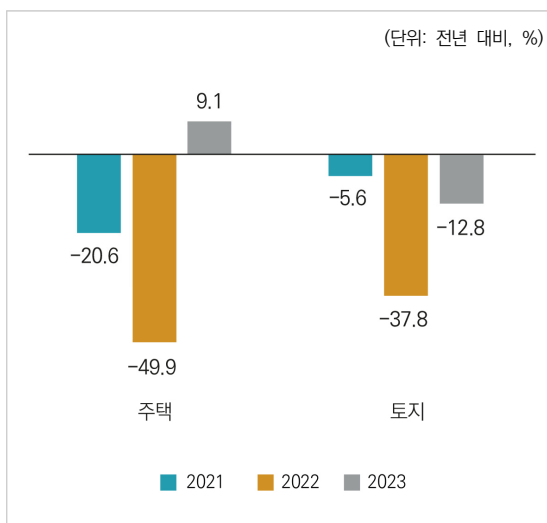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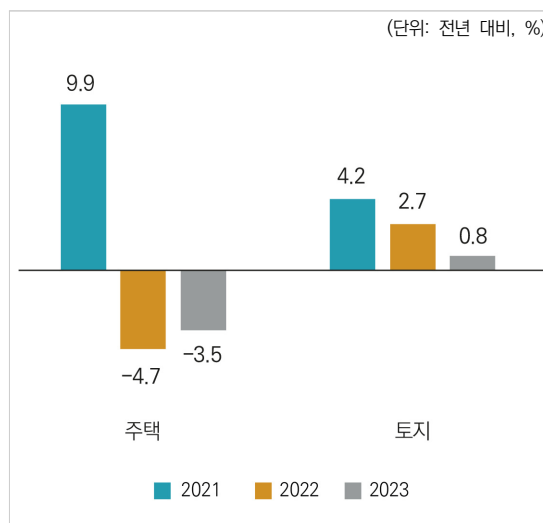


그림 3 부동산 가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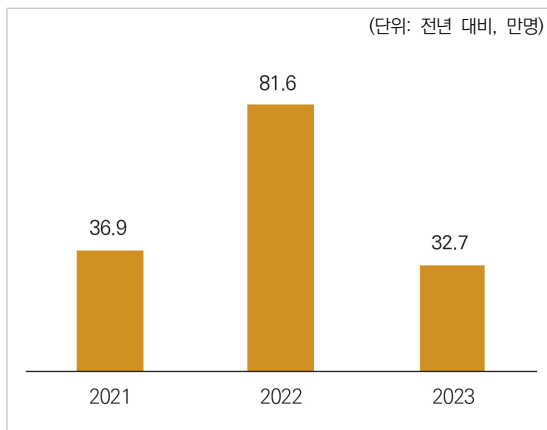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 재정운용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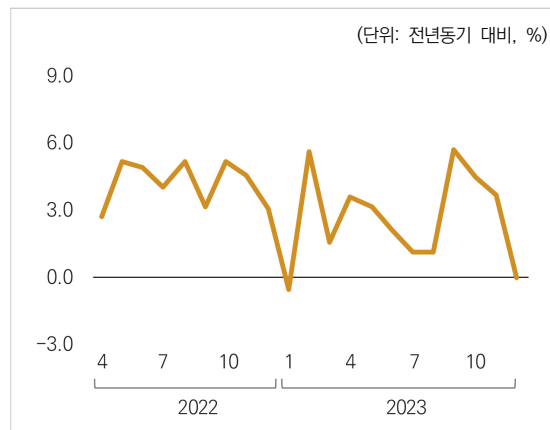
- 종합소득세(21.4조원)는 2022년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효과 및 소매판매 부진 등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23.9조원) 대비 2.5조원(△10.5%) 감소
  - ▶ 소매판매액(불변가격) 지수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1) 5.8 → ('22) △0.3 → ('23. 잠정치) △1.5
  - ▶ 비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1) 5.1 → ('22) 11.2 → ('23. 상반기) △3.1
- 근로소득세(59.1조원)는 취업자 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등에 따라 전년(57.4조원) 대비 1.7조원(3.0%) 증가
  - ▶ 취업자 수 증가(만명): ('21) 36.9 → ('22) 81.6 → ('23) 32.7
  - ▶ 명목임금 상승률(전년동기 대비, %): ('21) 4.6 → ('22) 4.9 → ('23) 2.5

그림 4 취업자 수 증감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경제활동인구」

그림 5 명목임금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이자소득세(5.2조원)는 예금 증가 및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2.6조원) 대비 2.6조원(98.2%) 증가
  - ▶ 예금은행 저축성예금말잔(조원): ('21) 1,511 → ('22) 1,623 → ('23) 1,670
  - ▶ 예금은행 수신금리(신규, 저축성, %): ('21) 1.08 → ('22) 2.77 → ('23) 3.71

## 법인세는(80.4조원)는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신고분 법인세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103.6조원) 대비 23.2조원 (△22.4%) 감소

- 신고분 법인세는 기업실적 악화로 전년 대비 26.6조원(△30.6%) 감소하였으나, 원천분 법인세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조원(20.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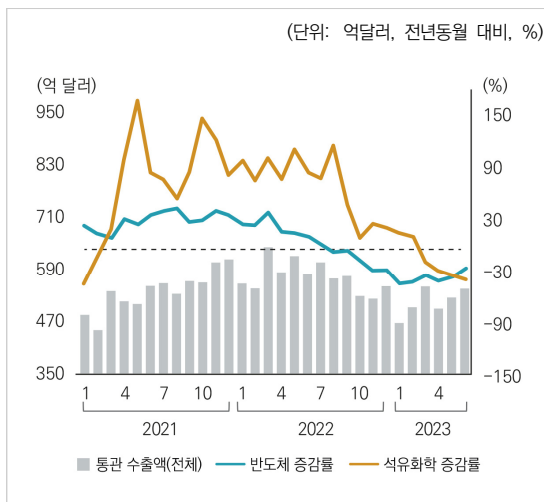
표 3 2023년 법인세 실적 상세

(단위: 조원, %)

구 분	'22년 실적 (A)	'23년		'22년 실적 대비		'23년 예산 대비	
		예산 (B)	실적 (C)	증감액 (D=C-A)	증감률 (D/A)	차이 (E=C-B)	차이율 (E/B)
· 법인세	103.6	105.0	80.4	△23.2	△22.4	△24.6	△23.4
- 신고분	87.0	87.1	60.4	△26.6	△30.6	△26.7	△30.7
- 원천분	16.6	17.9	20.0	3.5	20.8	2.1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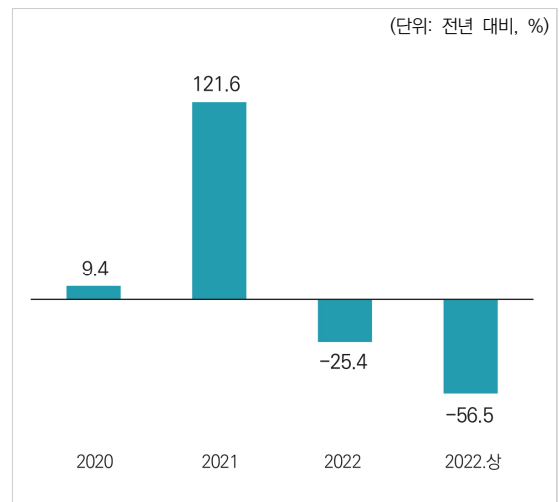
- 신고분 법인세(60.4조원)는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품목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및 2023년 상반기 기업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전년(87.0조원) 대비 26.6조원(30.6%) 감소
  - ▶ 통관 수출액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0) △5.5 → ('21) 25.7 → ('22) 6.1 → ('23. 상반기) △7.8
  -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비금융) 세전순이익 증감률(연결 기준, 전년동기 대비, %): ('20) 9.4 → ('21) 121.6 → ('22) △25.4 → ('23. 상반기) △56.5

그림 6 통관 수출액 추이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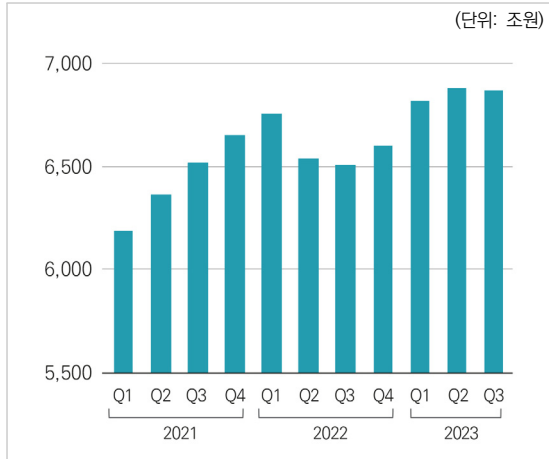
그림 7 유가증권 시장사 세전이익 증감률



자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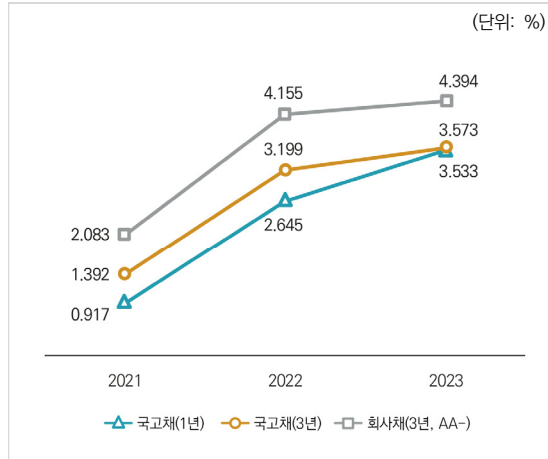
- 원천분 법인세(20.0조원)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16.6조원) 대비 3.5조원(20.8%) 증가
  - ▶ 법인 부문 비결제성예금·채권·지분증권 잔액(조원): ('21) 6,647 → ('22) 6,598 → ('23.3Q) 6,870
  - ▶ 회사채(3년, AA-) 금리(%): ('21) 2.083 → ('22) 4.155 → ('23) 4.394

그림 8 법인의 투자성 금융자산 잔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자금순환표」

그림 9 시장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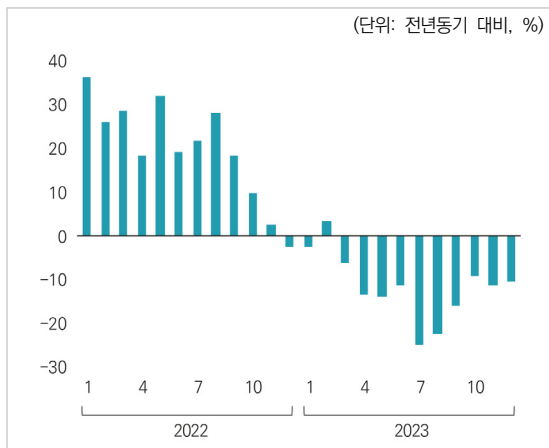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통화금융통계」

부가가치세(73.8조원)는 통관 수입액 감소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81.6조원) 대비 7.9조원(△9.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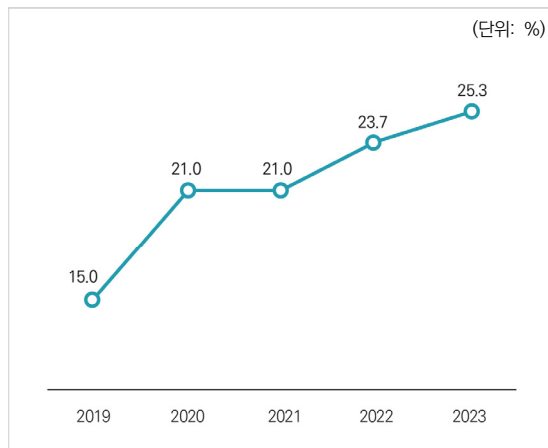
- 통관 수입액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1) 31.5 → ('22) 18.9 → ('23) △12.1  
 ▶ 참고로 통관 수입 감소의 영향을 받는 관세의 경우에도 큰 폭의 감소세(△3.0조원, △29.4%) 시현
- 지방소비세율(%): ('19) 15.0 → ('20~'21) 21.0 → ('22) 23.7 → ('23) 25.3

그림 10 통관 수입액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11 지방소비세율 추이



자료: 「지방세법」

**기타 소비관련 세목 중 유류 관련 세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는 유류세 인하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

- 교통·에너지·환경세(10.8조원)와 개별소비세(8.8조원)는 2023년에도 지속된 유류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각각 0.3조원(△2.5%), 0.5조원(△5.3%) 감소

**표 4 유류 관련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추이**

(단위: 원/ℓ, 원/kg)

세 목	품 목	'21.11.~'22.4.	'22.5.~6.	'22.7.~12.	'23.1.~
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	423.0	370.0	332.5	396.7
	경유	300.0	263.0	238.0	238.0
개별소비세	부탄	220.0	193.0	176.4	176.4
세 목	품 목	~'22.7.		'22.8.~	
개별소비세	발전용유연탄	저발열	43.0	36.5	
		중발열	46.0	39.1	
		고발열	49.0	41.6	
	일반 발전용 LNG	12.0	10.2		

**기타 재산관련 세목은 금리상승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과 제도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

- 종합부동산세(4.6조원)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및 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6.8조원) 대비 2.2조원(△32.4%) 감소
  - ▶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전국 평균, 전년 대비): 토지 △5.7%, 단독주택 △7.5%, 공동주택 △17.3%
  - ▶ 2022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sup>1)</sup>의 주요 내용
    - 주택분 과세기준액 상향: (1세대 1주택자) 11 → 12억원, (개인 일반) 6 → 9억원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개인) 2주택 이하 0.1~0.3%p ↓, 3주택 이상 0.7~1.0%p ↓  
(법인) 2주택 이하 0.3%p ↓, 3주택 이상 1.0%p ↓
- 증여세(6.1조원)는 증여건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7.0조원) 대비 0.9조원(△12.8%) 감소
  - ▶ 증여건수 증감률(필지/동호수 기준, %): 토지 ('21) 0.8 → ('22) △21.0 → ('23) △29.5  
주택 ('21) △10.0 → ('22) △30.9 → ('23) △24.5

1) [시행 2023. 1. 1.] [법률 제19200호, 2022. 12. 31., 일부개정]

# 2023년 4분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동향

윤 주 철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5)

## 1. 국가채무 현황

2023년 11월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1,109.5조원이며, 이 중 국고채 잔액은 1,016.1조원, 주택채 잔액은 80.6조원, 외평채 잔액은 11.4조원 수준

-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78.6조원 증가(발행 161.7조원, 상환 83.1조원), 주택채 잔액은 1.6조원 감소(발행 12.3조원, 상환 13.9조원), 외평채 잔액은 0.4조원 감소<sup>1)</sup>

※ 2023년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기금 결산(2월 말)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 예정

표 1 국가채무(중앙정부) 현황

(단위: 조원)

연월	중앙정부 채무	(GDP 대비, %)	국채 합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국고채권	국민주택 채권	외평채권			
2020	819.2	(42.4)	815.2	726.8	78.9	9.5	3.3	0.7
2021	939.1	(45.6)	937.0	843.7	82.2	11.2	2.0	0.1
2022	1,033.4	(48.1)	1,031.5	937.5	82.2	11.8	1.9	0.1
2023예산	1,101.7	(49.0)	1,100.3	999.0	86.8	14.5	1.2	0.2
2023.1.	1,047.4	—	1,045.4	952.0	81.9	11.5	1.9	0.1
2023.2.	1,061.0	—	1,059.1	965.1	81.8	12.3	1.8	0.1
2023.3.	1,053.6	—	1,051.8	958.1	81.5	12.2	1.7	0.1
2023.4.	1,072.7	—	1,070.9	975.6	82.6	12.6	1.7	0.1
2023.5.	1,088.7	—	1,087.1	993.4	81.3	12.3	1.5	0.1
2023.6.	1,083.4	—	1,081.9	988.4	81.2	12.3	1.4	0.1
2023.7.	1,097.8	—	1,096.6	1,003.7	80.9	12.0	1.1	0.1
2023.8.	1,110.0	—	1,108.6	1,015.3	81.0	12.4	1.3	0.1
2023.9.	1,099.6	—	1,098.2	1,004.4	82.0	11.8	1.3	0.1
2023.10.	1,105.5	—	1,104.2	1,011.6	80.8	11.9	1.3	0.1
2023.11.	1,109.5	—	1,108.1	1,016.1	80.6	11.4	1.3	0.1

주: 1. 국채 합계에는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 등의 금액이 포함됨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단순합계 및 단순차감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3년 11월호)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4년 2월호

## 2. 국고채 발행 현황

2023년 국고채 총 발행 계획은 167.8조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적자국채) 등 순증 규모는 61.5조원, 차환 규모는 106.3조원

- 2023년 국고채 총 발행 실적은 165.7조원이며, 2023년 12월 기준 국고채 잔액은 998.0조원

표 2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월별 실적

(단위: 조원)

	2022 계획	실적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잔액	937.5	858.7	877.6	885.7	904.3	921.9	910.3	923.6	933.4	931.4	940.7	948.9	937.5	—
발행	177.3	15.4	19.3	18.5	18.9	17.8	14.6	15.6	12.1	11.9	11.2	9.5	3.8	168.6
상환	80.1	0.4	0.4	10.4	0.3	0.2	26.1	2.3	2.3	12.0	3.8	1.3	15.2	74.8
	2023 계획	실적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잔액	999.0	952.0	965.1	958.1	975.6	993.4	988.4	1008.7	1015.3	1004.4	1011.6	1016.1	998.0	—
발행	167.8	14.8	13.4	17.8	17.9	18.1	16.7	17.6	14.9	13.2	10.5	6.9	4.0	165.7
상환	106.3	0.3	0.3	24.8	0.3	0.3	21.8	2.3	3.3	24.1	3.3	2.3	22.1	105.2

주: 1. 2023년 계획은 본예산 기준이며, 1~12월은 월 실적 기준임

2. 2022년 상환 계획(80.1조원)에는 순상환 계획(7.5조원)이 포함되어 있어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의 2022년 차환 계획(72.6조원)보다 큼

3. 2022년 상환 실적(74.8조원)에는 순상환 실적(3.4조원)이 포함되어 있어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의 2022년 차환 실적(71.4조원)보다 큼

자료: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4년 2월호)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채(적자국채)의 발행 수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위탁되는데, 2023년 계획은 45.8조원으로 전액 집행

표 3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연간 실적

(단위: 조원)

	2019 실적	2020 실적	2021 실적	2022			2023	
				본예산	추경	실적	본예산	실적
총 발행	101.7	174.5	180.5	166.0	177.3	168.6	167.8	165.7
순증	44.5	115.3	120.6	93.4	104.7	97.3	61.5	61.5
(일반회계 적자보전)	(34.3)	(102.8)	(88.2)	(76.2)	(91.2)	(86.2)	(45.8)	(45.8)
차환	57.2	59.2	59.9	72.6	72.6	71.4	106.3	104.2

자료: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2022.12.26.) 및 「1월 국고채 11.0조원 경쟁입찰 발행 계획」(2023. 12. 28.)



### 3. 일반회계 적자보전 현황

2023년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채(적자국채) 발행 실적은 45.8조원으로 계획 대비 전액 집행하였으나, 세수 결손으로 인해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9.6조원을 추가로 보전하여 총 55.4조원 보전

- 2023년 3분기까지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채 발행 계획 45.8조원 전액 집행
- 세수 결손으로 인해 2023년 4분기에 외환평형기금 등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9.6조원 추가 보전(총 55.4조원)

표 4 일반회계 적자보전 계획 및 월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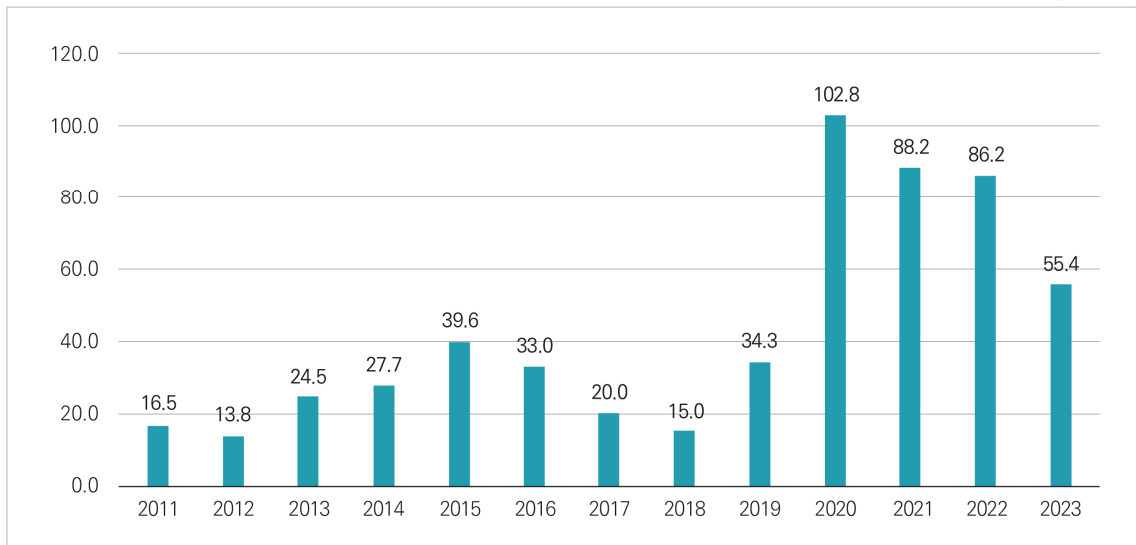
(단위: 조원)

2022	실적													합계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1.2	—	16.0	12.0	10.5	11.5	10.0	—	13.0	1.0	—	—	12.2	86.2
2023	실적													합계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5.8	4.0	6.0	12.0	4.0	4.0	4.0	4.0	4.0	3.8	—	5.6	4.0	55.4

주: 2023년의 경우 계획은 당초계획 기준이며, 1~12월은 월 실적 기준임  
 자료: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1 일반회계 적자보전 추이: 2011~2023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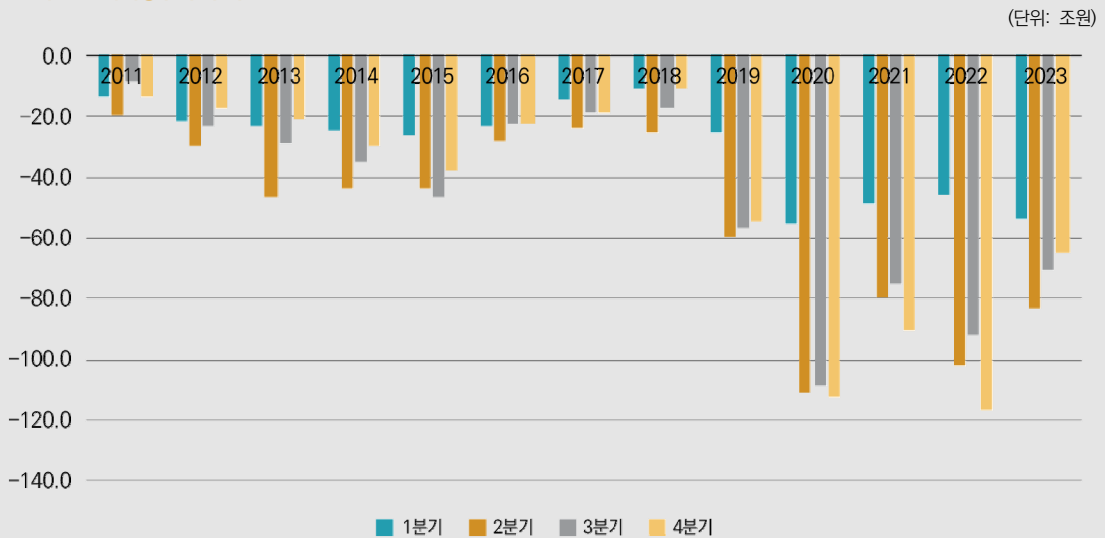


자료: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 분기별 관리재정수지 및 부족자금의 조달 현황**

-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11월 기준으로 19.5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64.9조원 적자이며, 이러한 적자에 대해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및 기금 여유자금 활용 등을 통해 부족자금 조달
  - 2023년의 경우 세수 결손으로 인해 4분기(11월 기준)에도 수지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뿐 아니라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 등을 통하여 추가로 보전

**■ 분기별 관리재정수지 추이: 2011~2023 ■**



주: 2023년의 경우 4분기는 11월 기준임  
 자료: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참고로,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 조달을 위해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금은 대부분 연내 상환되며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음\*
  - 일시적인 부족자금 조달은 재정수입의 수납 추이와 재정지출 소요 등을 고려할 때 주로 1~3분기에 이루어짐
  - 2023년의 경우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재정증권 발행은 44.5조원,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113.6조원이었으며, 4분기(12월)에 4.0조원을 추가로 일시차입함

\*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2023년 월별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 현황

(단위: 조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재정증권 발행	—	4.0	5.0	4.0	7.5	6.0	6.0	7.5	4.5	—	—	—	44.5
한국은행 일시차입	3.5	16.5	28.1	17.1	6.1	15.9	13.6	12.8	—	—	—	4.0	117.6

주: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국고금 통합계정에 대한 월별 대출금액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 4. 국고채 금리 동향

2023년 12월 기준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는 3.52%로 2023년 10월 이후 하락하였으며, 연간 기준 2023년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3.57% 수준

표 5 최근 국고채 금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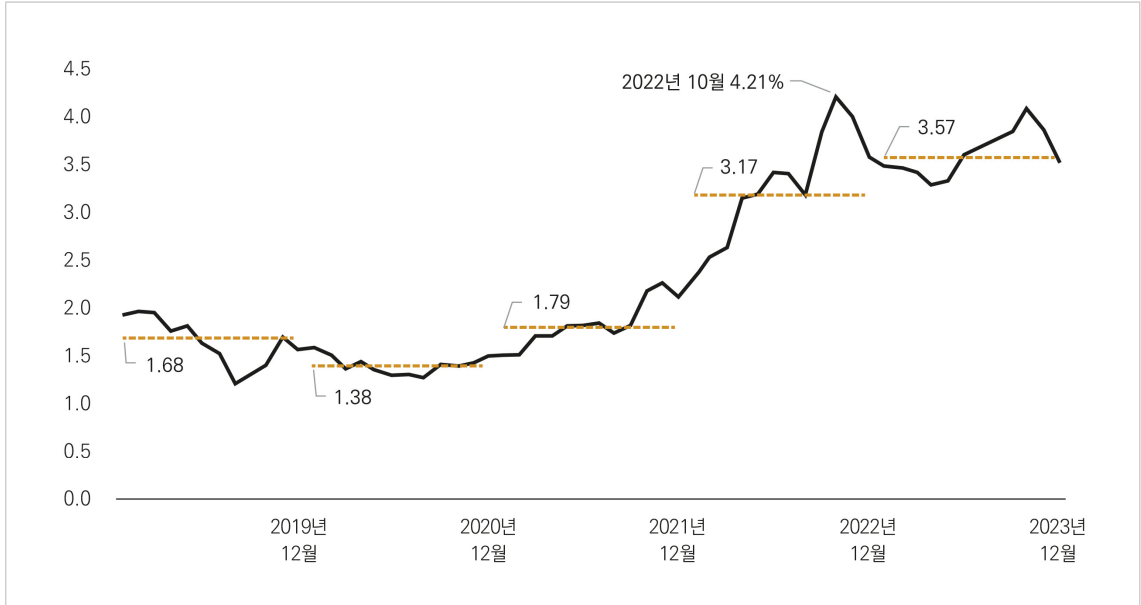
(단위: %)

	2022	202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조달금리	3.17	3.48	3.46	3.41	3.28	3.33	3.59	3.67	3.74	3.84	4.07	3.87	3.52	
평균 유통금리	3년물	3.722	3.325	3.797	3.270	3.293	3.459	3.548	3.681	3.711	3.884	4.085	3.583	3.154
	5년물	3.743	3.299	3.829	3.274	3.292	3.450	3.552	3.697	3.750	3.942	4.203	3.621	3.156
	10년물	3.730	3.297	3.753	3.340	3.360	3.532	3.611	3.761	3.821	4.030	4.325	3.699	3.183
	30년물	3.683	3.307	3.588	3.340	3.364	3.598	3.659	3.657	3.731	3.896	4.069	3.562	3.088

자료: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4년 2월호)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2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 추이

(단위: %)



주: 실선은 월 기준 평균 조달금리, 점선은 연평균 조달금리를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의 「국채백서」(각연도)와 「월간 재정동향」(2024년 2월호)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3년 사회보험성기금 운용 실적

이 미 연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61)

남 희 추계세제분석관 (02-6788-3737)

김 우 림 추계세제분석관 (02-6788-3738)

## 1. 사회보험성기금 재정수지 현황

사회보험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사학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하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총 6개 기금을 말함

- 사회보험성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기금으로 가입자의 기여금, 사용자 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급여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
  - ▶ 참고로, 2023년 기준 총 68개의 기금이 있고 기획재정부는 사업성·사회보험성·금융성·계정성으로 구분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최근 5년(2019~2023년) 간 재정수지가 42.7조원 흑자에서 48.4조원 흑자로 확대되었고, 적립금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22년에 전년 대비 58.2조원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1,035.8조원으로 나타남

- 다만, 동 기간 국민연금기금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14.2%)이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7.4%)을 상회

사학연금기금은 최근 5년(2019~2023년) 간 적립금이 20.7조원에서 26.4조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2021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과 마찬가지로 동 기간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6.7%)이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2.8%)을 상회

공무원 및 군인연금기금은 적립금이 소진되어 재정수지 적자를 국가가 보전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는 2019년  $\Delta$ 2.1조원에서 2023년  $\Delta$ 5.9조원으로 적자규모가 확대

-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수급자의 연금액을 동결하여 적자가 2조원대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게 되어 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 특히,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0년까지 0.7~1.5% 범위로 유지되었으나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5%로 최근 3년 동안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적자 확대에 영향을 미침

사회보험성기금 중 보험성 기금인 산재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은 2023년 각각 1.2조원과 1.5조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는 2019~2021년 사업비 지출 확대로 인해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22년 이후 보험료 등 자체수입 증가와 사업비 감소 등으로 인해 흑자 전환

표 1 사회보험성기금 재정수지 현황: 2019~2023년

(단위: 조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가율
국민연금기금	수입	66.3	72.4	94.0	87.6	88.3	7.4
	지출	23.5	26.5	29.9	34.9	39.9	14.2
	재정수지	42.7 (2.2)	45.9 (2.4)	64.1 (3.1)	52.7 (2.4)	48.4 (2.2)	-
	적립금	736.7 (38.3)	833.7 (43.0)	948.7 (45.6)	890.5 (41.2)	1,035.8 (46.3)	8.9
사학연금기금	수입	5.9	6.2	7.6	7.3	6.6	2.8
	지출	4.7	5.2	5.5	5.7	6.1	6.7
	재정수지	1.2 (0.1)	1.0 (0.1)	2.1 (0.1)	1.6 (0.1)	0.5 (0.0)	-
	적립금	20.7 (1.1)	23.2 (1.2)	26.0 (1.2)	24.0 (1.1)	26.4 (1.2)	6.3
공무원연금기금	수입	18.9	20.1	20.0	20.5	21.5	3.3
	지출	21.0	22.7	23.2	24.9	27.4	6.9
	재정수지	△2.1 (△0.1)	△2.6 (△0.1)	△3.2 (△0.2)	△4.4 (△0.2)	△5.9 (△0.3)	-
	적립금	12.0 (0.6)	13.3 (0.7)	15.2 (0.7)	15.1 (0.7)	15.7 (0.7)	6.9
군인연금기금	수입	1.8	1.9	1.9	2.0	2.0	2.7
	지출	3.4	3.5	3.5	3.7	4.1	4.8
	재정수지	△1.6 (△0.1)	△1.6 (△0.1)	△1.6 (△0.1)	△1.8 (△0.1)	△2.1 (△0.1)	-
	적립금	1.2 (0.1)	1.3 (0.1)	1.4 (0.1)	1.2 (0.1)	1.0 (0.0)	△4.5
산재보험기금	수입	8.1	8.3	9.5	9.0	10.3	6.2
	지출	6.5	7.1	8.0	8.4	9.1	8.8
	재정수지	1.6 (0.1)	1.2 (0.1)	1.5 (0.1)	0.6 (0.0)	1.2 (0.1)	-
	적립금	19.5 (1.0)	20.7 (1.1)	22.2 (1.1)	22.8 (1.1)	24.0 (1.1)	5.3
고용보험기금	수입	11.9	19.8	20.0	18.8	18.5	11.7
	지출	14.0	20.5	21.1	18.1	17.1	5.1
	재정수지	△2.1 (△0.1)	△0.6 (0.0)	△1.1 (△0.1)	0.7 (0.0)	1.5 (0.1)	-
	적립금	7.4 (0.4)	6.7 (0.3)	5.6 (0.3)	6.3 (0.3)	7.8 (0.3)	1.3

주: 1. 각 연도별 결산기준으로 작성하였고,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2023년은 잠정치이며 괄호는 GDP 대비 비율

2. 공무원·군인연금기금의 경우, 내부거래인 국가보전금을 수입에서 제외하여 재정수지 산출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 사회보험성기금 운용자산 배분 현황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기금은 운용자산을 금융·복지·기타부문으로 구성하여 운용하고, 산재 및 고용보험기금은 전액 금융부문으로 구성

- 군인연금기금은 복지부문에 자산을 배분하지 않고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및 체육시설의 운영 수입 등을 재원으로 군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운용

표 2 사회보험성기금 운용자산 배분 현황: 2023년

(단위: 조원, %)

구분	국민		사학		공무원		군인		산재		고용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기금자산 계	1,035.80	100.00	26.90	100.00	21.40	100.00	1.04	100.00	25.10	100.00	8.20	100.00
금융부문	1,035.20	99.94	23.90	88.85	7.80	35.05	0.74	71.15	25.10	100.00	8.20	100.00
복지부문	0.20	0.02	2.20	8.18	11.20	52.34	-	-	-	-	-	-
기타부문	0.40	0.04	0.80	2.97	2.30	12.61	0.30	28.85	-	-	-	-

주: 복지부문은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복지시설에 투자하고, 기타부문은 공단회관취득비, 임차보증금, 부동산 등이 해당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최근 5년간(2019~2023년) 금융부문 운용자산의 배분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사학연금기금은 주식에 배분하는 비중을 늘리거나 높게 유지하고 다른 4개 사회보험성기금은 채권에 가장 많은 자산을 배분하여 운용

- 금융부문의 자산은 일반적으로 주식, 채권, 대체투자<sup>1)</sup>, 단기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되며 동 기간 국민연금기금은 금융부문 운용자산 내 채권의 비중이 감소(47.71% → 38.61%)한 반면, 주식의 비중은 증가(40.59% → 45.25%)
- 사학연금기금은 주식과 채권 모두 금융부문 운용자산 내 비중이 감소(주식 39.89% → 37.66%, 채권 38.25% → 36.4%)한 반면, 대체투자 비중은 증가(21.31% → 24.69%)
- 공무원 및 군인연금기금은 책임준비금의 역할을 고려하여 채권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단기자금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2023년 기준 각각 14.43%, 26.04%를 기록
- 산재보험기금은 2023년 기준 사업비 지출 대응 등을 목적으로 전년 대비 단기자금의 비중이 확대
-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2020~2022년) 시기 목적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단기자금의 비중이 높아졌으나, 2023년의 경우 직전연도와 단기자금의 규모는 유사하지만 단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재정수지 개선 등을 고려하여 다소 감소한 상황임

1) 대체투자는 주식, 채권 등 전통적 투자자산에 비하여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나타내는 투자대상으로 부동산, 인프라, 사모투자 등을 말함

표 3 사회보험성기금 금융부문 운용자산 배분 현황: 2019~2023년

(단위: 조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국민연금기금	주식	298.79	40.59	369.45	44.34	422.43	44.56	366.27	41.16	468.40	45.25
	채권	351.21	47.71	370.98	44.53	403.89	42.60	374.47	42.08	399.70	38.61
	대체투자	84.30	11.45	90.66	10.88	119.31	12.58	146.23	16.43	164.20	15.86
	단기자금	1.78	0.24	2.05	0.25	2.48	0.26	2.02	0.23	2.48	0.24
	기타	-	-	-	-	-	-	0.85	0.09	0.41	0.04
사학연금기금	주식	7.30	39.89	8.90	42.58	10.00	42.55	8.40	39.25	9.00	37.66
	채권	7.00	38.25	7.30	34.93	8.20	34.89	7.40	34.58	8.70	36.40
	대체투자	3.90	21.31	4.30	20.57	5.00	21.28	5.30	24.77	5.90	24.69
	단기자금	0.10	0.55	0.40	1.91	0.30	1.28	0.30	1.40	0.30	1.26
공무원연금기금	주식	2.81	31.61	2.75	33.50	2.32	28.64	1.51	24.35	2.10	26.82
	채권	3.75	42.18	3.22	39.22	2.90	35.80	2.21	35.65	2.43	31.03
	대체투자	1.65	18.56	1.89	23.02	2.09	25.80	2.18	35.16	2.17	27.71
	단기자금	0.68	7.65	0.35	4.26	0.79	9.75	0.30	4.84	1.13	14.43
군인연금기금	주식	0.20	18.18	0.16	13.91	0.19	15.57	0.19	16.38	0.16	16.67
	채권	0.56	50.91	0.71	61.74	0.75	61.48	0.67	57.76	0.53	55.21
	대체투자	0.01	0.91	0.01	0.87	0.01	0.82	0.02	1.72	0.02	2.08
	단기자금	0.33	30.00	0.27	23.48	0.27	22.13	0.28	24.14	0.25	26.04
산재보험기금	주식	7.15	34.38	9.25	41.74	8.17	36.52	7.49	34.82	9.09	36.23
	채권	11.01	52.93	10.27	46.34	10.74	48.01	10.26	47.70	11.82	47.11
	대체투자	2.07	9.95	2.10	9.48	2.62	11.71	2.98	13.85	3.16	12.59
	단기자금	0.57	2.74	0.54	2.44	0.84	3.76	0.78	3.63	1.02	4.07
고용보험기금	주식	2.33	29.76	1.01	14.37	0.43	7.39	0.40	6.24	0.87	10.60
	채권	3.81	48.66	3.07	43.67	3.20	54.98	3.65	56.94	5.01	61.02
	대체투자	1.16	14.81	1.13	16.07	1.12	19.24	1.08	16.85	1.01	12.30
	단기자금	0.53	6.77	1.82	25.89	1.07	18.38	1.28	19.97	1.32	16.08

주: 1. 2019~2022년은 결산기준이고 2023년은 잠정치

2.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해외채권 환헤지를 위한 통화선도 평가금액은 채권(해외채권) 평가금액에 포함하고, 통화선도 평가금액 중 자산군에 배분되지 않는 전술적외환익스포저, 전술적통화구성 평가금액은 기타로 분류

3. 군인연금기금의 경우 단기자금에는 확정금리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운용평잔 기준으로 작성되어 표2의 운용자산 배분현황과 차이가 있음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 3. 사회보험성기금 운용 실적

사회보험성기금의 운용수익은 주요 수입 항목의 하나로서 해당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에 일부 기여할 수 있으며, 6개 사회보험성기금별로 운용방식과 목적 등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유의할 필요 있음

-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부분적립방식<sup>2)</sup>으로 운영 중이고, 공무원 및 군인연금기금<sup>3)</sup>은 도입 시에는 적립방식이었으나 성숙단계 진입 후 지출 증가로 국가 등이 적자를 보전하는 부과방식<sup>4)</sup> 형태로 전환하여 책임준비금으로서 적립금을 보유 중
- 산재보험기금은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책임준비금 초과금액은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구조이며, 고용보험기금도 대량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적정규모의 여유자금을 적립
  - ▶ 산재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은 보험성 기금으로 장래의 급여지급에 대비하여 적립금을 보유 중이며,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지출구조의 특성상 단기상품의 비중이 높은 측면이 있음

2023년 사회보험성기금의 금융부문 운용수익률을 살펴보면, 6개 기금 모두가 2022년 경기침체 등에 따른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반등하여 플러스로 전환

- 2023년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수익률은 13.6%이고, 사학연금기금은 13.5% 기록
  - \*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2023년 말까지 기금 운용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9%, 운용 누적 수익금은 총 578조원
- 공무원·군인연금기금의 경우, 일시적인 과다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동성은 크고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단기자금을 자산을 높게 배분하며 2023년 기준 각각 9.3%, 7.9%의 기금운용수익률 기록
- 산재보험기금의 경우, 최근 5년간(2019~2023년) 수익률은 최저 △8.4%에서 최고 12.3%로 약 20.7%p 증감을 보였고, 고용보험기금은 최저 △0.9%에서 최고 7.1%로 약 8.0%p의 변동 폭을 보임

금융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식과 채권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성이 컸으나, 대체투자 및 단기자금의 수익률은 큰 하락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

- 대표적인 예로 공무원연금기금을 살펴보면, 주식은 최저 △18.9%에서 최고 23.3%로 변동성이 42.2%p까지 나타나고 대체투자는 수익률이 7.2~18.5%로 마이너스 수익률 없이 11.3%p의 변동 폭을 보임
  - ▶ 다만, 군인연금기금은 대체투자의 수익률이 최저 △16.1%에서 최고 16.4%로 32.5%p의 범위로 변동 폭을 보였고, 단기자금의 수익률은 0.8~3.8% 범위로 유지

2) 부분적립방식이란 당해연도 수입의 일부를 급여로 지출하고 남은 부분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방식을 가리킴.

3) 군인연금기금은 제도 초기 전역자(96,000명)에 대해 소급기여금을 면제하여 재직자 기여금과 특별회계로 연금을 지급하는 사실상 부과방식으로 출발

4) 부과방식은 일정기간의 비용을 동기간 내에 조달하며, 적립금은 일시적 과다지출에 대비한 책임준비금으로 운영

표 4 사회보험성기금 금융부문 운용수익 현황: 2019~2023년

(단위: 조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운용수익	수익률	운용수익	수익률	운용수익	수익률	운용수익	수익률	운용수익	수익률
국민연금기금	주식	51.68	21.9	65.31	21.4	69.47	19.2	△70.30	△16.3	87.35	23.3
	채권	14.20	4.3	4.80	1.4	△0.62	△0.2	△21.91	△5.5	30.58	7.7
	대체투자	7.56	9.6	2.11	2.4	22.42	23.8	11.62	8.9	8.83	5.8
	단기자금	0.04	1.5	0.00	△0.1	0.05	1.1	△0.03	△0.9	0.18	4.2
	소계	73.41	11.3	72.14	9.7	91.21	10.8	△79.57	△8.2	126.69	13.6
사학연금기금	주식	1.10	19.5	1.80	24.1	1.40	16.8	△1.80	△17.3	1.80	23.1
	채권	0.30	4.6	0.10	1.8	0.00	0.2	△0.50	△6.0	0.70	8.7
	대체투자	0.40	11.0	0.20	5.2	1.00	25.0	0.40	8.3	0.30	6.4
	단기자금	0.00	1.7	0.00	0.9	0.00	0.7	0.00	2.4	0.00	4.0
	소계	1.80	11.2	2.10	11.5	2.50	11.9	△1.90	△7.7	2.80	13.5
공무원연금기금	주식	0.44	17.4	0.64	22.9	0.42	16.3	△0.42	△18.9	0.37	23.3
	채권	0.17	4.5	0.09	2.7	△0.04	△1.2	△0.21	△7.7	0.17	7.4
	대체투자	0.13	8.3	0.13	7.3	0.35	18.5	0.21	10.2	0.16	7.2
	단기자금	0.03	2.0	0.02	1.4	0.02	1.1	0.04	2.6	0.09	3.8
	소계	0.77	8.0	0.88	9.6	0.75	8.1	△0.38	△4.4	0.79	9.3
군인연금기금	주식	0.04	21.3	0.02	18.4	0.04	20.1	△0.03	△16.6	0.04	23.6
	채권	0.01	2.3	0.01	2.7	△0.01	△0.2	△0.02	△3.0	0.03	4.9
	대체투자	0.00	16.4	0.00	2.0	0.00	0.8	0.00	△16.1	0.00	0.8
	단기자금	0.01	1.7	0.00	1.0	0.00	0.8	0.00	2.2	0.01	3.8
	소계	0.06	5.6	0.03	3.8	0.03	2.9	△0.06	△3.9	0.07	7.9
산재보험기금	주식	0.99	16.7	1.91	22.8	1.44	17.7	△1.48	△17.2	1.66	22.0
	채권	0.32	3.1	0.24	2.2	△0.18	△1.5	△0.73	△6.7	0.85	8.0
	대체투자	0.11	5.9	0.21	10.7	0.27	12.0	0.25	9.1	0.12	4.0
	단기자금	0.01	1.8	0.01	1.1	0.01	0.9	0.02	2.8	0.04	4.1
	소계	1.43	7.7	2.37	11.2	1.54	7.0	△1.94	△8.4	2.67	12.3
고용보험기금	주식	0.36	14.7	0.23	30.3	0.09	11.2	△0.12	△18.5	0.12	22.0
	채권	0.10	2.4	0.03	1.1	△0.01	△0.3	△0.07	△1.9	0.23	5.7
	대체투자	0.11	10.0	0.08	7.1	0.17	17.2	0.05	4.8	0.01	1.1
	단기자금	0.01	1.8	0.01	1.1	0.01	0.9	0.04	2.6	0.05	3.8
	소계	0.58	7.1	0.35	5.7	0.26	4.4	△0.10	△0.9	0.41	6.0

주: 2019~2022년은 결산기준이고 2023년은 잠정치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재정추계&세제 이슈

# 재정추계&세제 국내 동향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임슬기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740)

## 1. 개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4일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과 재정전망을 포함하는 중장기 계획인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발표하였으며, 본고에서는 주요 정책 방향 및 사업과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sup>1)</sup>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정부 법정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
  - ▶ 「제3차 건강보험 증기보장성 강화계획(14~18)」이 종료됨에 따라 정책 범위를 건강보험 제도 전반으로 확장하여 2019년 5월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19~23)」을 발표
- (배경)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23.1.31.)을 필두로 세 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기반 회복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종합계획은 같은 달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24.02.01.)<sup>2)</sup>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
  - ▶ 이번 종합계획은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방향 제시에 집중하고 있음

### Ⅰ 과거 정부 계획 주요 내용 Ⅰ

####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19.05.)

- 지출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08.)에 수입측면을 포함한 건강보험 정책 추진방향 제시

#### 필수의료 지원대책(23.01.31.)

- 중증·응급 분야, 분만·소아진료 분야 중심의 필수의료 지원 방안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23.02.28.)

- 보장성 강화 항목 재검검, 부과체계 정비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방안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24.02.01.)

-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총 4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위기 극복 및 보건의료 제도·구조 개혁 추진 방향

1) 2016년 8월 시행

2)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총 4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도 본 내용에 포함됨

## 2. 주요 내용<sup>3)</sup>

### 가.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의 양에 따라 수가가 책정되는 “행위별 수가제”<sup>4)</sup>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고난도·저평가 진료 항목 및 필수의료 등의 공급 부족과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 수가는 각 의료행위별로 비정기적으로 결정되는 ‘상대가치점수’<sup>5)</sup>와 의료기관 종별로 매년 일괄 인상이 결정되는 ‘환산지수’의 곱으로 책정됨

(정책방향) 필수의료 공백 및 보상 수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①수가 결정구조 개편, ②보완형 공공정책수가, ③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추진

- ① (수가 결정구조 개편) 의료기관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획일적 인상 구조에서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결정구조를 개편하여 필수의료 집중 인상 추진
  - ▶ 중증응급, 중증정신, 소아, 감염병 등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
  - ▶ 2028년까지 상대가치점수 조정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이후에는 매년 조정 추진
- ②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기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의료행위의 난이도·위험도·시급성·의료진 숙련도, 진료료와 소요시간(대기·당직), 지역 격차 등을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보상
  - ▶ 기존의 수가에 공공정책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현재 분만수가<sup>6)</sup>가 시행 중이며, 중증소아 고난도 수술에 대한 지원도 확대 예정
- ③ (대안적 지불제도) 진료량보다는 의료의 질·성과에 따라 기관별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한편, 신포괄수가제<sup>7)</sup>를 본격 추진
  - ▶ 기관별 차등 보상 예시로, 2023년 추진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23~25)이 있으며, 올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24~26)<sup>8)</sup>,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sup>9)</sup>을 추진 예정

3)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2024.2.2.)를 바탕으로 주요내용 재작성

4)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사용량에 따라 총 의료비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인의 자율성이 크고 과잉진료의 유인이 있어 진료비 통제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음. 이러한 지불제도를 보완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강보험은 7개 질병군(DRG)에 대한 포괄수가제와 정액수가제, 신포괄수가제를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이들은 미시적 관리방안의 하나일 뿐임. 이에 국회예산정책처(「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2023)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지출 구조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될 필요를 지적한 바 있음

5) 상대가치점수는 2001년 도입 후, 1차 개정연구(03~06년) 수행 후 5개년(08~12년)에 걸쳐 단계적 개정을 거쳤으며, 2차 개정연구(10~16년) 수행 후 4개년(17~20년)에 걸쳐 2차 개정을 반영하였음. 이후 '18~20년 기간 동안 3차 개정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3차 개편을 추진 중

6) 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역수가(55만원), 안전정책수가(55만원), 고위험 분만 정책가산 확대(30~200%)

7) 행위별수가제와 일부 질병군에만 적용하는 포괄수가제(7개)의 대안적 모델로, 포괄적 보상(기준 수가+일당수가)과 행위별 보상방식이 혼합된 형태로 제공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포괄로 묶고, 진료비 차이를 유발하는 고가 서비스를 행위별수가로 보상하는 체제이며, 현재 97개 기관에서 시범사업 적용 중

- ▶ 과소진료 등 포괄수가제<sup>10)</sup>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신포괄수가제(시범 사업)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적용대상 기관 확대 추진(2028년)
- ▶ 대안적 지불제도 비중을 현재 5.5%에서 2배 수준인 11%로 확대할 계획

(추진방안) 지불제도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 관리 등의 수행을 위해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을 도입하여 총 요양급여비용 2%(연간 약 2조원, 5년간 10조원)를 투입할 예정이며,<sup>11)</sup>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의료비용분석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

- 혁신계정은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및 대안적 지불제도에 따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활용될 예정
  - ▶ 또한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혁신계정 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전담조직을 마련할 예정(표 2)

표 1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주요 내용

	현행	추진방향
정책목표	•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수록” 더 많이 보상	→ • 국민이 의료서비스 이용 후 “더 건강할수록” 더 많이 보상
① 수가 결정구조 개편	• 환산지수 계약 기반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	→ • 상대적과 연계하여 필수요료 등 저평가 항목 집중인상
②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 진료시간 및 의료자원 소모 기반 수가 산정	→ • 난이도·위험도·사립성 진료 외 소요시간·당차·당차 등 반영
③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 수요 감소 영역은 행위 단위 보상만으로 한계 • 의료 질·성과와 보상 간 연계 부족	→ • 기관·지역 단위 보상 도입 • 의료 질·성과 기반 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자료: 보건복지부

표 2 혁신계정 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운영 구조(안)

유형	지역참여형	기술검증형	정책수가형
사업기관	• 건보공단+지자체	• 보건의료연구원	• 심사평가원
재원	• 보험재정(혁신계정) • 지방비	• 보험재정(혁신계정) • 민간(자기부담금, 기부금)	• 보험재정(혁신계정) • 국비 등

자료: 보건복지부

- 8) 외래진료 감축, 협력의료기관 구축 및 원활한 협진, 의료질 제고 등 성과평가에 따른 기관별 차등 보상
- 9) 성과 기반으로 묶음형 기관 단위 보상 제공, 특성화·협력 진료량을 고려하여 총 보상 규모 설정
- 10) 질병군별로 입원환자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로 입원기간 동안 제공된 검사, 수술, 투약 등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하였는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금액을 보상
- 11) **혁신계정의 유형 및 재정 규모(안)**
  - ▶ (지역참여형, 7,000억원+지방비) 일차의료,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성과보상 모형의 신규 개발 추진
  - ▶ (기술검증형, 5,000억원+민간)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 의료기술의 건강성과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로 선순환 유도
  - ▶ (정책수가형, 8,000억원+국비 등)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요료 보장 및 지역연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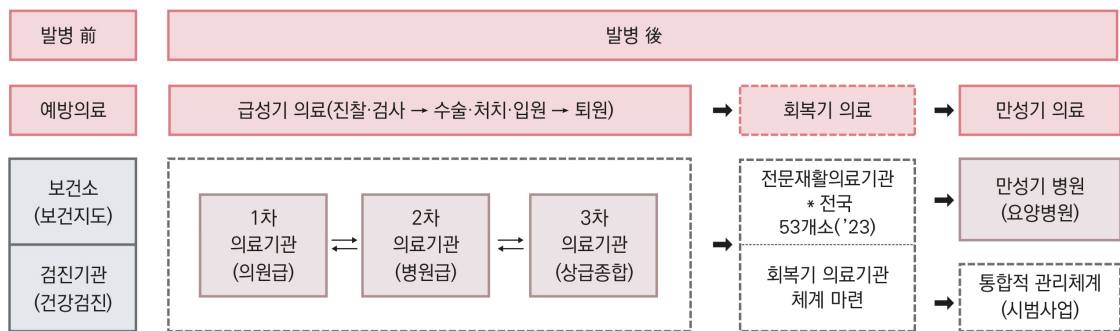
## 나.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은 전 국민 가입과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통한 본인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나, 의료 과다이용, 비급여 진료 확대 등의 일부 부작용과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을 초래

(정책방향) 현재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집중지원을 위해 ①생애 및 질병 단계별 의료서비스 보장, ②예방 및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 ③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 내실화를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

- ① (의료서비스 보장)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급성-회복-만성기의 질병 단계별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중심의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 ② (건강관리 지원) 연간 의료 이용량이 적은 가입자(예, 분기 1회 미만)에게 보험료 10%(연간 12만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시범사업을 청년(20~34세) 대상으로 시행하는 등 자기관리 유인 강화를 위한 사업 시행
  - ▶ 또한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과 정신·여성·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등 건강관리 지원 강화 등 예방 및 통합적 관리에 대한 보장성 강화
- ③ (의료 사각지대 해소) 기존의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개선

표 3 급성기-회복기-만성기의 질병 단계별 의료전달체계 구조



자료: 보건복지부



## 다. 보험재정 효율적 관리

(배경)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향후 당기수지 적자 누적에 따라 준비금(2023년 기준 28조원)이 차츰 소진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정책방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①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공급 관리, ②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③가입자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부과체계 개편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

- ①-1(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의료 과다 이용 시 본인부담을 상향(예,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율 90%로 상향, 물리치료 1기관 1일 1회 초과 이용시 본인부담 상향)하고 의료비 지출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 ①-2(합리적 공급 관리) '적정의료 목록' 보급을 통해 적정의료를 유도하고 공급과잉 지역(연구용역에 따라 도출 예정)의 병상 신·증설 제한을 통한 병상 수 관리, 의료장비 과다 사용 방지 등 의료 과잉 공급 방지책 제시
- ②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비급여 명칭·코드를 표준화한 목록을 공개하여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고,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비급여의 혼합진료(급여+비급여 진료)<sup>12)</sup> 금지 추진  
▶ 또한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의 역할 정립과 실손보험 개선을 유도하고, 미용의료 시술자격 개선 등을 위한 방안 마련
- ③ (부과체계 개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고 유튜브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 검토

## 라. 의료 혁신 지원

(배경)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원료수급의 어려움, 생산 지연 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약 등의 혁신기술 도입은 제도적 문제로 저조한 상황

(정책방향) 보건의료 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①신약 환자 접근성 제고, ②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

- ①-1(신약 환자 접근성 제고) 혁신 신약과 생존위협질환 치료 신약 등의 건강보험 신속 등재를 지원하고 기존 치료법보다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의 가격 우대 등을 통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

12) 예시로, 백내장수술에 단초점렌즈가 아닌 연속초점 또는 다초점렌즈를 사용하거나, 일반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 시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추가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것을 말함

- ▶ 또한 필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필수약품의 약가를 높게 산정하고 원가 상승으로 생산이 어려워진 약제의 약가 인상 절차를 마련하는 반면, 약가 지출 효율화를 위한 조정기전 마련
- ②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등) 공익적·과학적 연구에 대한 데이터 제공 범위 확대 및 요양기관별 건강정보 통합·활용 기반 마련 등

### 3. 재정소요 전망

#### 가. 종합계획에 따른 재정소요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19~’23)」에서 의료비 부담 완화, 일차의료 강화, 적정수가 보상 등 추진 시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를 발표한 것과 달리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총괄적인 추가재정소요를 발표하지 않음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은 수가 구조 조정을 통한 큰 틀에서의 변화로서 수가 구조의 특성상 사전 재정소요 추계가 어려움을 밝혔으며, 향후 의료비용분석위원회<sup>13)</sup>에서 비용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힘

다만,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혁신계정”을 도입하여 매년 2조원씩 5년간 총 10조원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

- 그러나 이는 지불제도 개편의 3대 과제 중 대안적 지불제도를 제외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및 분만수가 등 정책수가 가산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지출될 규모는 혁신계정의 연간 2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및 분만수가 등 정책수가 가산에 따른 재정소요는 재정 효율화, 수가 인상분을 활용하여 충당한다는 계획임
- 참고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혁신계정에 배정할 2조원의 경우 기존 시행 중인 건강보험 시범사업들의 총 규모(약 1.8조원)를 고려하여 책정된 것으로 향후 공공정책수가 및 개별 시범사업 추진 등에 따라 건강보험재정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달 규모가 확정될 예정임

1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위원회로서 가입자 추천 3인, 공급자 추천 6인, 공익위원 6인, 당연직 3인(보건복지부 1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총 18인으로 구성됨. 2021년 6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며, 기존 총 4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 나.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라 5년마다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종합계획은 향후 5년(2024~2028년)의 재정전망을 발표

- 향후 보험료율 및 수가 인상율을 각각 2023년 수준인 1.49%, 1.98%로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지출 효율화 및 구조개혁을 추진하면 2028년 이후에도 28조원 이상의 준비금 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
  -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재정전망이 종합계획에 따른 지출 효율화 및 구조개혁 효과를 모두 포함한 결과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반영 범위나 규모는 밝히지 않음

표 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전망(2024~2028년)

(단위: 조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총수입	98.9	104.6	111.5	118.3	125.2
총지출	96.3	104.1	111.8	119.1	126.8
당기수지	2.6	0.5	-0.3	-0.8	-1.6
준비금	30.6	31.1	30.8	30.0	28.4

자료: 보건복지부

## 4.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은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의료전달체계 등 건강보험 제도 및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고 있으므로 그 중요도가 높음

### 가. 주요 쟁점

종합계획 발표 후 경영계, 시민단체, 의료계 등은 자원조달 대책과 보험료 등에 대해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입장 표명

표 5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대한 각 계의 반응

관련 단체	주요 내용
경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적 보장성 확대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점에 긍정적 평가</li> <li>• 보험료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은 적립금이 재정관리목표치 등 일정 수준을 하회할 때만 조정해 양입제출 원칙 확립 필요</li> </ul>
민주노총, 한국노총, 시민단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 확장된 형태의 혼합진료 금지 제도 시행을 단행하고 실손보험의 역할 재규정 및 규제 필요</li> <li>• 건강보험의 재정적 위기만을 강조하여 사회보장제도 관점에서의 접근 부족</li> </ul>
보험업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합진료 금지를 통한 비급여 관리 방안에 실손보험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지켜볼 필요</li> </ul>
의사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기존 건강보험재정 재분배 수준의 보상체계 조정이 아닌, 별도의 기금으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li> <li>• 혼합진료 금지 등 개개의 사안에 대해 의협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할 필요</li> </ul>
제약업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신약에 대한 가치보상과 신약 등재기간 단축 및 국산원료 의약품 상한 금액 인상 등 약가정상화 방향에 동의</li> </ul>

자료: 보건복지부

## 나. 향후 과제

이번 종합계획은 기존 건강보험 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의료 전달체계와 지불제도 개혁 등 큰 틀에서의 의료 개혁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안 제시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시로, 지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는 건강수명 75세 달성 및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과 같은 핵심 정책목표를 강조하였으며, 효율적 의료서비스 활용을 위해 외래 이용 횟수·입원 일수 증가율, 항생제 처방률, 불필요 지출 관리율 등을 주요 성과목표로 제시
- 반면에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경우 필수의료 및 지역공백을 유발하는 의료 전달체계의 근본적인 체계를 개혁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1977년부터 적용되어 오면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행위별수가제를 보완 및 개선하려는 것으로 해석
-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세부 사항 및 갈등이 심한 주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였으며, 국무총리 주재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4.03.03.)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이 결정됨
  - ▶ 향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유할 필요

또한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 수입 또는 지출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이 혼재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재정전망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전망된 재정규모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적정의료 이용 유도와 공급 관리 등의 지출 효율화 정책은 건강보험 지출 감소를 유발하지만,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및 지역·의료기관 보상, 보장성 강화 방안 등은 지출 증가 요인이며, 지출 증가 요인의 상당 부분은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만이 제시되었을 뿐 세부안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현시점에 정확한 추계가 어려움
  - ▶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수입의 경우도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건강바우처 도입 등과 같은 수입 감소 요인과 부과기반 확대 요인 등이 혼재
-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출목표” 제시 계획을 밝힌 만큼, 현 제도를 유지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건강보험 지출(기준선) 전망과 정책목표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전망<sup>14)</sup>을 분리하여 제시하고 검토할 필요
  - ▶ 특히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사업과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등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적정 수준을 관리할 필요

예상되는 고령화 및 지역·필수의료 지원 등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누적 준비금(2023년 결산 기준 28조원)을 고려하여 향후 적정 보험료율과 국고지원 규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개시할 필요

- 건강보험 보험료율(2024년 기준 7.08%)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이며, 보험료율의 경우 8% 법정 상한<sup>15)</sup>, 국고지원금의 경우 국고지원을 상향, 항구적 법제화<sup>16)</sup>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 필요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공급자와 수요자 또한 적정 의료 공급 및 합리적 의료 이용 등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협조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건강보험 안건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는 등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

14) 정책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포함한 전망

15)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1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16)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따라 국가는 매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여야 하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 지원하여야 함. 두 조항 모두 2027년 12월 31일에 일몰되는 한시 규정임

# 재정추계&세제 해외 동향

2023년 주요국의 세제개편 동향 - 소득세제 · 법인세제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해외 제도 운영 현황  
주요국의 빈집세 도입 현황



# 2023년 주요국의 세제개편 동향

## - 소득세제 · 법인세제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5)

문석희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69)

### 1. 개요

OECD가 발간한 「2023 Tax Policy Reforms」 보고서(2023.9)는 OECD 회원국 등 75개국의 2023년<sup>1)</sup>의 세제개편에 대한 정보를 제공

- ▶ OECD 조세정책행정센터에서 2016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Tax Policy Reforms 보고서는 국가별 조세정책 비교연구를 위해 거시경제 여건, 조세수입 트렌드, 세목별 세제개편에 대한 정보를 제공
  - OECD에서 조사대상 각국으로부터 수집한 주요 제도변화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
- ▶ 동 보고서에는 조사대상인 75개국의 세제개편 동향에 대하여 3장으로 구분하여 서술
  - 1장에서는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등 세입여건에 대한 배경이 되는 거시경제 동향
  - 2장에서는 글로벌 세수동향 및 조세구조의 변화
  - 3장에서는 세목별 조세정책의 변화에 대한 내용 포함
    - ※세목 구분은 소득세제, 법인세제,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제, 환경관련 세제, 재산세제로 구분

이하에서는 동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의 소득세제와 법인세제의 개편동향을 살펴보고자 함<sup>2)</sup>

### 2. 주요국의 소득세제 개편 동향

2023년 주요국의 소득세제 개편 동향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고유가·고물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한 국가가 많았으며, 일부 국가는 누진도 강화를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상향

1) 동 보고서는 2022년 개정되어 2023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포함

2) 이외 소비세제 및 재산세제 등 세목은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27호(2024.6.발간)에서 다룰 예정

##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완화를 위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제지원 확대

-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독일) 2023년 최상위 구간을 제외한 세율구간(4개)의 과세표준 5.4~7.2% 인상<sup>3)</sup>
  - (오스트리아) 소득구간별 과세표준이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변경하도록 조정(최상위 구간 제외)<sup>4)</sup>
  - (한국) 하위 2개 구간 과세표준 인상(1,200만원→1,400만원, 4,800만원→5,000만원)
- ▶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소득세 세제지원
  - (호주, 오스트리아) 저소득층에 대한 2023년 한시적 세액공제 인상·도입<sup>5)</sup> (호주) 420호주달러 인상 ('18.7.~'22.6. 한시운영) (오스트리아) 500유로의 일회성 공제 도입(2022년 신고분)
- ▶ 소득·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확대
  - (독일) 2022년부터 통근거리를 20km 초과하는 납세자의 통근비용 소득공제를 km당 0.38유로로 9% 인상
  - (스웨덴) 통근비용 소득공제 기준금액을 10km당 25크로네로 35% 인상
  - (오스트리아) 통근비용 세액공제를 2유로에서 8유로로 인상하고 통근자에 대한 일시 소득공제 50% 인상
  - (프랑스) 2022년 2월부터 통근비용 등에 대한 10% 정률 소득공제를 20%로 확대, 6세 이하 자녀 보육비용에 적용되는 50% 세액공제의 최대한도를 3,500유로로 52% 인상
  - (핀란드) 4개월 동안 2,000유로 이상 전기료를 지출하는 가구에 한시 세액공제 적용

**표 1** OECD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등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의 주요 내용

세제지원 유형	주요 내용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독일) 최상위 구간을 제외한 세율구간의 과세표준 5.4~7.2% 인상 (오스트리아) 2023년 1월부터 소득구간별 과세표준이 물가인상률에 연동하도록 조정(최상위 구간 제외) (한국) 2023년부터 하위 2개 구간 과세표준 인상(1,200만원→1,400만원, 4,800만원→5,000만원)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	(오스트리아, 호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세액공제 도입
조세지원 확대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교통 및 에너지 관련 비용 소득·세액공제 일시 확대(프랑스는 영구 확대)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포르투갈) (자녀 포함) 부양가족 또는 양육비용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확대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3」, 2023.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2022년 대비 2023년 세율구간별 과세표준 변화 (0% 구간) 10,347유로→10,908유로 (14% 구간) 10,348/14,926유로→10,909/15,999유로 (24% 구간) 14,927/58,596유로→16,000/62,809유로 (42% 구간) 58,597/277,825유로→62,810/277,825유로 (45% 구간) 277,826유로~  
 4) 2022년 10월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기준점을 3.5~6.3% 인상하고 최저 과세소득을 12,500유로로 인상  
 5) (호주)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액공제(LMITO)에 해당하며 2018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 운영, 저소득층 세액공제(LITO)는 지속운영 (오스트리아) 2022년 6월 발표된 인플레이션 구제 패키지(Teuerungs Entlastungspaket)에 포함된 내용



이와 함께 고령화 대응, 노동공급 확대, 친환경 정책 등을 위해 세제지원을 도입하거나 확대

- ▶ 고령화 대응
  - (미국) 퇴직자 소득보전을 위해 기업연금(401(k)), 개인연금(IRA) 등 퇴직연금의 납입한도 500달러 상향<sup>6)</sup>
  - (스웨덴, 핀란드) 고령자의 노동 참여 증진을 위해 일정 연령(스웨덴 60세, 핀란드 65세) 이상인 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인상하거나 돌봄비용 등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 ▶ 노동 공급 확대를 위한 소득공제 또는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 (스페인)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가족까지 확대<sup>7)</sup>
  - (캐나다) 캐나다는 건설업근로자에 대한 출장 및 인력 재배치 관련 비용 공제한도를 인상
  - (덴마크·아일랜드·룩셈부르크·한국) 최대 근로장려금(EITC) 인상 또는 대상자 자격요건 완화
-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지원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제정을 통해 친환경 산업 육성에 대한 조세지원
  - (포르투갈, 독일, 스웨덴) 태양광 등 친환경 시설 관련 또는 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도입

표 2 주요 국가의 정책 목적별 세제지원의 주요 변경 내역

정책 목적	주요 내용
고령화 대응	(미국) 세제 우대 퇴직연금플랜 납입한도 상향 및 기타 요건 변경
	(핀란드, 스웨덴) 60세와 65세 이상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 인상
	(아일랜드) 노인 부양가족 돌봄비용 지원을 위한 가정 간병인 세액공제(Home Carer Tax Credit) 6% 인상
	(캐나다) 여러 세대(multi-generation)가 고령자와 함께 거주하도록 주택을 개조하는 데 지출한 비용 세액공제
노동 공급 확대	(스페인) 세제 혜택 적용 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 확대
	(캐나다) 건설업 근로자의 출장·인력재배치 비용 공제한도를 최대 4,000캐나다달러까지 확대
	(남아공·포르투갈·슬로베니아·루마니아) 청년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혜택 확대
	(덴마크·아일랜드·룩셈부르크·한국) 최대 근로장려금 인상 또는 대상자 자격요건 완화
환경문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을 통한 친환경 산업 육성 등(Inflation Reduction Act)
	(포르투갈) 태양광 등 친환경 시설 관련 공제 (독일, 스웨덴) 재생에너지 활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공제
주택구매 세제지원	(아일랜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개인소득세·이자소득세 환급(최대 3만유로) 2024년 말까지 연장 시행
	(캐나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액공제 1만 캐나다달러로 2배 인상, 비과세 주택마련 저축계좌(FHSA) 시행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3」, 2023.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납입한도 (401(k)) 2.2만달러 → 2.25만달러 (IRA) 6천달러 → 6.5천달러, 납입한도 상향은 403(b) 및 457(b)에도 적용되며 2024년에도 납입한도 500달러 인상  
 7)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스페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스페인으로 이주하는 개인, 스타트업 기업 또는 연구개발 관련 활동 종사자 및 그러한 개인의 가족까지 세제지원 수혜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종전의 거주 제한규정을 완화(이전 10년 동안 스페인 거주 사실이 없어야 함 → 5년)

## 일부 국가는 누진도 강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상위 구간 세율을 일부 인상하거나, 하위 구간 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병행

- ▶ 소득세 과세표준 상위 구간 세율 인상 또는 하위 구간 세율 인하
  - (일본) 연소득 3.3억엔 이상 소득자에 대한 최저 실효세율 22.5% 신규 도입(2025년부터 시행)<sup>8)</sup>
  - (싱가포르) 10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율 2%p 인상(22→24%)
  - (노르웨이) 상위 3개 구간 세율은 0.1%p 인상했으나 하위 2개 구간 세율은 0.1%p 인하
  - (네덜란드) 주식보유에 따른 배당 및 양도소득 최고구간 세율은 인상(26.9 → 31%)<sup>9)</sup>하고 종합소득 및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최하위 구간 세율을 인하(37.04 → 36.93%)

**표 3** 주요 국가의 소득세율 변경 사항

구분	세율 인상	세율 인하
최고구간	노르웨이 <sup>1)</sup> ,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sup>2)</sup>	캐나다 <sup>2)</sup>
기타구간	네덜란드 <sup>1)</sup> , 노르웨이 <sup>1)</sup> , 체코	네덜란드 <sup>1)</sup> , 노르웨이 <sup>1)</sup> , 아일랜드, 포르투갈, 폴란드

주: 1) 구간별 및 유형별 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과 세율 인하 모두 시행 2) 추정부 단위 세율 변경 (인상)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인하) 뉴브런스윅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3」, 2023.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3. 주요국의 법인세제 개편 동향

2023년 주요국의 법인세제 개편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율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에너지 공급망 차질,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 디지털세 도입 등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개편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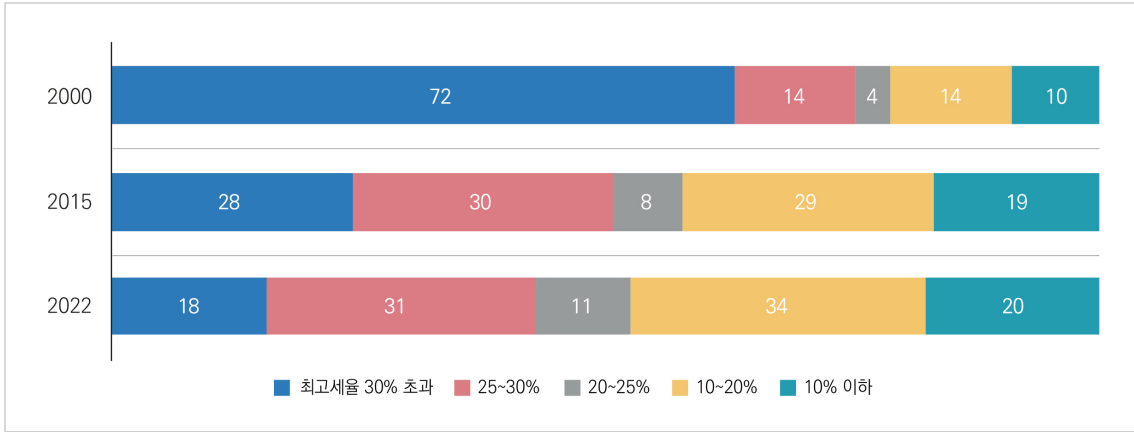
- ▶ 고물가·고금리로 이익이 급증한 에너지, 금융 등 업종에 대한 횡재세 도입,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R&D 지출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각국의 조세제도 정비 등

대부분 국가에서 법인세율 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에 따라 세율 조정

- ▶ 일반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최근 20년간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추세를 보임
  - 동 보고서에서 OECD/G20 등 11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이 30%를 상회하는 국가는 2000년 72개국에서 2022년 18개국으로 감소

8) 해당 세율을 반영한 최저 소득세액(과세표준×3.3억엔×22.5%)이 기본 세율을 반영한 소득세액보다 크면 최저 소득세액을 추가 부담  
 9) 네덜란드는 종합소득 및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구조(Box 1), 주식 등 배당 및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구조(Box 2), 기타 자산소득에 대한 세율구조(Box 3)를 별도로 규정

그림 1 국가별 법인세 최고세율의 연도별 분포



주: 1. OECD/G20 등 114개국을 기준으로 집계  
 2. 그래프 내 숫자는 최고세율 구간별로 포함된 국가의 수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3」, 2023.9.

▶ 2023년 세율 인상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네덜란드) 법인세 최저구간의 세율 4%p 인상(15 → 19%)
- (벨기에, UAE, 콜롬비아) 법인세 최저한세 도입(15%)

▶ 2023년 세율 인하

- (한국) 과표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p 인하(10~25 → 9~24%)
- (프랑스) 기업에 과세되는 지방생산세(CVAE: Contribu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 Entreprises)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sup>10)</sup>

고유가·고금리로 영업이익이 급증한 에너지 등 업종 종사기업에 대한 횡재세 또는 사회연대기금 한시적 도입

▶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주요국 금리 인상 등으로 에너지 및 발전, 금융 업종의 영업이익이 급증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지적 분쟁의 발생으로 국제 에너지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여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거래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에너지 및 발전 업종의 영업이익이 급증
- 에너지 등 국제 상품가격 상승 등은 미국 등 주요국의 물가상승으로 이어졌고, 이에 대응하여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은행 등 금융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대

10) 프랑스의 지방생산세는 지방정부가 연간 매출액 5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게 과세하는 제도로, 2024년 기준 부가가치의 0.28%를 부과하는데, 세율을 3년간 단계적으로 하향하여 2027년 이후 폐지할 예정(2025년 0.19%, 2026년 0.09%)

- ▶ 에너지 등 업종의 초과이익<sup>11)</sup>에 대한 횡재세 또는 사회연대기금 한시적 도입
  -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2022년 12월부터 2023년까지 전력생산기업의 Mwh당 180유로 이상 가격으로 인한 영업이익에 대해 90%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횡재세 부과
  - (프랑스, 네덜란드) 2022년간 화석연료 생산 기업의 2018~2021년 평균 대비 1.2배를 초과하는 영업이익에 대해 3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사회연대기금 부과
  - (스페인) 2023~2024년간 금융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순이자수익의 4.8%에 횡재세 도입

**표 4** OECD 국가의 횡재세 및 사회연대기금의 부과 현황

국가	업종(초과이익 기준)	적용세율	적용기간
오스트리아	전력(규정가격) 에너지(최근 3년 평균이익)	90% 40%	2022.12.~2023.12. 2022.7.~2023.12.
벨기에	에너지(원유 등 화석연료)	원유: 6.9EUR, 기타 소비용 제품: 7.8EUR	2022.1.~2023.12.
콜롬비아	전력(수력발전 규정소득) 에너지(규정소득) 금융(규정소득)	15% 5% 3%	2023.1.~2026.12. 2023.1.~ 2023.1.~2027.12.
체코	전력(규정가격) 에너지(최근 3년 평균이익) 금융(최근 3년 평균이익)	90% 60% 60%	2022.12.~2023.12. 2023.1.~2025.12. 2023.1.~2025.12.
프랑스	전력(규정가격) 에너지(최근 3년 평균이익)	90% 33%	2022.7.~2023.12. 2022.1.~2022.12.
독일	전력(규정가격) 에너지(최근 3년 평균이익)	90% 33%	2022.12.~2023.12. 2022.1.~2023.12.
그리스	전력('21.10.~'22.6.간 발생이익)	90%	2021.10.~2022.6.
헝가리	전력('21.10.~'22.6.간 발생이익)	90%	2021.10.~2022.6.
이탈리	에너지(최근 3년 평균이익)	50%	2022.1.~2022.12.
리투아니아	에너지(최근 3년 평균이익)	50%	2023.1.~2023.12.
네덜란드 <sup>1)</sup>	에너지(LNG 규정가격)	65%	2023.1.~2024.12.
슬로바키아	전력(규정가격)	90%	2022.12.~2024.12.
슬로베니아	전력(규정가격) 에너지(최근 3년 평균이익)	100% 80%	2022.12.~2023.12. 2022.1.~2023.12.
스페인	에너지(순매출액) 금융(순이자수익)	1.2% 4.8%	2023.1.~2024.12.
스웨덴	전력(규정가격)	90%	2023.3.~2023.6.
영국	에너지(이익)	'22년 25% → '23년 35%	2022.5.~2028.3.

주: 1) 네덜란드의 경우 2022년에는 화석연료 생산자의 최근 3년 평균이익×120% 초과분에 대해 3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자료: OECD(2023), IBFD Database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1) 초과이익은 예년 평균이익이나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하여 발생하는 이익 등으로 정의

##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R&D 투자 및 기술혁신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 R&D 투자 및 기술혁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영국) 2023년 4월부터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3%에서 20%로 상향
  - (일본) R&D 투자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기존 25%에서 20~30%로 차등적으로 조정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스타트업, 공동연구, 인수합병 등 세제혜택의 범위를 확대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퀘벡주 등은 R&D 투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 확대
  - (핀란드) R&D 투자 지출에 대해 50만 유로까지 공제해주는 세제지원 도입
- ▶ 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 확대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제정하여 청정전력에 대한 투자공제, 첨단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공제 등으로 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 청정전력에 대한 투자공제(Clean electricity investment credit): 2022~2031년간 탄소 제로 발전, 에너지 저장기술에 대한 R&D 투자에 대하여 6%의 세액공제
    - 첨단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공제(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 credit): 태양광 및 풍력 발전용 부품 등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공제(기술별로 공제율 상이)
  - (캐나다) 탄소제로 제조업체에 대하여 2022~2031년간 50%의 세율을 감면하고, 청정수소 생산, 탄소포집 및 저장 등 환경 친화적 기술에 대한 R&D 투자의 세액공제를 신설
- ▶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 (독일) 법인에 대한 코로나 지원금(최대 4,500유로)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최대 3,000유로)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 (폴란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2022~202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
  - (포르투갈) 중소기업 특례세율(17%, 일반법인 21%) 적용범위를 과세표준 2.5만 유로 이하에서 5만 유로 이하로 확대

## 2021년 10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된 디지털세의 도입을 위한 세제개편

- ▶ 2021년 10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136개국이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
  - 다국적 기업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익을 거두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익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여 발생하는 조세회피 문제 및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원천지국이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세원잠식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
- ▶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디지털세 도입을 위해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방식(Pillar 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 2)을 수립

- Pillar 1은 매출액 200억 유로 및 이익률 10% 이상의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지국에 배분하는 방식
- Pillar 2는 다국적기업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에서 최저세율(15%)보다 낮은 유효세율 적용시 다른 국가에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식
- ▶ Pillar 2 세부지침 제도화
  - 현재 Pillar 1은 구성요소에 대한 다자간 협이가 진행되고 있어, 각국에서는 Pillar 2를 중심으로 소득산입규칙 (Income Inclusion Rule: IIR),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ayment Rule: UTPR) 및 적격국최저한세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 등 Pillar 2 세부지침 입법 및 시행
    - ※ 소득산입규칙: 해외자회사 소득이 저율과세되는 경우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
    - 소득산입보완규칙: 모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미달세액을 해외자회사들에 부과
    - 적격국내최저한세: 최저세율 초과분은 소재지국에서 납세권을 지님

**표 5** Pillar 2 이행 관련 입법진행 상황: OECD 회원국

국가	입법동향	세부지침 시행 시기		
		QDMTT	IIR	UTPR
한국	'23.12.23. 글로벌 최저한세 내용 입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	미정	2024	2024
호주	'24.3.21. 글로벌 최저한세 법률 초안 발표	2024	2024	2025
오스트리아	'23.12.20. 글로벌 최저한세 법률 의회 통과	2024	2024	2025
벨기에	'23.12.14. 글로벌 최저한세 법률 의회 통과	2024	2024	2025
캐나다	'23.8.4. 글로벌 최저한세 초안 발표	2024	2024	2025
체코	'23.12.20. 글로벌 최저한세 법률 공포	2024	2024	2025
덴마크	'23.12.7. EU 최저한세 지침 이행을 위한 법률 의회 통과	2024	2024	2025
핀란드	'23.12.28. EU 최저한세 지침 이행을 위한 법률 공포	2024	2024	2025
프랑스	'24.12.30. EU 최저한세 지침 이행을 위한 2024 재정법 제정	2024	2024	2025
독일	'23.12.15. EU 최저한세 지침 이행을 위한 법률 의회 통과	2024	2024	2025
헝가리	'23.10.17. EU 최저한세 지침 이행을 위한 법률 초안 발표	2024	2024	2025
아일랜드	'23.11.22. EU 최저한세 지침 이행을 위한 법률 하원 통과	2024	2024	2025
이태리	'23.12.28. 글로벌 최저한세 법률 공포	2024	2024	2025
일본	'23.8.10.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미정	2024	미정
네덜란드	'23.12.19. 글로벌 최저한세 법률 의회 통과	2024	2024	2025
뉴질랜드	'24.3.11. 글로벌 최저한세 세부지침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미정	2024	2025
노르웨이	'24.1.12. 글로벌 최저한세 법률 공포	2024	2024	미정
스웨덴	'24.12.13. EU 최저한세 지침 이행을 위한 법률 의회 통과	2024	2024	2025
스위스	'23.9.4.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	2024	2024	미정
영국	'24.2.22.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2023-24 재정법 제정	2024	2024	미정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3」, 2023.9. 및 강금윤,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KITA 통상 리포트, 2024.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해외 제도 운영 현황

김 효 경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47)

## 1. 개요

우리나라는 주식·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각각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하고 있으며, 주식의 경우 유형별로 상장주식 대주주,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으로부터의 양도차익에 한정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 보유 규모 등에 따라 소액주주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이하, 지분율 또는 보유액)으로 현재 코스피 증권 1% 또는 50억원, 코스닥 증권 2% 또는 50억원, 코넥스 증권 4% 또는 10억원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 2020년 4월 이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증권의 보유액 기준은 10억원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함

표 1 주식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2024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지분율, 시가총액 기준)	1% 또는 50억원 이상	2% 또는 50억원 이상	4% 또는 50억원 이상	4% 또는 10억원 이상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산출
  - ▶ 기본공제액은 주식 250만원, 파생상품 250만원을 각각 적용
- 종전에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각각에 대하여 손익통산을 적용하다가 2020년부터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소득 간에는 손익통산을 허용하기 시작했으며, 다만 별도의 양도손실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음
-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유형별로 10~30%의 세율을 적용하고, 파생상품의 경우 10%의 탄력세율을 적용

표 2 현행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단위: %)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대주주	대주주 외	대주주		대주주 외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10%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30%	20%

**현행 제도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등으로부터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포괄하여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

- 과세표준 금액은 금융투자소득액에서 기본공제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산정
  - ▶ 기본공제액은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5천만원, 그 외 금융투자자산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각각 적용
  - ▶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과 손실 간 통산이 허용되며,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은 5년 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적용
- 제도 도입 당시(2020년) 시행 시점을 2023년으로 예정하였으나, 2022년 세법개정으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세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율은 0.35%(2024년 코스피 0.03%, 코스닥 0.18%)**

- 2025년부터는 코스피 시장의 경우 영(0)의 세율, 코스닥 시장은 0.1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
-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0.15%)를 별도 과세

**우리나라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주식 양도소득(자본이득, capital gain)<sup>1)</sup>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주요국의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1) 이하에서는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작성함



## 2. 주요국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운영 현황

###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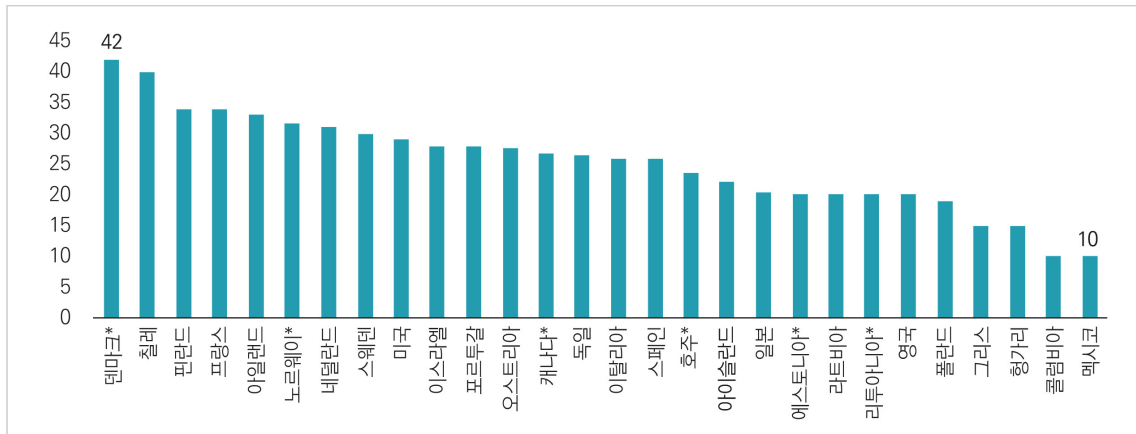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OECD 국가들은 보유기간, 개인의 소득 수준, 매각 자산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 구조 및 수준을 적용하고 있음

- 핀란드, 프랑스, 영국 등은 개인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해 고정 세율을 적용하며,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은 개인소득세에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과세
  - ▶ 개인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
-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국가 중 세율 수준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42%), 칠레(40%), 핀란드 및 프랑스(34%), 노르웨이(31.68%) 등이며, 세율이 낮은 국가는 그리스 및 헝가리(15%) 등<sup>2)</sup>

그림 1

2021년 주요국의 주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Top Marginal Capital Gains Tax Rates on Individuals Owning Long-Held Listed Shares without Substantial Ownership)

(단위: %)



주: 국가명의 \*표시는 주식 양도소득을 다른 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하는 국가임

자료: Daniel Bunn, Elke Asen, "Savings and Investment: The Tax Treatment of Stock and Retirement Accounts in the OECD", Tax Foundation, 2021.5.26.

2)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분류)과세 방식 국가를 모두 포함

- 스위스 등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국가도 있으며, 벨기에, 체코, 한국,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 등은 일부 대상 및 보유기간에 한정하여 과세
  - ▶ 우리나라는 상장주식 대주주·비상장주식·해외주식에 대하여 과세하고,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의 주식에 대해서는 비과세
  - ▶ 벨기에는 전문직 소득으로 간주되는 소득 이외 비과세
  - ▶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체코(3년 이상), 룩셈부르크(6개월 이상), 슬로바키아(1년 이상) 등

## 나. 주요국 과세제도의 세부 내용

### (1) 미국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나, 1년을 초과하여 장기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

- 법정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순투자소득<sup>3)</sup>에 대한 순투자소득세(세율 3.8%)를 별도로 과세<sup>4)</sup>
- 모든 자본자산(capital asset)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주택·가구·자동차·수집품 등의 개인용도 자산(personal-use property)과 주식·채권·어음·투자목적의 부동산 등 투자자산(investment property)으로 구분<sup>5)</sup>

**양도소득에서 소득공제 및 과세이연 금액을 제외하고, 양도손실을 차감하여 과세대상 금액을 산출**

- (기본공제) 장기양도소득인 경우 2024년 기준 독신 47,025달러, 부부합산 94,050달러, 세대주 63,000달러
- (소득공제) 적격소기업주식<sup>7)</sup>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6개월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후 대체주식을 취득한 경우) 및 소득공제(5년 이상 보유 시 50% 공제) 등 적용
- (양도손실의 처리) 순 양도소득은 소득에서 손실을 차감하여 산출하되, 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모든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매년 3,000달러(부부별도신고 시 1,500달러) 한도로 일반소득(ordinary income)에서 공제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간의 제한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 가능

3) 자본이득, 배당, 이자, 연금, 임대료, 저작권 사용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4) 과세대상은 순투자소득(주식·채권·뮤추얼펀드의 양도 시 이익, 뮤추얼펀드의 자본이득 분배, 투자부동산 판매 시 이익, 파트너십 및 S법인에 대한 지분 매각 이익 등)이 있고, 조정총소득이 일정액(부부합산신고 25만달러, 부부별도신고 12만 5천달러, 그 외 20만달러) 이상인 경우 해당(<https://www.irs.gov/taxtopics/tc559>)

5) 김갑래, 「미국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6.9.

6) 주식 및 채권 중 합병·자본재구성·파산·기업분할·기업인수·기타 기업재편을 초래하는 기업 간 주식 거래, 동일기업의 주식 교환, 채권 및 우선주 전환권에 따른 전환 등은 포함하지 않음

7) 주식회사로, 1993년 8월 10일 이후 최초 발행된 주식(주식 발행 전 회사 총자산이 5천만 달러 이하)이며 최초 발행한 주식을 현금·주식 외 재산과 교환하거나 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직접 취득한 경우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주식

보유기간 별로 1년 이하 보유 자산의 순소득은 단기양도소득으로 다른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10~37%, 주별 지방세 별도)하고,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산의 순소득은 장기양도소득으로 분리과세(0/15/20%)

**표 3** 미국의 소득세율(단기양도소득세율): 2024년

(단위: 달러, %)

독신	과세구간		세율
	부부합산	세대주	
0~11,600	0~23,200	0~16,550	10
11,600~47,150	23,200~94,300	16,550~63,100	12
47,150~100,525	94,300~201,050	63,100~100,500	22
100,525~191,950	201,050~383,900	100,500~191,950	24
191,950~243,725	383,900~487,450	191,950~243,700	32
243,725~609,350	487,450~731,200	243,700~609,350	35
609,350~	731,200~	609,350~	37

자료: IRS, "IRS provides tax inflation adjustments for tax year 2024", 2023.11.9.

**표 4** 미국의 장기양도소득세율: 2024년

(단위: 달러, %)

독신	과세구간		세율
	부부합산	세대주	
0~47,025	0~94,050	0~63,000	0
47,025~518,900	94,050~583,750	63,000~551,350	15
518,900~	583,750~	551,350~	20

자료: IRS, "IRS provides tax inflation adjustments for tax year 2024", 2023.11.9.

연방 차원의 증권거래세 과세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뉴욕주에서 주식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stock transfer tax)를 과세

- 양도 가격에 따라 주당 세율은 5달러 미만인 경우 1.25센트, 5~10달러 2.5센트, 10~20달러 3.75센트, 20달러 이상 5센트, 양도가 아닌 지분 등의 이전에는 2.5센트의 세율 적용<sup>8)</sup>

8) 뉴욕 주 홈페이지(<https://www.tax.ny.gov/bus/stock/stktridx.htm>)

## (2) 영국

###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로 분류과세

- 양도소득은 주식, 유가증권, 옵션, 채무증서, 무체재산권(right of intangible property), 파운드(sterling) 외의 통화, 부동산 등을 포함하며, 주식의 경우 상장여부와 관계 없이 과세

### 과세대상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양도경비·취득가액·취득부대비용 등을 차감하고, 그 외 연간면제금액 및 이월결손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

- (기본공제) 기본공제금액(연간면제금액, annual exempt allowance)은 12,300파운드에서 2023년 4월 6,000파운드로 축소되었으며, 2024년 4월 3,000파운드로 추가 인하될 예정<sup>9)</sup>
- (양도손실의 처리) 모든 자본 간 손익통산이 가능하며 기간의 제한 없이 이월공제 가능

### 세율은 종합소득과 양도소득(기본공제 금액 제외)의 합계액 규모에 따라 10% 또는 20%를 적용<sup>10)</sup>

- 합계액이 종합소득 기본세율 구간(Basic rate band) 하회하는 경우 10%, 그 이외는 20%의 세율 적용
- 사업자공제(business asset disposal relief)<sup>11)</sup> 등이 적용되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10%로 분리과세 가능

표 5 영국의 종합소득세율: 2023~2024년

(단위: 파운드, %)

구간	Personal Allowance	Basic rate	Higher rate	Additional rate
과세소득	~12,570	12,571~50,270	50,271~125,140	125,141~
세율	0	20	40	45

자료: 영국정부 홈페이지, "Income Tax rates and allowances for current and past years", 2023.12.14.

### 증권거래세와 유사하게 주식 매입 시 매수자에게 0.5%의 인지세(stamp duty reserve tax)를 과세

9) 영국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guidance/capital-gains-tax-rates-and-allowances#tax-free-allowances-for-capital-gains-tax>)

10) 주거용 부동산(residential property)의 경우 18% 또는 28%의 세율 적용

11) 사업자공제의 대상은 상업회사(또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직원 또는 임원이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의 5%를 보유하고 회사의 배당가능 이익이나 해산시 분배금 또는 청산 시 매각대금의 5%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되며, 평생 적용되는 한도(lifetime limit, 2020년 3월 11일 이후 100만 파운드) 내에서 공제가 가능한 제도(영국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ntrepreneurs-relief-hs275-self-assessment-helpline/hs275-business-asset-disposal-relief-2021>)

### (3) 일본

자산의 종류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과세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중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신고분리과세(申告分離課税) 형태로 과세

- 금융상품 간 공정·중립·간소화된 과세적용으로 과세로 인한 금융상품 선택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주식(채권·펀드 포함)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sup>12)</sup>
- 금융자산의 경우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데, 금융자산은 다시 상장주식·일반주식으로 구분
  - ▶ 상장주식은 상장주식(신주예약권 포함), 상장된 신주인수권부사채, 공모주식투자신탁 등을 포함하며, 금융상품 거래업자에게 매매위탁함으로써 매각하는 것이 해당
  - ▶ 일반주식은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상장주식 등을 포함

과세대상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별도의 기본공제 제도는 활용하지 않음

- (양도손실의 처리) 상장주식 양도손실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상장주식 등의 양도·배당소득 금액 등에서 공제하고, 당해 공제하지 못한 손실은 이후 3년 간 상장주식 등과 관련한 양도·배당소득과 통산 가능
  - ▶ 상장주식(채권 및 펀드 포함)과 일반주식(비상장주식 등)의 손실은 각각의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공제

세율은 상장주식·일반주식 각각에 대하여 분리과세(20.315%)의 형태로 신고 및 납부

- 신고분리과세 세율은 소득세 15%, 주민세 5%, 부흥특별소득세 0.315%<sup>13)</sup>로 구성
- 참고로, 상장주식 등의 대주주(해당 기업의 주식 중 3% 이상 보유)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분리과세(20.315%) 또는 종합소득세(5~45%, 주민세 10%·부흥특별소득세 별도)를 적용<sup>14)</sup>

1989년 개인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이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병행하여 운영되다가 1999년 증권거래세 폐지

### (4) 독일

양도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하되, 종합과세 세율이 자본소득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 과세대상은 이자·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과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sup>15)</sup>

12) 금융소득과세 일체화(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b06.htm](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b06.htm))

13) 부흥특별소득세는 기본소득세율의 2.1%를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2013~2037년 기간 적용 예정

14)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a.go.jp/taxes/shiraberu/shinkoku/tebiki/2021/kisairei/kabushiki/index.htm>)

15) 김무열, “독일의 자본자산소득 및 금융거래 관련 조세제도와 시사점”,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제36집 제2호, 2020.

- ▶ 주식, 채권, 증권의 양도차익 및 파생거래(옵션, 선물, 스왑)과 공매도로 인한 이익을 포함
- ▶ 개인이 기업의 중대한 지분(substantial interest, 최근 5년 간 직·간접적으로 1% 이상 소유하는 경우 등)을 보유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
- 2008년까지 단기 양도소득(양도차익의 50%)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2009년 이원적 소득세제의 형식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하여 모두 과세하도록 변경

**과세대상 금액은 모든 양도소득에 대하여 저축자 일괄공제(Sparer Pauschbetrag, 1인당 801유로, 부부 합산과세의 경우 1,602유로)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

- (양도손실의 처리) 분리과세하는 경우 금융 양도소득 내에서 손익통산이 가능하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 양도 손익 간 상계만 허용
  - ▶ 납세자가 분리과세 대신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또는 개인이 기업의 중대한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다른 소득유형에서 발생한 손익 간 손익통산이 가능
  - ▶ 손실의 이월공제는 기한의 제한이 없으며, 한도는 독신 100만 유로, 부부합산 200만 유로를 적용하되, 손실이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실금액의 50%까지만 이월이 가능
  - ▶ 직전 1년까지 소급공제를 적용하며, 한도는 독신 51만 1,500유로, 부부합산 102만 3천유로를 허용

**분리과세 세율은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되, 원천징수 시 연대세(solidarity surcharge)를 원천징수세의 5.5%, 교회세(church tax)를 지역별로 원천징수세의 8~9% 수준으로 적용**

**증권거래세는 1999년 폐지한 후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음**

**다. 요약**

**주요국은 주식 등 금융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리과세 등을 적용하며, 대부분의 국가가 기본공제 및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 등을 허용하고 있음**

- 미국은 장기보유 자산의 경우 분리과세(세율 15%/20%), 단기보유 자산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10~37%)를 적용하며, 모든 자산의 이득에 대하여 기본공제·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 적용
  - ▶ 연방 차원의 거래세는 없으나, 뉴욕주의 경우 증권거래세(stock transfer tax) 과세
- 영국은 주식 등 금융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분류과세<sup>16)</sup>(금액 기준, 10%/20%)하며, 양도소득 내에서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 적용

16)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양도소득'과 같이 별도의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규정하고 있어, 분류과세 유형으로 구분함

- ▶ 인지세(stamp duty reserve tax, 0.5%)의 형태로 거래세를 과세
- 일본은 상장주식에 대하여 별도로 분리과세(세율 20.315%)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 적용
- 독일은 주식·채권·증권 등을 포함한 금융 양도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세율 25%, 연대세 5.5% 등)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 적용
- 우리나라는 2024년 현재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대주주 여부·중소기업 여부·보유기간에 따라 10~30%)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 등과 유사하게 주식과 그 외 자산을 구분하여 과세함
  - ▶ (과세대상)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상장주식 대주주(보유액 및 지분을 기준),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경우 비과세하는 특징을 보임
  - ▶ (보유기간 별 과세 차이) 미국의 경우 단기(1년 미만) 보유 시 종합과세·장기 보유 시 분리과세로 과세방식을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주주에 한해 단기 보유 시 차등 세율(중소기업 외 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시 30%)을 적용하고 그 외 경우에는 보유기간 별 과세를 구분하지 않음
  - ▶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으나, 주요국과 달리 손순실에 대한 이월공제는 적용하고 있지 않음
  - ▶ (거래세) 미국(뉴욕 주 제외)·일본·독일 등의 주요국은 별도의 거래세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외 증권거래세를 함께 과세하고 있음

**표 6** 주요국의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비교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과세 체계	분류과세	단기보유 시 종합과세, 장기보유 시 분리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과세 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모든 자본자산(주택 등 개인용도자산, 주식 등 투자자산)의 양도소득	주거용 부동산과 주식 등 그 외 자산으로 구분	상장주식 및 일반주식으로 구분	주식, 채권, 증권의 양도차익, 파생거래, 공매도 이익 등
기본 공제	국내외 주식 250만원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47,025~94,050달러	연간 면제금액 6,000파운드 적용	없음	저축자 일괄공제(1인당 801, 부부합산 1,602유로)
손익 통산	국내외 주식 간 가능,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음	모든 자산에 대하여 적용, 손순실 이월공제	모든 자본소득 간 가능, 손순실 이월공제	상장·일반주식 각각 적용 (배당소득 포함), 이월공제	주식은 주식양도손익 내 적용, 손순실 이월공제
세율	대주주 20~30%, 대주주 외 10~20%	단기보유(종합, 10~37%) 장기보유(분리, 15~20%)	종합소득·자본이득 합계액 기준 10% 또는 20%	소득세 15%, 주민세 5%, 부흥특별소득세 0.315%	분리과세 25% 연대세 55%, 교회세 8-9%
거래세	'24년 코스피 0.03%, 코스닥 0.18%	연방 차원의 거래세 없음 (뉴욕주의 경우 과세)	인지세(0.5%) 과세	없음	없음

자료: 이상엽·송은주·서동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현황 및 쟁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 20-08, 2020.12. 및 정훈·권순오·이미연, 「금융투자소득 납세협력과 과세행정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 22-01, 2022.3. 및 각국 국세청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 주요국의 빈집세 도입 현황

최 천 규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8)

## 1. 개요

### 빈집<sup>1)</sup>은 자연경관 훼손, 치안 및 위생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

- 빈집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거주지 이전, 건축물 노후화 등의 자연적 요인과 주택의 공급과잉, 투자용 부동산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발생
- 빈집은 자연경관 훼손, 치안 및 위생 문제, 주변 부동산 가치 하락, 빈집 자체의 화재·건물 붕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 양산

### 우리나라의 경우 증가 추세인 빈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sup>2)</sup>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공 주도의 철거나 관리가 쉽지 않아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 활성화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sup>3)</sup>

- 우리나라의 경우 빈집은 2022년 기준 1,452천호로 2017년 대비 14.8%(1,265천호)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주택대비로는 2017년 7.4%(전체 주택 17,123천호)에서 2022년 7.6%(전체 주택 19,156천호)로 0.2%p 증가<sup>4)</sup>
-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빈집 정비사업<sup>5)</sup>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력과 행정력(재정포함<sup>6)</sup>)을 동원하여 처리하는 것에는 한계

1) 빈집은 일반적으로 주택에 사람이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정책대상에 따라 법적 빈집의 정의는 달리 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단, 미분양주택 등 제외)"라고 정의하고 있음

2) 예를 들면 ①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나 철거조치를 수행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② 유해한 형태로 방치된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 운용,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빈집 철거, 매입 후 공공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활용 등)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3) 허원제,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p. 76. 이하도 참조

4) 통계청,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23.7.

5)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위임된 사항에 따라 규정된 자체 조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6) 빈집 개조 시에는 개소당 최소 5,000만원, 철거에는 평균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행정안전위원회」, 2023.10. p.102), 2024년 빈집 정비사업 관련 예산편성의 예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약 50억원(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지원사업)·전라북도 약 56억원(빈집 정비사업)이 편성되어 있음(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 답변자료)



##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 유도 및 재원마련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주요국들은 빈집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운용 중

- 우리나라는 농어촌 주택개량으로만 국한된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농어촌 주택개량 세제지원 이외에는 빈집 철거 등 정비촉진 목적의 세제상 방안은 없음
  - ▶ 농어촌 주택개량 세제지원(2024년까지): 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 취득시 취득세액 공제(280만원 한도)<sup>7)</sup>
- 주요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빈집세는 빈집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방치에 대한 패널티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빈집세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는 지방세 형태로 운용
  - ▶ 빈집세는 빈집 소유자에게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재원 마련을 통해 빈집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부과
- 주요국의 빈집에 대한 과세형태는 독립된 세목(빈집세)으로 과세하는 형태와 재산세제에 부과하는 형태로 구분
  - ▶ 독립 세목 운용 국가: 프랑스,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일본, 미국 일부 지방정부(오�클랜드 등)
  - ▶ 재산세 부과세 운용 국가: 영국 및 미국 일부 지방정부(워싱턴 DC)

### 이하에서는 주요국의 빈집세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2. 주요국의 빈집세 도입 현황

### 가. 독립 세목으로 도입한 국가

#### (1) 프랑스

#### 프랑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과 수요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1999년부터 빈집세를 도입<sup>8)</sup>

- (도입배경) 파리 등 대도시의 경우 주택 등의 건축(신축)은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주거용 주택관리를 목적으로 Nantes, Nice, Paris, Saint-Nazaire 등 28개의 지방정부가 빈집세를 도입<sup>9)</sup>
  - 프랑스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하여 임대 계약기간은 최소 3년이며, 세입자는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주택 소유자는 그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 또는 임대를 위해 공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8) Segú, Mariona and Vignolles, Benjamin, *Taxing Vacant Dwellings: Can fiscal policy reduce vacancy?*, MPRA(Munich Personal RePEc Archive)Paper No. 85508, 2018. pp. 1-4.

9) 빈집세 도입 당시에는 20만면 이상의 도시로 한정하였으나, 현재는 5만명 이상의 도시 단위의 지방정부가 도입할 수 있으며, 현재 빈집세를 도입한 지방정부로는 Ajaccio, Annecy, Arles, Bastia, Bayonne, Beauvais, Bordeaux, Draguignan, Fréjus, Genève-Annemasse, Grenoble, La Rochelle, La Teste-de-Buch-Arcachon, Lille, Lyon, Marseille-Aix-en-Provence, Meaux, Menton-Monaco, Montpellier, Nantes, Nice, Paris, Saint-Nazaire, Sète, Strasbourg, Thonon-les-Bains, Toulon, Toulouse 등 28개의 지방정부가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음 (프랑스 부동산전문회사 홈페이지:French-Property.com) 참조

- (과세체계) 과세대상은 1년 이상 빈 주거용 주택이며, 임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년차 17% · 2년차 이후 34%의 세율로 과세

**표 1** 프랑스 지방정부의 빈집세 과세체계

구 분	주요 내용
세목명	* annual vacant housing tax (VLT) or the vacant housing tax (VLT)
과세대상	* 최소 1년 동안 주거자 없이 빈 주택
납세의무자	* 빈 주거용 주택 소유자
세율	* 1년차 임대가치의 17% * 2년차 이후 임대가치의 34%
면제대상	* 임대 또는 매매 시장에 등록된 주택, 상당한 수리(주택가격의 25%)가 필요한 주택 등
신고 · 납부	* 거주 신고기한: 매년 7월 1일까지 * 납부기한: 매년 11월 15일까지

자료: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https://www.service-public.fr/>) 참조

## (2) 캐나다

### 캐나다는 부동산 투자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빈집 증가에 따른 임대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2016년부터 빈집세를 도입<sup>10)</sup>

- (도입배경) 외국인 등의 부동산 투자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과 투자용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보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아 임대용 주택이 부족해지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빈집세를 도입
  - ▶ 빈집세를 시행 중인 캐나다의 지방정부는 밴쿠버시(2016년 도입), 브리티시컬럼비아주(2017년 도입) 및 토론토시(2022년 도입) 등 3개의 지방정부임
- (과세체계) 과세대상은 1년 가운데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이며, 부동산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세율은 지방정부마다 달리 규정
  - ▶ 빈집세 세율
    - 밴쿠버시 · 토론토시: 부동산 평가액의 3%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부동산 평가액의 외국인 2% · 시민권 및 영주권자 0.5%

10) City of Vancouver, *HOUSING VANCOUVER STRATEGY ANNUAL PROGRESS REPORT AND DATA BOOK 2018, 2018* · City of Toronto, *Final Tax Design and Steps to Implement a Vacant Home Tax in Toronto, 2021.11.* 이하도 참조

표 2 캐나다 지방정부의 빈집세 과세체계

구 분	브리티시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	밴쿠버시(City of Vancouver)	토론토시(City of Toronto)
세목명	* Speculation and Vacancy Tax	* Empty Homes Tax	* Vacant Home Tax
과세대상	* 과세지역 내 주택 가운데 1년 중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 1년 중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 1년 중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납세의무자	* 빈집세 과세대상 소유자 - 매년 12월 31일 소유권 기준	* 빈집세 과세대상 소유자	* 빈집세 과세대상 소유자
세율	* 외국인 소유자 등: 부동산평가액의 2% * 시민 또는 영주권자 부동산평가액의 0.5%	* 부동산 평가액의 3%	* 부동산 평가액의 3%
면제대상	* 과세제외지역: 밴쿠버 섬을 제외한 항공이나 해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섬 지역, 원주민 지역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등록된 자선단체, 주택협동조합 및 기타 특정 비영리단체	* 등록된 소유자의 사망, 재개발 또는 개조공사 진행, 법원 명령, 주택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에 따른 공실 등	* 등록된 소유자의 사망, 재개발 또는 개조공사 진행, 법원 명령, 주택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에 따른 공실 등
신고·납부	* 주택거주 신고기한: 매년 3월 31일까지 * 납부기한: 7월 첫 business day까지	* 주택거주신고기한: 매년 2월 2일까지 * 납부기한: 4월 15일까지	* 주택거주신고기한: 매년 2월말 * 납부기한: 5월 15일, 6월 17일, 7월 15일 3회 균등 분할납부

자료: 브리티시컬럼비아주(<https://www2.gov.bc.ca>), 밴쿠버시(<https://vancouver.ca/>), 토론토시(<https://www.toronto.ca/>) 등의 홈페이지 참조

### (3) 미국<sup>11)</sup>

#### 미국은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빈집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제한되고 장기 공실이 폐가로 이어지는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2018년부터 빈집세를 도입

- (도입배경) 오클랜드(2018년 도입, 2019년 시행)는 오랫동안 빈집뿐만 아니라 공터로 인한 노숙자와 불법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의 하나로 빈 부동산세(빈집·토지)를 도입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2022년도입, 2024년 시행)는 주택의 장기 공실로 주택공급이 제한되고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낮은 임대료로 입주 가능한 주택 수를 늘리기 위해 빈집세를 도입하였음
- (과세체계) 빈집세에 대한 과세대상, 세율 등은 지방정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음

##### ▶ 과세대상

- 오클랜드: 1년 중 50일 미만 사용 부동산(토지포함)
- 버클리·샌프란시스코: 1년 중 182일 이상 빈 주택

11) 미국은 오클랜드, 버클리, 샌프란시스코 등과 같이 독립 세목인 빈집세로 과세하는 지방정부가 있는 반면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워싱턴 DC의 경우처럼 재산세에 종과세하는 형태도 있음

▶ 세율

- 주거기준

- 오클랜드: 주거용 별도 소유 콘도미니엄 등에 대해 주택 당 3천달러·그 이외의 부동산은 필지(parcel)당 6천달러
- 버클리: 빈집 기간에 따라 우선 첫해에는 콘도미니엄 등 일반 주택은 주택 당 3천달러(그 이외 6천달러)  
· 그 이후 연속 2년이상 빈집 상태인 경우 첫해의 2배로 과세

- 면적기준

- 샌프란시스코: 1,000SF미만/1,000~2,000SF/2,000SF 이상 등 3개의 기준으로 하여 각각 2천5백달러 /3천5백달러/5천달러의 세율로 과세

**표 3** 미국 지방정부의 빈집세 과세체계

구 분	오클랜드시(City of Oakland )	버클리시(City of Berkeley)	샌프란시스코(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세목명	* Vacant Property Tax	* Empty Homes Tax	* Empty Homes Tax
과세대상	* 1년 중 50일 미만 사용 부동산(토지 포함)	* 1년 중 182일 이상 빈 주택	* 1년 중 182일 이상 빈 주택
납세의무자	* 빈 부동산 과세대상 소유자	* 빈집세 과세대상 소유자	* 빈집세 과세대상 소유자
세율	* 주거용 부동산 - parcel 당 6,000달러 * 별도 소유 콘도미니엄 등 - 주택 당 3,000달러 * 비거주용 부동산 - parcel 당 6,000달러 * 1층을 상업용으로 허가된 부동산으로 1층이 빈 경우 - parcel 당 3,000달러 * 미개발 - parcel 당 6,000달러	* 빈집 상태 첫해 - ① 콘도미니엄, 복층, 단독 주택 또는 별도로 소유한 주거용 연립 주택 : 주택 당 3,000달러 - ② 상기 ①이외 주택 당 6,000달러 * 빈집 상태 연속 2년 및 그 이후 연도 - 첫해 세율의 2배	* 주거단위 SF(Square feet) 당 세율: 2024년 기준 - 1,000미만: 2,500달러 - 1,000이상 ~ 2,000 미만: 3,500달러 - 2,000이상: 5,000달러 *참고: 3.3㎡(1평)은 35.6SF
면제대상	*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저소득 소유자, 장애인 소유자,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 등	* 비영리단체, 저소득 노인, 4가구 이하의 소유주 거주 부동산, 건설 중 부동산, 간호 서비스를 받는 거주자,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 등	*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는 모든 조직 * 2채 이하 주거 건물에 위치한 주거 건물
부과·납부	* 부과기준: 매년 1월 1일 * 납부기한: 12월 10일 상반기 분할 4월 10일, 하반기	* 부과기준: 매년 1월 1일 * 납부기한: 12월 10일 상반기 분할 4월 10일, 하반기	* 부과기준: 매년 1월 1일 * 납부기한: 12월 10일 상반기 분할 4월 10일, 하반기
적용 기한	* 도입 후 20년간	* 2034년 12월 31일	* 2053년 12월 31일

자료: 오클랜드시(<https://www.oaklandca.gov>), 버클리시(<https://www.berkeleyaside.org/>), 샌프란시스코시(<https://sftreasurer.org>) 등의 홈페이지 참조

(4) 호주

호주는 주택가격이 높은 멜버른의 주거용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빈집세를 도입<sup>12)</sup>

- (도입배경) 빅토리아주 멜버른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빈집세를 도입
  - ▶ 2025년부터 빅토리아주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멜버른뿐만 아니라 빅토리아주의 모든 지역으로 과세 지역 확대
- (과세체계) 과세대상은 주거용 부동산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이며, 자본개선가치<sup>13)</sup>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의 세율로 과세

표 4 호주 빅토리아주의 빈집토지세 과세체계

구 분	주요 내용
세목명	* Vacant Residential Land Tax
과세대상	* 2024년 이전: 멜버른 도심 및 교외지역의 주거용 부동산 가운데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부동산 - 주거용 부동산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택 및 아파트와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토지를 의미 * 2025년 이후: 빅토리아 전지역의 주거용 부동산 가운데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부동산
납세의무자	* 빈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
세율	* 자본개선가치(CIV: capital improved value)의 1% - CIV는 부동산 평가과정에서 결정된 토지, 건물 및 기타 자산개선의 가치를 의미 - 2025년 이후에는 첫째 1%, 2년째 2%, 3년째 3%의 세율 적용 예정
면제대상	* 부동산소유권 변경, 그 해에 주거용 부동산이 된 경우, 별장용 부동산(최소 4주 동안 소유자가 거주), 소유자가 직장이나 사업에 참석할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연간 최소 140일 동안 사용
신고·납부	* 거주 신고기한: 매년 1월 15일까지 * 납부기한: 평가통지서 받은 날(연초에 발송)로부터 60일 이내

자료: 빅토리아주 세입청 홈페이지(<https://www.sro.vic.gov.au/>)참조

(5)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만성적인 임대주택 부족에 의한 급격한 임대료 상승과 이에 따른 노숙자 증가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목적(주택공급 확대)으로 2023년 빈집세 도입<sup>14)</sup>

- (도입배경) 빈집을 주택시장으로 유도하여 매매 또는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사회)주택으로 수용하여 노숙자 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세를 도입
- (과세체계) 과세대상은 거주용 주택이 1년 가운데 30일 동안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주택이며, 지방재산세 기본세율의 5배로 과세되고 있음

12) 빅토리아주 세입청(The State Revenue Office) 홈페이지 참조

13) 자본개선가치(CIV: capital improved value)는 부동산 평가과정에서 결정된 토지, 건물 및 기타 자산개선의 가치를 의미

14) International Research Economists, *Indecon Report on the Taxation of Vacant Residential Property*, 2018.9. 참조

표 5 아일랜드의 빈집세 과세체계

구분	주요 내용
세목명	* Vacant Homes Tax
과세대상	*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12개월 가운데 30일 동안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주택
납세의무자	* 빈집 소유자로 지방재산세 납세의무자
세율	* 지방재산세(Local Property Tax) 기본세율의 5배 - 지방재산세는 부동산 평가액별 세율 적용(평가액이 175만 유로 미만인 경우 과표구간을 19계 단계로 구분하고 해당 세율(€90~€2,721)을 적용하며, 175만 유로 이상인 경우 0.3% 적용)
면제대상	* 부동산소유권 변경, 소유자의 사망이나 질병, 주택수선(개조) 중, 법원 명령, 공공기관 소유 등
신고·납부	* 주택거주 신고기한: 매년 11월 7일까지 * 납부기한: 매년 1월 1일까지

자료: 아일랜드 정부 홈페이지(<https://www.revenue.ie>) 참조

## (6) 일본

### 일본 교토시는 청년 및 자녀를 둔 젊은 계층이 이웃 도시 이주에 따른 정주 인구감소와 빈집 발생에 따른 건물방화·범죄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빈집세를 도입하여 2026년부터 시행 예정<sup>15)</sup>

- (도입배경) 교토 시내에는 젊은 세대 형평에 맞는 맨션이나 단독주택이 적어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이주하는 문제와 더불어 빈집 발생에 따른 방화·범죄 등 지역의 생활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세를 도입
  - ▶ 교토시의 경우 경관조례(景観条例)에 의해 건물 높이가 최고 31m(약 7~10층)로 규제되어 있어 고층빌딩이나 고층맨션을 건축할 수 없으며, 다른 도시에 비해 건물 신축 비율이 낮은 편임
  - ▶ 빈집세는 빈집·별장 및 세컨하우스 등 비거주 소유자에게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여 새로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빈집 관리의 재원마련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교토시 조례에 의해 새롭게 신설된 법정 외세(法定外税)<sup>16)</sup>
- (과세체계) 과세대상은 거주용 주택을 1년 가운데 30일 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며, 주택분(가옥)과 토지분(바닥면적)으로 구분하여 고정자산평가액의 0.15% ~ 0.7%로 과세

15) 일본 교토시 홈페이지(<https://www.city.kyoto.lg.jp/>) 참조

16) 법정외세(法定外税)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상 규정된 세목 이외에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에 의해 지방세의 세목을 설치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함

표 6 일본 교토시의 빈집세 과세체계

구 분	주요 내용
세목명	* 非居住住宅利活用促進税
과세대상	* 시가화구역(市街化区域)내에 있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비거주주택(주소를 가진 자가 없는 주택) - 빈집뿐만 아니라 별장이나 세컨하우스도 포함 - 시가화구역(市街化区域)은 시가지화 되어 있는 구역과 10년 이내 계획적으로 시가지로 해야 할 구역으로 교토시는 15,000ha가 지정되어 있음
납세의무자	* 교토시 시가화구역내에 있는 비거주주택의 소유자
세액계산 및 세율	* 교토시의 빈집세 세액: 가옥가치할(家屋価値割)과 입지바닥면적할(立地床面積割)의 합 * 세율: - 가옥가치할(주택분: 비거주주택의 고정자산평가액)의 0.7% - 입지바닥면적할(토지분: 비거주주택의 부지의 1㎡ 고정자산평가액×해당 비거주주택의 연면적)의 700만엔이하 0.15%, 700만엔이상 900만엔 미만 0.3%, 900만엔 이상 0.6%
면제대상	* 임대 또는 매각 예정 주택, 고정자산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주택, 경관 중요건조물 및 기타 역사적 가치를 가진 건축물로 별도로 지정된 것 등
부과·납부	* 부과기일: 매년 1월 1일 * 납부기한: 6월, 8월, 10월, 1월 각각 말일

자료: 일본 교토시 홈페이지(<https://www.city.kyoto.lg.jp/>) 참조

## 나. 재산세 종과세로 운용하는 국가

### (1) 미국

미국의 워싱턴 DC는 저소득층 거주지역<sup>17)</sup> 중심으로 빈집 등(vacant property)과 폐허(Blighted real property) 등이 증가하면서 건물 붕괴 및 치안 악화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부터 빈집 등에 대해 재산세를 종과세하고 있음

- (도입배경) 빈집 및 폐허 등으로 인한 위생, 안전 및 치안 악화 등의 사회문제를 빈집 등의 소유자들이 해당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유지, 보존 및 관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재산세 종과세 제도를 도입
  - ▶ 2003년 빈집 등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종과세) 제3종(Class 3)으로 규정, 2010년에는 폐허가 된 부동산에 대해 빈집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대상(종과세) 제4종(Class 4)으로 규정<sup>18)</sup>
- (과세체계) 종과세 대상은 재산세 적용대상 부동산 가운데 1년 중 30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 부동산이며, 빈집에 대해서는 제3종 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고 폐허의 경우에는 제4종 과세대상 세율을 적용받음

17) 워싱턴DC의 Deanwood, Congress Heights, Columbia Heights, Shaw, NoMa 및 H Street 등의 저소득자 거주지역(가난한 지역)

18) 워싱턴포스트지 2021년 7월 28일자(<https://www.washingtonpost.com>) 및 DC 재정 정책 연구소(DC Fiscal Policy Institute) 홈페이지(<https://www.dcfpi.org/>)참조

표 7 미국 워싱턴DC의 빈집 등에 대한 재산세 종과세

구 분	주요 내용
도입시기	* 빈집 등(vacant property) 제3종 세율 도입 : 2003년 * 폐허(Blighted real property) 등 제4종 세율 도입: 2010년
과세대상	* 1년 중 30일 이상 비어 있는 부동산 - 매년 10월 1일부터 빈 부동산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거조사국(Office of Residential Inspections)에 등록
납세의무자	*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빈집 등 부동산 소유자
세율	* 제3종 과세대상(빈집 등 부동산): 부동산평가액 \$100 당 \$5.00 * 제4종 과세대상(폐허 등 부동산): 부동산평가액 \$100 당 \$10.00 * 참고 - 제1종 과세대상(다세대를 포함한 주거용 부동산): 부동산평가액 \$100 당 \$0.85 - 제2종 과세대상: 호텔 및 모텔을 포함한 상업용 또는 산업용 부동산 ① 부동산가치 500만 달러 이하: 부동산평가액 \$100 당 \$1.65 ② 부동산가치 500만 달러 ~ 1,000만 달러: 부동산평가액 \$100 당 \$1.77 ③ 부동산가치 1,000만 달러 이상: 부동산평가액 \$100 당 \$1.89
면제대상	* 허가에 따라 부동산 검사 및 건설 중인 부동산,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임대 또는 판매를 모색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이 소송 대상인 경우, 해당 부동산이 구역조정위원회( Board of Zoning Adjustment), 구역위원회(Zoning Commission), 미술위원회(Commission on Fine Arts), 역사보존검토위원회(Historic Preservation Review Board.), 국가수도계획위원회(National Capital Planning Commission) 등의 승인이 필요한 개발 신청 중인 부동산
부과납부 (재산세와 동일)	* 과세기간: 상반기 10월 1일~3월 31일, 하반기 4월 1일 ~ 9월 30일 * 납부기한: 상반기 3월 31일, 하반기 9월 15일

자료: 워싱턴DC 세무국(Office of Tax and Revenue) 홈페이지(<https://otr.cfo.dc.gov/>) 참조

## (2) 영국

영국의 지방정부는 주택의 노후, 불량 주택의 미보수 등의 원인으로 급속히 증가<sup>19)</sup>하는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2013년부터 카운슬세(Council Tax: 재산세)를 종과세하는 빈집 프리미엄(empty homes premium)제도를 도입<sup>20)</sup>

- (도입배경) 빈집 소유자의 빈집 사용 장려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빈집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빈집 프리미엄제도를 잉글랜드(England)와 스코틀랜드(Scotland)는 2013년, 웨일스(Wales)는 2017년에 각각 도입<sup>21)</sup>
  - ▶ 주택가격 급등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면서 빈집 활용에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빈집을 주택 자산으로 인식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sup>22)</sup>
- (과세체계) 종과세 대상은 카운슬세 적용대상 주택에 1년 또는 2년간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며, 카운슬세의 2배에서 4배까지 종과세하고 있음

19) 허원제,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p. 50.

20)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Council Tax - Empty homes premium Guidance for properties for sale and letting*, 2013. 참조

21) The Scottish Government, *GUIDANCE ON LOCAL AUTHORITY DISCRETION TO*, 2013.3.

22) Homes for the Future: More affordable, more, sustainable, 2007. 재인용 정지선·윤성만, “빈집에 대한 재산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연구」제33호(제12권제2호), 한국세무학회, 2023. p. 120.



▶ 세율

- 잉글랜드: 빈집 기간 5년 미만/10년 미만/ 10년 이상에 따라 카운슬세의 200%/300%/400%
- 스코틀랜드: 카운슬세의 200%
- 웨일즈: 카운슬세의 400%

**표 8** 영국 지방정부의 카운슬세 빈집 프리미엄제도

구 분	잉글랜드(England)	스코틀랜드(Scotland)	웨일스(Wales)
도입시기	* 2013	* 2013	* 2017
과세대상	* 2년간 거주하지 않은 주택	* 1년간 거주하지 않은 주택	* 1년간 거주하지 않은 주택
납세의무자	* 카운슬세 납세의무자인 빈집 소유자	* 카운슬세 납세의무자인 빈집 소유자	* 카운슬세 납세의무자인 빈집 소유자
세율	* 5년 미만: 카운슬세에 200% 종과세 * 10년 미만: 카운슬세에 300% 종과세 * 10년 이상: 카운슬세에 400% 종과세	* 카운슬세의 200% 종과세	* 카운슬세의 400% 종과세
면제대상	* 점유자의 사망, 매매 및 임대 목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 주요 수리 또는 구조 변경이 진행 중인 주택 등	* 소유자의 사망, 매매 및 임대 목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 철거 예정 주택, 법원의 철거 명령이 있는 주택 등	* 매매 및 임대 목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 주요 재산의 일부로 사용되는 부속 건물, 군부대 숙소에서 거주하는 점유자로 인해 비어 있는 주택
부과납부 (카운슬세와 동일)	* 부과기준일: 매년 1월 1일 * 납부기한: 완납 5월 1일, 2회 분납시 5월1일과 9월 1일, 10회 및 12회 분납 가능	* 부과기준일: 매년 4월 1일 * 납부기한: 완납 5월 1일, 2회 분납시 5월1일과 9월 1일, 10회 및 12회 분납 가능	* 부과기준일: 매년 4월 1일 * 납부기한: 완납 5월 1일, 2회 분납시 5월1일과 9월 1일, 10회 및 12회 분납 가능

자료: House of Commons Library, *Council Tax: empty properties*, 2023.9, 참조

재정추계&세제 이슈

# 재정추계&세제 이슈 및 분석

2024년 달라지는 조세제도  
2024년 육아휴직 관련 제도개선에 따른 재정소요분석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유류세 부담 및 유류세 인하 효과 분석



# 2024년 달라지는 조세제도

강민지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746)

## 1. 개관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개정세법이 2024년부터 시행

- 2023년 국회의 세법심사는 2023.11월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로 시작되어, 약 한 달에 걸쳐 569건의 안건이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며, 제41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세 관련 세법 14건 (2023.12.21.)과 지방세 관련 세법 5건 (2023.12.20.)이 의결

2023년 세법개정은 경제 활력 · 민생안정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는 하나, 기존 조세정책 기초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 소폭의 개정<sup>1)</sup>

- 세부적으로 투자 · 고용 촉진 및 기업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서민 · 중산층 부담경감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결혼 · 출산 · 양육지원 등과 같은 미래 대비를 위한 세제지원 등으로 구성

표 1 2023년 세법개정 방향 및 주요 개정 내용

개정 방향	주요 개정 내용
경제활력 제고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 확대 -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시 세제지원 확대 - 기업승계 세 부담 완화
민생경제 회복	- 맥주 · 탁주 주세율에 대한 물가연동 폐지 등 - 택시운송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 - 월세 세액공제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 2024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
미래 대비	-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3.10.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개정세법 심의결과 및 주요 내용」, 2023.12.

1)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3.10.

## 2. 2024년 달라지는 조세제도

### 가. 소득세제 분야

####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 (취지 및 주요 내용) 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근로자(종교인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함

표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과세 대상	출산 관련 급여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좌동)
비과세 한도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2028년간 △2,249억원(연평균 △450억원)으로 전망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취지 및 주요 내용)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중 하나인 소득요건을 총소득기준금액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 수준을 강화

표 3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sup>1)</sup> 4,000만원 미만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4억원 미만 <sup>2)</sup>	(좌동)
지급액 <sup>3)</sup>	자녀 1인당 50~80만원	자녀 1인당 50~100만원

주: 1)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의 합계액)

2)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

3) 출별이가구는 소득(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시, 맞벌이가구는 소득 2,500만원 미만 시 최대지급액(현행 80만원, 개정 100만원) 지급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2028년간 △2조 6,971억원(연평균 △5,394억원)으로 전망

### 월세 세액공제 소득요건 상황 및 공제한도 확대

- (취지 및 주요 내용)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요건을 1천만원 상향(근로자는 총급여 7천만원 → 8천만원, 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 7천만원)하고, 공제한도를 현행 연간 월세지출액의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표 4** 월세 세액공제 소득요건 상황 및 공제한도 확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소득요건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총급여 8,000만원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공제한도	연간 월세지출액의 750만원까지	연간 월세지출액의 1,000만원까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2028년간 △2,221억원(연평균 △555억원)으로 전망

### 2024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

- (취지 및 주요 내용)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진작할 목적으로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를 신설,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추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함

**표 5** 2024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24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특례)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세수효과) 추계 곤란: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 증가분 등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나. 법인세제 분야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취지 및 주요 내용) 영상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
  - ▶ 기본공제율은 2~5%p 상향하고, 추가공제율<sup>2)</sup>은 10~15% 신설함(대/중견/중소기업 각각의 기본공제율을 현행 3/7/10%에서 5/10/15%로 상향하고, 추가공제율을 10/10/15%로 신설)

표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기본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A)	추가공제 (B)	신설 최대 (A+B)
세액 공제율 (%)	대기업	3	없음	대기업	5	10	15
	중견기업	7		중견기업	10	10	20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15	15	30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2026년간 △412억원(연평균 △206억원)으로 전망

###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 확대

- (취지 및 주요 내용)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하여 우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상향 입법<sup>3)</sup>

표 7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 확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 추가	(법률 명시)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시행령) - 바이오의약품	(법률로 상향) - 바이오의약품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2028년간 △5,293억원(연평균 △1,059억원)으로 전망

2)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부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정부는 2024.2.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 시행령에 따르면, 전체 촬영제작 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80% 이상이며, 다음 4가지(①작가·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 지급비율 80% 이상, ②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지급비율 80% 이상, ③후반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 80% 이상, ④ 주요 IP 중 3개 이상 보유) 중 3개 이상 충족 시 추가공제가 가능함  
3) 정부는 2023년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분야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였으나,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

- (취지 및 주요 내용)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고 자원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2013년 종료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재도입하여 2026년까지 운용하기로 함

표 8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감면대상	①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②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③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외국자회사의 광업권·조광권 취득 한정)	(좌동)
공제율	3%	(좌동)
적용기한	2013.12.31. 일몰종료	2024.1.1.~2026.12.31.
중복지원 배제	없음	국가 등의 보조금 등 지원금액에 대해 세제지원 배제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2028년간 △61억원(연평균 △15억원)으로 전망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세제지원 확대

- (취지 및 주요 내용)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시 소득·법인세 감면 기간 및 폭을 현행 “5년간 100% + 2년간 50%”에서 “7년간 100% + 3년간 50%”로 확대함
  - ▶ 동시에 국외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 간 업종요건을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동일” 기준에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완화함

표 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세제지원 확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세액감면 확대 <sup>1)</sup>	소득·법인세액 5년 100% + 2년 50% 감면	소득·법인세액 7년 100% + 3년 50% 감면
업종요건 완화	국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 간 업종 세분류 동일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

주: 1)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외 부분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세수효과) 추계 곤란: 국내복귀기업이 복귀 후 부담할 소득·법인세액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 (취지 및 주요 내용)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sup>4)</sup>에 대한 과세특례를 도입
  -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액감면(5년 100% + 2년 50%)을 도입하였으며,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외의 종전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도입

**표 10**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감면대상	(신설)	(세액감면) 창업·신설 기업 (과세이연) 이전기업
감면율	(신설)	5년 100% + 2년 50%
과세이연	(신설)	수도권 종전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적용기한	(신설)	2026.12.31.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세수효과) 추계 곤란: 2023년 12월 기준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다. 소비세제 분야

### 맥주·탁주 주세율에 대한 물가연동 폐지 등

- (취지 및 주요 내용) 주류시장 가격을 안정화하고, 주세 종량세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 종량세율에 대한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기본세율(종량세 적용)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정

**표 11** 맥주·탁주 주세율에 대한 물가연동 폐지 등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대상	종량세 적용 맥주·탁주	(좌동)
조정주기	매년 조정	비정기적 조정
세율구조	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 (시행령으로 규정, 2023.4.1.~2024.3.31. 적용)	기본세율* *기존 시행령으로 규정 중인 맥주·탁주 세율을 법률로 상향입법 (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
세율 조정방식	직전연도 세율 × (1+직전연도 가격변동지수)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 범위 내에서 결정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필요시 탄력세율 조정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세수효과) 추계 곤란: 시행령 개정을 통한 탄력세율 조정 수준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4) 비수도권 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으로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 지역



###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

- (취지 및 주요 내용) 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의 택시구입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
  - ▶ 이를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조기 종료
  - ▶ 택시운송사업용<sup>5)</sup>으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함

**표 12**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면제		(대상) -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적용기한) - 2025.12.31.	(대상) - 현행  (적용기한) - 2024.12.31.
환급	대상	(신 설)	택시운송사업용(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으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 *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시행령 규정
	신청 방법 등	(신 설)	(방법) 환급대행자를 통한 신청 또는 사업자의 직접 신청 (환급대행자 의무) 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적용기한	(신 설)	2025.1.1.~2027.12.31.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2028년간 △3,394억원(연평균 △849억원)으로 전망
  - ▶ 2025년부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5년부터 발생하며, 동 세수효과는 지방소비세를 포함

5)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포함

###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 (취지 및 주요 내용) 농어촌버스회사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기·수소 운송사업용 버스에 농어촌버스를 추가함

표 13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면제 대상 추가	(면제대상) - 운송사업용 전기·수소 시내·마을버스	(면제대상) - (현행)
	(신설)	- 운송사업용 전기·수소 농어촌버스
	(적용기한) - 2025. 12. 31.	(적용기한) - (현행)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2028년간 △65억원(연평균 △13억원)으로 전망

## 라. 자산세제 분야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 (취지 및 주요 내용) 결혼 비용 등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혼인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
  - ▶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을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혼인 혹은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 현행 자녀공제(5천만원) 이외에 1억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가능하며, 증여일은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한함

표 14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신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원 - (공제선택) 혼인시, 자녀 출산시, 혼인 및 자녀 출산시 등 공제 선택 가능 - (증여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출생일부터 2년 이내 - (반환특례) 혼인·출산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출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봄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세수효과) 추계 곤란: 추계 기간의 혼인 및 출산시 증여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가업승계세제 확대

- (취지 및 주요 내용)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투자·고용유인 제고를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표 15 가업승계세제 확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증여재산가액(억원)	세율(%)	증여재산가액(억원)	세율(%)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	0~10억원	0	0~10억원	0
	10~60억원	10	10~120억원	10
	60~600억원	20	120~600억원	20
연부연납 기간	5년		15년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세수효과) 추계 곤란: 추계 기간의 가업승계세제 저율과세 적용대상 확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마. 지방세제 분야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신설

- (취지 및 주요 내용) 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 지원을 위해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
  -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시,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500만원 한도로 감면하기로 함

표 16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신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감면대상	(신설)	'24년~'25년 자녀 출산 부모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내 취득주택)
감면요건	(신설)	(주택가격) 취득당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수) 1가구 1주택(일시적 다주택(3월내 1주택)) (거주 의무) 3개월 내 거주 시작, 3년 거주 의무
감면내용	(신설)	(감면율) 취득세 100%(*최소납부세제 미적용) (감면한도) 500만원
적용기한	(신설)	2025.12.31.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세수효과) 추계 곤란: 출산(예정) 가구가 취득할 감면 적용대상 주택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취지 및 주요 내용)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설
  - ▶ 다만, 조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취득세 감면율 및 재산세 감면 기간의 조정이 가능하게 함

**표 17**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감면대상	(신설)	① 특구내 창업기업 ② 수도권 외 특구로 이전 기업 ③ 특구내 공장 신·증설 기업
감면내용	(신설)	① 취득세 50% + 50%(조례),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수도권: 취득세 50% + 25%(조례), 재산세 3년 100% + 2년 50% ② 취득세 50% + 50%(조례),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③ 취득세 50% + 25%(조례), 재산세 5년 75% (수도권 5년 35%)
적용기한	(신설)	2026.12.31.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세수효과) 추계 곤란: 2023년 12월 기준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취지 및 주요 내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
  - ▶ 이때 조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취득세 감면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표 1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감면대상	(신설)	사업용 부동산
감면요건	(신설)	-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할 것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세분류 기준)
감면내용	(신설)	- 취득세 50%, 재산세 5년 75% * (조례) 취득세 +50%p
적용기한	(신설)	2026.12.31.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세수효과) 추계 곤란: 국내복귀기업이 복귀 후 취득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3.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4~2028년 동안 4조 8,587억원(이하 누적법)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sup>6)</sup>

- 개정세법에 따른 주요 항목의 세수효과는 자녀장려금 대상·지급액 확대(소득세 △2조 6,971억원), 자녀세액 공제 대상·지급액 확대(소득세 △3,885억원),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법인세 △5,293억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확대(법인세 +5,285억원),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4,012억원) 등

표 19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24~2028년

(단위: 억원)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누적
누적법	-10,762	-10,064	-9,377	-9,214	-9,170	-48,587
소득세	-9,282	-8,369	-7,179	-6,578	-6,074	-37,482
법인세	-503	-9	-79	-162	-254	-1,008
부가가치세	-656	-1,097	-1,326	-1,445	-1,578	-6,102
기타	-320	-589	-794	-1,029	-1,264	-3,995
순액법	-10,762	698	687	163	1,221 <sup>1)</sup>	-7,994
소득세	-9,282	913	1,191	600	505	-6,074
법인세	-503	494	-70	-83	-92	-254
부가가치세	-656	-440	-229	-119	-133	-1,578
기타	-320	-268	-205	-235	941 <sup>1)</sup>	-88

주: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5년→15년)'는 2028-2039년 기간에 대한 세수 변화분을 포함

1. 누적법은 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추계한 것이며, 순액법은 각 연도에 전년 대비 증가한 세수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두 방식 모두 단순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2. 세수효과는 개정세법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추계한 결과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개정세법 심의결과 및 주요 내용」, 2023.12

6) 국회에서 가결된 개정세법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결과이며, 세수효과는 기준연도(2023년) 대비 증가한 누적세수를 세수효과로 선정하는 방식인 누적법을 기본으로 사용함

**[참고]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2024년 경제정책방향」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령을 개정하였음

**(1) 소득세제 분야**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과배제 1년 한시 연장(24.5.9. → '25.5.9.)
-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3천만원 → 5천만원)
-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모든 근로자)
- 사립학교 직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월 150만원 한도)

**(2) 법인세제 분야**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기술 확대
  - (신성장·원천기술) 방위산업 분야 신설, 탄소중립 및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 확대

**(3) 소비세제 분야**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천만원 → 1억 400만원)
- 유류세 및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 유류: '23.12.31. → '24.2.29. → '24.4.30. / 발전연료: '23.12.31. → '24.6.30.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프로판 20 → 14원/kg, 부탄 275 → 176.4원/kg)

**(4) 자산세제 분야**

-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완화(업종변경 중분류 내 → 대분류 내 허용)

**(5) 기타**

- 과일류 21종 할당관세 신규 적용('24.1.19.~6.30.)
-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3천만원 → 5천만원)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등(여행사업, 앰블런스서비스업 등 13개 업종)

# 2024년 육아휴직 관련 제도개선에 따른 재정소요분석

남 희 추계세제분석관 (02-6788-3737)

## 1. 제도개선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002년부터 초저출산에 해당하는 1.3명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2022년에는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최근 고용노동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등을 목적으로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 등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실업급여 계정(구직급여 등)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등)으로 구분되며,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실업급여 계정의 주요 지출 사업 중 하나임
-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중 육아휴직은 모성보호 육아지원 제도 중 하나로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퇴직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을 지원하는 제도
  - ▶ (2024년 육아휴직 제도개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 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sup>1)</sup>하고,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
    - (기간 연장)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을 추가 부여(1년 → 1년 6개월)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월 상한 15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초기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초기 6개월 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상향하여 지급 \* 지원금액은 휴직 첫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임<sup>2)</sup>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하여 주 15~35시간 수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고용보험으로 줄어든 노동 시간에 대한 급여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최대 12개월까지<sup>3)</sup> 최초 5시간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통상임금의 80%에 근로시간 단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sup>4)</sup>

1) 2024년 하반기 잠정 시행

2) 참고로,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2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급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 (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확대하고, 사용기간과 지급금액 확대를 내용으로 한 제도 개편<sup>5)</sup>
  - (재정지원 확대) 기존에는 주 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였으나, 주 10시간으로 확대
  - (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
  - (기간 확대) 한 아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2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연장

**표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개편 내용**

	구 분	개편내용
육아휴직	기간연장	맞벌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 6개월 추가기간 부여 단,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모두 6개월 추가기간 부여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동안 부모에게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 지원단가: 육아휴직 첫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재정지원 확대	2023년: 기존 주 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급 → 2024년: 주 10시간으로 확대
	연령확대	2023년: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2024년: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기간확대	2023년: 최대 24개월 → 2024년: 최대 36개월 ※ (기존) 12개월 + 12개월(미사용 육아휴직기간) → (개편) 12개월 + 24개월(미사용 육아휴직기간의 2배)

주: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은 2024년 하반기 잠정 시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본고는 제21대 국회(2020년~2024년 1월)에서 발의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고용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2024년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변화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4) 「고용보호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5) 2024년 하반기 잠정 시행



## 2.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 현황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12만 6,008명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자는 2만 3,188명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

- 2023년에는 2022년에 비해 육아휴직 사용자 규모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최근 출산율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실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확산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확대는 다양한 제도개선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의 사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 육아휴직 사용자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23년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남성은 3만 5,336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28.0%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과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수급자 수는 202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2019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6558호)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선에 기인함
    - 2019년 이전까지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나, 법률의 개정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추가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됨

표 2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수급자 수: 2017~2023년

(단위: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육아휴직	90,108	99,198	105,165	112,040	110,555	131,087	126,008
남성	12,042	17,665	22,297	27,423	29,041	37,885	35,336
여성	78,066	81,533	82,868	84,617	81,514	93,202	90,67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821	3,820	5,660	14,698	16,689	19,466	23,188
남성	321	550	742	1,639	1,632	2,001	2,415
여성	2,500	3,270	4,918	13,059	15,057	17,465	20,773

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사용시간에 대한 분류가 어려운 수급자가 있어 참고자료의 수치와 상이함  
 자료: 고용노동부

그림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수급자 현황: 2017~2023년



2023년 사용기간은 육아휴직의 경우 평균 8.9개월을 사용하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평균 9.3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이를 위해 연간 1조 7,900억원의 재정이 편성

-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21년 이후 여성 육아휴직자의 평균 사용기간은 감소하였고, 남성 육아휴직자의 사용기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다양한 제도개선과 육아에 대한 남성의 참여 확대에 대한 행태변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 2023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1조 6,96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24년에는 최근 수급자의 증가 추세 및 제도개선 사항을 고려하여 1조 9,869억원의 계획액이 편성됨
  - 2024년 변경되는 정책은 하반기 시행할 계획으로 6개월분의 계획액이 편성되었으며, 제도개선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63억원임

- 2023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서는 93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24년에는 최근 수급자의 증가 추세 및 제도개선 사항을 고려하여 1,490억원의 계획액이 편성됨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로 2024년 제도개선 사항은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6개월분의 계획액이 편성되었으며, 2024년 제도개선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303억원임

표 3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및 예결산 현황: 2017~2024년

(단위: 월,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b>사용기간</b>								
육아휴직	9.4	9.4	9.5	9.4	9.5	9.0	8.9	—
남성	6.3	6.6	7.0	7.0	7.3	7.3	7.5	—
여성	9.8	10.0	10.2	10.2	10.3	9.6	9.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7.5	7.4	7.9	9.0	9.3	9.4	9.3	—
남성	7.6	7.0	7.4	7.7	8.6	8.5	8.7	—
여성	7.5	7.4	7.9	9.1	9.4	9.5	9.4	—
<b>예결산 현황</b>								
육아휴직	680,430	839,083	1,058,853	1,212,143	1,297,525	1,657,231	1,696,352	1,986,86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1,785	15,663	21,095	54,995	89,669	107,330	93,685	149,048

주: 2022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3년 및 2024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 2022년 결산 기준 육아휴직의 지원단가는 약 140만원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지원단가는 약 59만원으로 나타남
  - ▶ 지원단가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 육아휴직자의 평균 육아휴직 급여는 142만원이며, 여성 육아휴직자의 평균 육아휴직 급여는 139만원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 소득 격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표 4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단가: 2017~202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육아휴직	0.80	0.90	1.06	1.15	1.24	1.40
남성	0.81	0.90	1.11	1.23	1.28	1.42
여성	0.81	0.90	1.05	1.14	1.22	1.3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0.56	0.56	0.50	0.41	0.57	0.59
남성	0.63	0.64	0.56	0.50	0.65	0.63
여성	0.55	0.54	0.49	0.40	0.56	0.58

자료: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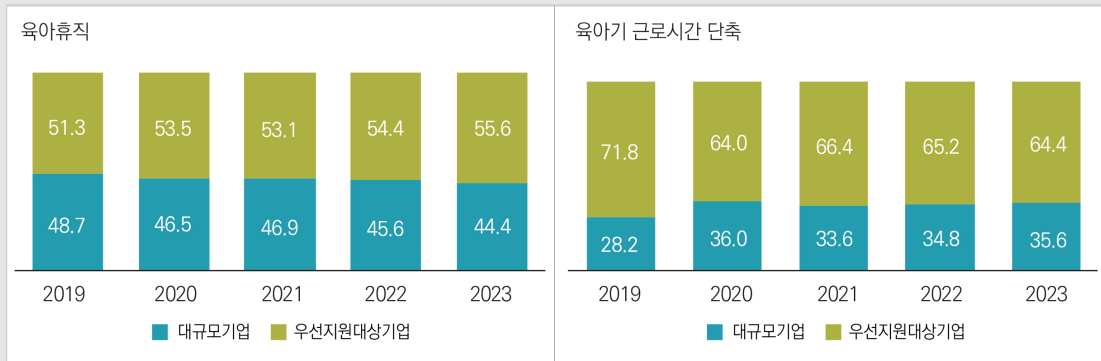
6) 지원단가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인당 월평균 지원단가를 의미하며, 연간 재정소요액을 지급인원으로 나눈 뒤 이를 평균 지급기간으로 나누어 산출

**[참고]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현황**

- 육아휴직 사용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sup>7)</sup> 소속 근로자는 2023년 70,095명으로 전체 사용자의 55.6%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14,939명으로 전체 사용자의 64.4%임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비중은 2023년 기준 55.6%와 64.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나,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대기업<sup>8)</sup> 소속 종사자가 19.1%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sup>9)</sup> 실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자가 기업규모별 분포에는 이르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임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현황: 2019~2023년**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며, 동 사업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출산·육아와 관련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재정 사업이 수행**

- 모성보호급여로 인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요 비용의 일부를 매년 일반회계에 반영하여 고용보험기금 전출금 방식으로 보전하고 있음
  -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되며, 고용노동부는 2018년 이후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확대하여 2024년 예산액 기준 4,000억원을 지급

7)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수를 토대로 산출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광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 등의 경우 300인 이하, 도매·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경우 2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용보험법시행령」제12조).

8) 중소기업 범위 초과 기업으로 ①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을 초과하는 기업 ②자산 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 ③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④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등

9) 1.육아휴직에서의 대규모 기업과 「중소기업기본통계」 대기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해당 수치는 2021년 기준 자료임(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2021)

표 5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2017~2024년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모성보호급여지원 총액(A)	9,356	11,041	13,500	15,614	16,850	20,772	21,006	24,968
일반회계 전입금(B)	900	900	1,400	1,800	2,200	3,000	3,000	4,000
고용보험기금 순수부담	8,456	10,141	12,100	13,814	14,650	17,772	18,006	20,968
비중(C=B/A)	9.6%	8.2%	10.4%	11.5%	13.1%	14.4%	14.3%	16.0%

주: 2022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3년 및 2024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참고] 주요국의 부모휴가 재원 조달 방식**

- 부모휴가(parental leave)는 어린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한 것으로 일정 기간 혹은 자녀가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 부모가 휴가를 전일로 혹은 시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와 달리 거의 모든 주요 국가들은 두 제도를 구분하지 않고 유연하게 전일제나 시간제로 사용하도록 함 - 주요국의 부모휴가 재원 조달 방식은 다음과 같음

국가	재원	국가	재원
오스트리아	가족부담평등화기금(FLAF)	프랑스	가족수당기금
벨기에	건강보험+조세	독일	조세
캐나다	고용보험	일본	고용보험
캐나다(퀘벡)	부모보험(QPIP)	네덜란드	고용보험
덴마크	조세	노르웨이	조세+단체협약
핀란드	건강보험/조세	스웨덴	부모보험

자료: 윤자영, 「주요국 사례연구를 통한 모·부성보호급여 재정 추이 분석 및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24.1

- 주: 1. FLAF(Family Burdens Equalisation Fund)는 가족부담평등화기금  
 2. QPIP(Quebec Parental Insurance Plan)는 부모보험  
 3. 고용형태별 대상자만 나열함. 기타 동성 파트너, 이주민 등의 대상자 적용 대상 여부는 생략함.  
 4. 2023년 기준

**3.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 입법 동향**

2024년 3월 말 기준, 국회에서 심사 중인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기간의 확대나 분할 사용 횟수의 상향, 지원금액의 상향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함<sup>10)</sup>

10)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의 추가재정소요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은 제외하고 검토  
 ※ 육아휴직 청구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허용한 것으로 의제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및 벌금 규정 신설(옹혜인의 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5685), 육아휴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83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거부 사유 제한(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746),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이후 이전 근무지역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지역 복귀(조정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472), 육아휴직 관련 불리한 처우에 대한 소송 이외의 간소한 구제방안 마련(유정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 (사업대상자 확대) 대상 연령 상향, 육아휴직 등의 의무화 및 자동신청제를 통한 기존 대상자 중 수급자를 확대하는 등의 개정안이 있음
  - ▶ 또한 위탁 아동을 포함하여 사업대상자가 되는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나 자영업자 등 기존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았던 범위까지 대상자를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이 있음

**표 6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대상자 확대 관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

구분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 내용
육아휴직	2103044	윤재갑의원	2020.8.19.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상향
	2119436	김선교의원	2023.1.12.	
	2112251	김미애의원	2021.8.26.	
	2109962	서정숙의원	2021.5.7.	• 육아휴직의 대상에 가정위탁 아동 포함
	2111566	고민정의원	2021.7.19.	
	2113668	남인순의원	2021.12.2.	•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
	2124950	정태호의원	2023.9.27.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는 신청 없이 육아휴직 사용
	2120820	장경태의원	2023.3.23	• 육아휴직 의무화
	2121022	양기대의원	2023.3.30.	
	2123054	박용진의원	2023.7.3.	
	2123556	최승재의원	2023.7.28.	
	2104563	김두관의원	2020.10.19.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의무화
	2115256	정일영의원	2022.4.14.	
	2119467	고영인의원	2023.1.13.	
2115888	김태년의원	2022.6.13.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육아기간 급여’ 지원	
2120310	소병훈의원	2023.2.27.	•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육아기간 급여’ 지원	
2126173	이주환의원	2024.1.8.	• 자영업자 ‘육아기간 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100989	강기윤의원	2020.6.2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상향
	2103044	윤재갑의원	2020.8.19.	
	2119436	김선교의원	2023.1.1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가정위탁 아동 포함
	2112505	고민정의원	2021.9.10.	
	2123054	박용진의원	2023.7.3.	

주: 1. 2024년 3월 기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심사 중인 법률안을 대상으로 함  
 2. 음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번호 2122456),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허용하는 통지를 하지 않는 때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의제(김경협의원안(2121817), 김용민의원안(2121783), 임호선의원안(2121406) 등), 사업주가 휴직신청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개시(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071),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21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허용 의무화(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0809),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허용(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846) 등이 이에 해당함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아닌 법률안(예: 「부모보험법」(의안번호 제1224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52호) 등)은 제외하고 검토하였으며, 정부안의 경우에도 포함하지 않음  
 3. 복수의 개정안이 동시에 발의되어 함께 발의된 개정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주된 내용이 수록된 하나의 개정안만을 기재함

- (수급기간 확대) 등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맞벌이 가구 간 사용기간 양도 및 한부모근로자나 맞벌이 가구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있음

**표 7**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급기간 확대 관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황

구분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 내용
육아휴직	2101359	윤영석의원	2020.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li> <li>• 육아휴직 기간 연장</li> <li>• 한부모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분할 사용 횟수 상향</li> <li>• 맞벌이 가구에 대하여 육아휴직 기간 연장</li> <li>• 맞벌이 가구의 근로자 중 일방이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 기간을 배우자가 양도받아 사용</li> <li>•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 연장</li> <li>• 한부모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 연장</li> </ul>
	2103044	윤재갑의원	2020.8.19.	
	2116234	강대식의원	2022.6.30.	
	2117350	전용기의원	2022.9.14.	
	2119436	김선교의원	2023.1.12.	
	2119787	김윤덕의원	2023.2.2.	
	2120178	노용호의원	2023.2.22.	
	2123054	박용진의원	2023.7.3.	
	2119734	박광온의원	2023.2.1.	
	2120855	김도읍의원	2023.3.24.	
2121350	민병덕의원	2023.4.13.		
2124289	이주환의원	2023.9.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101359	윤영석의원	2020.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li> <l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li> <l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변경</li> <li>• 한부모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및 분할 사용 횟수 상향</li> </ul>
	2108191	양경숙의원	2021.2.18.	
	2108565	박광온의원	2021.3.5.	
	2116295	이용선의원	2022.7.5.	
	2119436	김선교의원	2023.1.12.	
	2119787	김윤덕의원	2023.2.2.	
	2120178	노용호의원	2023.2.22.	
	2123054	박용진의원	2023.7.3.	
	2116157	황보승희의원	2022.6.27.	
	2119734	박광온의원	2023.2.1.	

주: 2024년 3월 기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심사 중인 법률안을 대상으로 함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지원단가 상향) 지원단가와 관련된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급여액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있는 반면, 육아휴직 급여액을 상향 조정하되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 적용 또는 상한선 및 하한선을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있음

▶ 또한 한부모가족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단가를 가산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있음

**표 8** 육아휴직 지원단가 인상 관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

구분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발의일자	주요 내용
육아휴직	2102720	김미애의원	2020.8.5.	•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별 하한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상한액은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이상 지급
	2103110	박광온의원	2020.8.20.	• 한부모가족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액 가산
	2107721	문진석의원	2021.1.28.	• 육아휴직 급여액 상황 -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 7개월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지급
	2108267	진선미의원	2021.2.24.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2115543	김희재의원	2022.5.11.	• 육아휴직 급여액 상황 - 3개월까지: 평균임금 지급 -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평균임금의 80% 지급
	2120829	장경태의원	2023.3.23.	• 육아휴직 급여액 상황 - 월 통상임금으로 하되, 최저임금 이상 지급
	2121002	오영환의원	2023.3.30.	• 육아휴직 급여액 상황 - 상한선을 300만원으로 상향
	2122923	박용진의의원	2023.6.28.	• 육아휴직 급여액 상황 - 하한선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2024년 3월 기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심사 중인 법률안을 대상으로 함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4. 2024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따른 재정전망

### 가. 추계의 전제 및 방법

본고는 2024년 제도개선 방안과 기 발의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고자 함

- 본 자료에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추계기간은 5년(2025~2029년)으로 하며, 주요 가정의 변동 및 통계자료의 갱신 등으로 인한 수치 변화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음
  - ▶ 추계기간 동안 출산율 및 혼인율의 감소 등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자 수가 변화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추계기간 동안 자녀의 출생 순위, 동일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아휴직 순서 등 제도 내에서의 차등지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지원단가는 장래에 발생할 사회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향후 경기변동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며,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



(1) 육아휴직

2024년 육아휴직 제도의 개편에 따른 재정요소 분석은 2024년 육아휴직 제도의 개편 내용을 토대로 사업대상자 수 전망치에 지원단가 및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산출

- (사업대상자) 추계기간(2025~2029년) 동안 육아휴직 수급자 수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토대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추계
  - ▶ 여성 육아휴직자는 근로자 수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여성 육아휴직자 수에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하며,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여성 육아휴직자 수를 토대로 산출
    - 여성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수의 비중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실적을 토대로 매년 3.5%p 상승한다는 가정하며, 장래에 발생할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는 최대 여성 육아휴직자의 50.0%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 (육아휴직 기간 연장) 2023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사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15.7%)을 준용하여 산출
    - ('6+6 부모육아휴직제') 추계기간 동안 남성 육아휴직자 수에 제도 도입에 따른 가중치(a)를 적용하여 추계
      - \* 가중치는 2023년 기준 자녀 나이 18개월 미만 사용자 비중(69.5%), 2022년 기준 임금근로자 비율(76.5%), 최근 3년간(2019~2021년) 맞벌이가구 비율(45.9%), 2021년 고용보험가입률(90.5%)을 적용하여 산출

표 9 사업대상자(추정치): 2025~2029년

(단위: 명)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육아휴직자 수	남성(A)	43,528	48,502	49,605	50,734	51,889
	여성(B)	94,845	97,004	99,211	101,468	103,777
	소계(C=A+B)	138,373	145,505	148,816	152,203	155,666
육아휴직 기간 연장(D=C×15.7%)		21,725	22,844	23,364	23,896	24,440
6+6 부모육아휴직제(E=A×2a)		19,246	21,446	21,934	22,433	22,943

주: 1. 각 표의 합계는 단순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행태변화 및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3.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산출된 사업대상자 수에 2배를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원단가)
  - ▶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가장 최근 결산 자료(2022년)에 따른 월평균 지원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
  -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2024년 기준 예산상 지원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지원기간)

- ▶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른 사용기간은 2023년 기준 법정 육아휴직 기간(12개월) 대비 평균 사용기간(8.9개월)의 비중을 토대로 산출
- ▶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지원기간은 제도 설계상 사용기간을 준용하여 산출

**표 10**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5~2029년

(단위: 명, 백만원, 월)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육아휴직 기간 연장	사업대상자 수(A)	21,725	22,844	23,364	23,896	24,440
	지원단가(B)	1.54	1.59	1.64	1.69	1.75
	지원기간(C)	4.5	4.5	4.5	4.5	4.5
	추가재정소요 (D=A×B×C, 억원)	1,505	1,633	1,724	1,820	1,921
6+6 부모육아휴직제	사업대상자 수(E)	19,246	21,446	21,934	22,433	22,943
	추가 지원단가(F)	1.16	1.20	1.24	1.28	1.32
	지원기간(G)	6	6	6	6	6
	추가재정소요 (H=E×F×G, 억원)	1,345	1,547	1,633	1,724	1,819
합계(I=D+H, 억원)		2,850	3,180	3,357	3,544	3,7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편에 따른 재정소요 분석은 2024년 제도 개편 내용을 토대로 사업대상자 수 전망치에 지원단가 및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산출**

- (사업대상자 수) 추계기간(2025~2029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대상자 수는 최근 4년간(2020~2023년) 사용현황을 토대로 산출
  - ▶ (재정지원 확대<sup>11)</sup>) 최근 4년간(2020~20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증가율(16.4%)을 적용하여 산출
  - ▶ (연령확대<sup>12)</sup>) 추계기간 동안 산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급자 수에 현행 제도상 사용가능 기간(9년, 자녀 0~8세)을 고려하여, 추가 사용가능 기간(4년) 대비 증가기간의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
    - 2024년 제도개선에 따라 확대되는 연령에 비례하여 수급자 수가 증가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11) 기존에는 주 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였으나, 재정지원 기간을 주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임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임

- ▶ (기간확대<sup>13</sup>) 미사용 육아휴직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의 장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여부를 검토할 수가 없으므로, 2023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중 11개월 이상 사용한 근로자 비율(50.3%)을 적용하여 산출
  - 2023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1개월 이상을 사용한 근로자가 2024년에 있을 제도개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을 추가 사용한다고 가정
  - 2024년 제도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연령의 아동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령확대에 따른 사용대상자도 포함하여 산출

표 11 사업대상자(추정치): 2025~2029년

(단위: 명)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재정지원 확대(A)	31,424	36,582	42,586	49,576	57,713	
연령 확대(B=A÷2.25)	13,966	16,259	18,927	22,034	25,650	
기간 확대	기존 사용자(C=A×50.3%)	15,811	18,406	21,427	24,944	29,038
	신규 사용자(D)	13,966	16,259	18,927	22,034	25,650
	소계(E=C+D)	29,778	34,665	40,354	46,978	54,688

주: 1. 각 표의 합계는 단순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형태변화 및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원단가) 2024년 예산상 지원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지원기간)
  - ▶ 재정지원 확대의 경우 2023년 평균 지급기간을 토대로 산출
  - ▶ 연령 확대의 경우, 연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따른 실제 사용기간은 평균 사용기간이 제도개선에 따른 연령 확대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 ▶ 기간 확대의 경우, 2019년 제도개선에 따른 평균 사용기간 증가분(2개월)을 적용하여 산출

13) 기존에는 한 아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2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내용임

표 12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5~2029년

(단위: 명, 백만원, 월)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재정지원 확대	사업대상자 수(A)	31,424	36,582	42,586	49,576	57,713
	지원단가(B)	0.04	0.04	0.04	0.05	0.05
	지급기간(C)	9.3	9.3	9.3	9.3	9.3
	추가재정소요 (D=A×B×C, 억원)	121	145	175	210	252
연령 확대	사업대상자 수(E)	13,966	16,259	18,927	22,034	25,650
	지원단가(F)	0.55	0.57	0.58	0.60	0.62
	지급기간(G)	4.13	4.13	4.13	4.13	4.13
	추가재정소요 (H=E×F×G, 억원)	316	380	457	549	659
기간 확대	사업대상자 수(I)	29,778	34,665	40,354	46,978	54,688
	지원단가(J)	0.55	0.57	0.58	0.60	0.62
	지급기간(K)	2	2	2	2	2
	추가재정소요 (L=I×J×K, 억원)	326	392	471	566	6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나. 비용추계 결과

2024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3,614억원, 2029년 5,332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조 2,372억원으로 추계됨

-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850억원, 2029년 3,740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조 6,671억원(연평균 3,334억원)으로 추계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764억원, 2029년 1,592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701억원(연평균 1,140억원)으로 추계됨

표 13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육아휴직(A)	2,850	3,180	3,357	3,544	3,740	16,671	3,33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B)	764	918	1,103	1,325	1,592	5,701	1,140
합계(C=A+B)	3,614	4,098	4,459	4,869	5,332	22,372	4,474

주: 1. 각 표의 합계는 단순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행태변화 및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5. 결론 및 시사점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되고 있고, 2024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제도개선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4,474억원으로 산출되었음

- 모성보호급여로 인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요 비용의 일부를 매년 일반회계에 반영하여 고용보험기금 전출금 방식으로 보전하고 있으나, 2024년 예산액 기준 모성보호급여 전체 지출 중 국가재정(일반회계 전입금)이 부담하는 비율은 16.0%에 불과함
  - ▶ 모성보호육아지원에 따른 재정지출의 증가가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 악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반회계 전입 확대 등을 포함한 정책적 고려 필요
  - ▶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료로 조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금의 재정건전성 및 수익자부담원칙 측면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원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 필요

고용노동부는 개편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2024년 하반기 시행할 계획으로 6개월간 보험료 지급에 소요될 지출액을 편성하였고 국회는 이를 심의·의결하였으나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신속한 법안 통과 필요

-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각각 6개월 연장 사용 가능)하는 개편방안에 대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289)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 상향 및 기간 확대에 관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의안번호 2125029)이 2024년 3월 현재 계류 중임<sup>14)</sup>
  - ▶ 해당 법률안의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고, 2024년 예산 심의 결과 하반기 시행을 계획으로 6개월 간 소요될 계획액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법안 통과를 통한 차질없는 제도 시행 필요

14) 참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제도 개편 내용 중 단축급여 확대(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구간 확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사항임

#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유류세 부담 및 유류세 인하 효과 분석

박 성 은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68)

## 1. 논의 배경

정부의 유류세<sup>1)</sup> 한시적 인하 정책이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 유류비 부담완화 목적에서 2021년 11월부터 2년 이상 시행 중인 가운데, 가구소득별 유류세율 인하 효과에 대한 관심 증가

- 고소득층일수록 유류세 부담이 저소득층보다 높아지는 만큼 유류세율 인하 혜택 또한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소득 수준 감안시 세율 인하에 따른 상대적 세부담 감소 효과는 고소득층에서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상존<sup>2)</sup>
-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유류세 부담 및 세율인하 효과를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2. 최근 제도 변화 및 현황

최근 유류세 인하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2021년 11월 실시되었으며,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현재 (2024년 3월)까지 8차례 연장 실시

- 2021년 11월 유류 탄력세율 인하(20%↓) 이후 2022년 5·7월 2차례에 걸쳐 인하폭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 고(30%↓ 및 37%↓) 2023년 1·5·9·11월 및 2024년 1·3월 6차례에 걸쳐 인하 기간이 연장
  - 휘발유 세율은 동 인하정책 시행 직전(2021년 10월) 820.5원/L 수준에서 2022년 7월 515.8원/L 수준 (37%↓)까지 인하된 이후 2023년 1월 615.2원/L(25%↓) 수준으로 인하폭이 축소되어 현재까지 적용중
  - 경유 세율은 동 시행 직전(2021년 10월) 581.7원/L에서 2022년 7월 369.2원/L(37%↓)까지 인하되어 현재까지 적용중

1) 본고에서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주행분 및 부가가치세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

2) 「유류세 인하하면 부자들이 더 혜택받는다?」, 연합뉴스, 2021.10.28.; 「특하면 '유류세 인하' 언제까지... "고소득층에 혜택 집중됐다"」, 한겨레신문, 2022.6.28

**표 1 유류세율 변화 추이: 2021년 11월 ~ 현재**

유종	기간별 세율	~ '21.10		'21.11 ~ '22.4		'22.5 ~ '22.6		'22.7 ~ '22.12		'23.1 ~ 현재	
		세율	합계	세율	합계 (인하폭)	세율	합계 (인하폭)	세율	합계 (인하폭)	세율	합계 (인하폭)
휘발유	교통·에너지·환경세	529.0	820.5	423.0	656.2 (△20%)	370.0	573.9 (△30%)	332.5	515.8 (△37%)	396.7	615.2 (△25%)
	교육세	79.4		63.5		55.5		49.9		59.51	
	자동차세 주행분	137.5		110.0		96.2		86.5		103.1	
	부가가치세	74.6		59.7		52.2		46.9		55.9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	375.0	581.7	300.0	465.3 (△20%)	263.0	408 (△30%)	238.0	369.2 (△37%)	238.0	369.2 (△37%)
	교육세	56.3		45.0		39.5		35.7		35.7	
	자동차세 주행분	97.5		78.0		68.4		61.9		61.9	
	부가가치세	52.9		42.3		37.1		33.6		33.6	

주: 1.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탄력세율이며 인하폭은 2021년 10월 세율 기준  
 2.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에 부과  
 3.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에 부과되나 본고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주행분 합계의 10%로 산정  
 자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은 2018년 15.3조원에서 2021년 16.6조원까지 증가 후, 2023년 10.8조원으로 감소**

- 유종별 납부할 세액을 살펴보면, 휘발유의 경우 2018년 6.4조원에서 2021년 6.8조원까지 증가한 후, 2022년 5.1조원으로 감소하였고, 경유는 2018년 9.0조원에서 2022년 6.1조원까지 감소 추세
  - ▶ 연평균 세율의 경우, 휘발유는 2018년 리터당 515.8원에서 탄력세율 인하 정책으로 2022년 368.9원까지 인하되었다가 2023년 396.7원으로 소폭 인상되었으며, 경유는 2018년 리터당 365.7원에서 2023년 238원까지 인하
  - ※ 유종별 통계의 경우 『국세통계연보』에서 징수액 기준이 아닌 부과액(납부할 세액) 기준으로 집계

**표 2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유류소비 현황: 2018~2023년**

(단위: 조원, 원/리터, 백만배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b>징수액</b>	<b>15.3</b>	<b>14.6</b>	<b>13.9</b>	<b>16.6</b>	<b>11.1</b>	<b>10.8</b>	
<b>부과액<sup>1)</sup> (납부할 세액)</b>	소계	15.5	15.1	15.6	11.2	(미집계)	
	휘발유	6.4	6.3	6.7	5.1		
	경유	9.0	8.7	8.9	6.1		
<b>세율 (연평균)</b>	휘발유	515.8	490.3	529.0	511.3	368.9	396.7
	경유	365.7	347.7	375.0	362.5	262.8	238.0
<b>소비량<sup>2)</sup></b>	휘발유	79.7	82.7	81.0	84.9	88.4	90.4
	경유	164.1	166.9	155.0	156.3	151.8	149.0

주: 1) 유종별 통계는 신고현황 기준에서만 제공되며 현재 2022년 자료까지 공개(『2023년 국세통계연보』, 2024.1)  
 2) 유류소비량의 경우 2022년 자료는 추정치, 2023년은 예상치(에너지경제연구원, 『2024년 에너지수요전망』, 2024.1)  
 자료: 국세청(각년도 「국세통계연보」), 기획재정부(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보도자료 「'23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잠정)」, 2024.1.31), 에너지경제연구원(각연도 「에너지수요전망」) 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3. 유류세 부담 및 유류세 인하 효과 분석

#### 가. 분석 목적

##### 유류 탄력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소득분배 측면에서의 실증적 분석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동차 보유에 따른 수송용 연료 사용량이 증가하여 유류세 부담이 저소득층보다 높아지게 되는 만큼, 세율인하에 따른 세부담 감소폭 또한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한편, 소득수준 감안시 세율인하에 따른 세부담 감소 효과는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 또한 상존
- 이에 따라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유류세 부담 및 세율인하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실시

#### 나. 분석 방법

##### 『재정패널조사』 13차년도 자료(2019년) 총소득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하여 해당 가구의 휘발유 및 경유 소비량을 추정한 후, 2022년 연평균 유류세율 변화를 적용하여 소득분위별 유류세 감소액 산출

- (분석자료) 『재정패널조사』 13차년도(귀속년도 2019년, 조사대상 8,792가구) 자료
  - ▶ 재정패널 자료로 조사된 2021년(15차년도)까지 기간중 유류 탄력세율 인하정책이 2019년에 최장기간 실시되었으므로 세율인하 기간 유류소비 행태가 가장 잘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9년 기준의 13차년도 패널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함<sup>3)</sup>
    - ※ 최근 5년간 유류 탄력세율 인하 정책은 '18년 11월부터 '19년 8월까지 기간 및 '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실시
- (소득) 재정패널에서 유류비 지출은 가구 단위로 조사되므로 가구 총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
- (유류소비) 조사대상 연도, 가구 거주지역 등을 반영한 유류 판매가격을 바탕으로 가구 단위로 조사된 자가용(비영업용) 월평균 휘발유 및 경유의 지출액을 이용하여 연평균 유류 소비량 추정
- (유류세) 가구별 연평균 유류 소비량 추정치에 연평균 유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분위별 유류세 부담액을 추정하고 세율 인하폭 등 일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유류세 감소액을 계산
  - ▶ (유류세 감소액)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탄력세율 인하가 있었던 2021~2022년간 연평균 세율인하 폭인 28%를 적용하여 유류세 감소액 계산

##### 분석결과는 유류세 부담 및 감소 금액과 함께 분위별 가구 총소득에 대한 해당 금액의 비율 또한 함께 제시

- 소득 여력을 기준으로 분석하기 위해 유류세 부담액 및 감소액의 가구총소득 대비 비율 또한 함께 제시

3) 또한,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구조 변화를 감안, 직전 년도인 2019년을 기준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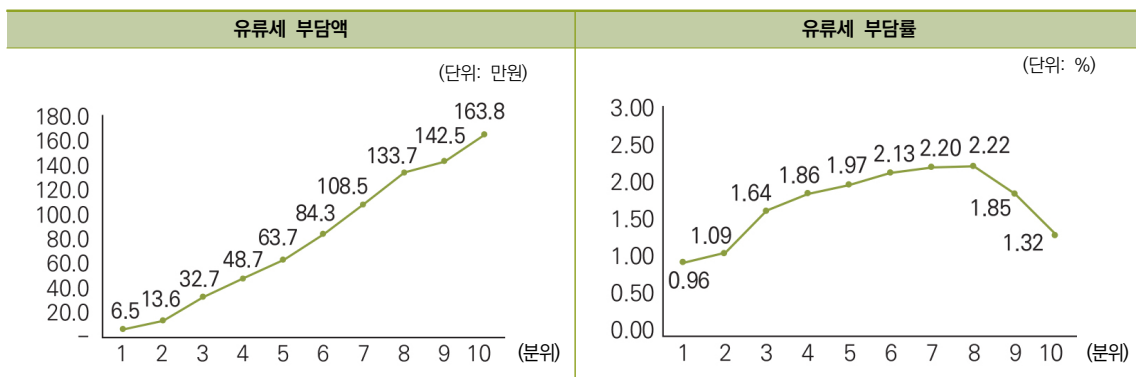
## 다. 분석 결과

### (1) 가구소득 분위별 유류세 부담

휘발유 및 경유의 가구총소득 분위별 유류세 부담률은 저분위(1분위)에서 가장 낮으며 중간분위(8분위) 구간까지 증가하다가 고분위(9~10분위)에서 감소하는 역U자 형태로 나타남

- (유류세 부담액) 유류세 부담액은 1분위 6.5만원, 8분위 133.7만원, 10분위 163.8만원 등 저분위에서 고분위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
  - ▶ 연평균 유류 소비량은 1분위 87리터, 8분위 1,801리터, 10분위 2,186리터이며, 연평균 유류 지출액은 1분위 12만원, 8분위 256만원, 10분위 314만원 등 저분위에서 고분위로 갈수록 증가
- (유류세 부담률) 유류세 부담률은 1분위에서 0.96%, 6분위에서 2.13%로 2% 수준보다 높아지고, 8분위에서 2.22%까지 증가하다가 9분위에서 1.85%로 하락하고 10분위는 1.32%까지 낮아지는 추세
  - ▶ 필수재로 분류될 수 있는 휘발유와 경유는 소득에 따른 소비 증가율이 대체로 체감하는 반면, 소득 증가율은 9분위 이후 체증하여 유류세 부담액의 증가율을 상회하기 때문에 유류세 부담률이 고분위 구간에서 감소

그림 1 소득 10분위별 유류세 부담



자료: 제13차(2019년 귀속 기준)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소득 10분위별 유류세 부담

분위	(분위별 가구당 평균금액, 단위: 만원, 리터, %)									
	1	2	3	4	5	6	7	8	9	10
유류 소비량	87	185	449	671	858	1,130	1,473	1,801	1,944	2,186
유류 지출액	12	26	63	94	122	161	209	256	276	314
유류세 부담액 (가)	6.5	13.6	32.7	48.7	63.7	84.3	108.5	133.7	142.5	163.8
총소득 (나)	675	1,246	1,992	2,615	3,231	3,963	4,938	6,016	7,701	12,399
유류세 부담률 (가/나)	0.96	1.09	1.64	1.86	1.97	2.13	2.20	2.22	1.85	1.32

주: 1. 2019년 휘발유(490.3원/L) 및 경유(347.7원/L)의 연평균 세율수준 반영  
 자료: 제13차 『재정패널조사』 자료(2019년 귀속 기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 가구 소득분위별 유류세율 인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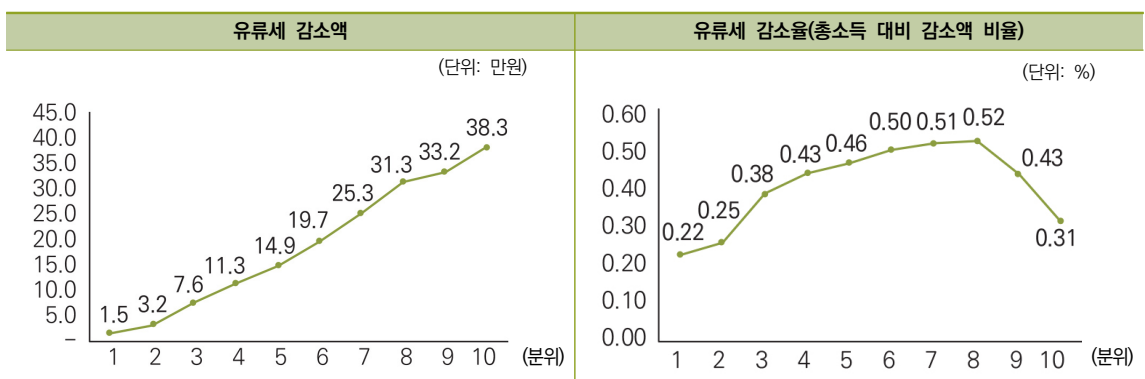
유류세율 인하 효과는 휘발유 및 경유의 유류세율이 28% 인하된 것으로 가정하여 유류세 감소액으로 측정

- 상기 유류세 부담 분석에서 사용된 2019년 가구소득과 휘발유 및 경유 소비를 기준으로 유류세율 인하폭 28%를 적용하여 유류세 감소액 산출
  - ▶ 유류세율 28% 인하는 휘발유 및 경유의 2022년 연평균 세율의 전년대비 인하폭으로서, 2022년은 유류 탄력세를 인하 정책이 시행된 2019년 이후 연평균 세율 기준으로는 가장 큰 폭의 인하가 있었던 시기<sup>4)</sup>

유류세율 인하에 따른 유류세 감소율은 소득 저분위에서 중간분위까지 증가하고 고분위에서 감소하는 역U자 형태로 나타남

- (유류세 감소액) 연평균 유류세율 28% 인하시 유류세 감소액은 소득 1분위 가구에서 1.5만원이며 점차 증가하여 소득 10분위 가구에서 38.3만원까지 증가
  - ▶ 유류세는 유류소비량에 따라 부담수준이 결정되고 유류세 감소액 또한 유류소비량에 비례하게 되므로, 유류세 부담액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류세 감소액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류세 감소율) 유류세율 28% 인하시 가구총소득 대비 유류세 감소율은 소득 1분위 0.22%에서 증가하여 5분위에서 0.5% 수준을 상회하고 8분위에서 0.52%까지 높아졌다가 점차 낮아져 10분위에서 0.31%까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 ▶ 상기 유류세 부담률의 경우와 같이, 필수재 성격의 휘발유와 경유는 소득에 따른 소비 증가율이 대체로 체감하는 반면, 소득 증가율은 9분위 이후 체증하여 유류세 감소액의 증가율을 상회하게 되기 때문에 유류세 감소율이 고분위 구간에서 감소

그림 2 유류세율 인하시 소득분위별 유류세 감소: 유류세율 28% 인하 가정



주: 1. 2019년 소득 및 휘발유·경유 소비 기준에 2022년 연평균 세율의 전년대비 인하폭 적용  
 자료: 제13차 『재정패널조사』 자료(2019년 기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2022년 연평균 세율의 전년대비 변화는 휘발유의 경우 511.3원/L에서 368.9원/L, 경유는 362.5원/L에서 262.8원/L으로 인하

표 4 유류세율 인하시 소득분위별 유류세 감소: 유류세율 28% 인하 가정

(분위별 가구당 평균금액, 단위: 만원, %)

소득분위		1	2	3	4	5	6	7	8	9	10
유류세 부담액	인하전 <sup>1)</sup> ①	6.7	14.1	33.9	50.4	66.0	87.2	112.4	138.5	147.5	169.6
	28% 인하후 <sup>2)</sup> ②	5.2	10.9	26.2	39.1	51.1	67.5	87.0	107.2	114.3	131.3
	감소액(가 = ① - ②)	1.5	3.2	7.6	11.3	14.9	19.7	25.3	31.3	33.2	38.3
총소득 (나)		675	1,246	1,992	2,615	3,231	3,963	4,938	6,016	7,701	12,399
유류세 감소율 (가/나)		0.22	0.25	0.38	0.43	0.46	0.50	0.51	0.52	0.43	0.31

주: 1. 2019년 소득 및 휘발유·경유 소비 기준에 2022년 연평균 세율의 전년대비 인하폭 적용

1) 2021년 휘발유(511.3원/L) 및 경유(362.5원/L)의 연평균 세율수준 반영

2) 2022년 휘발유(368.9원/L) 및 경유(262.8원/L)의 연평균 세율수준 반영

자료: 제13차 『재정패널조사』 자료(2019년 기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4. 결론

유류세율 인하에 따른 가구소득 분위별 유류세 감소액은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추세를 보이나,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총소득 대비 유류세 감소액의 비율은 저분위에서 중간분위까지 증가하다가 고분위에서는 감소하는 역U자 형태로 나타남

- 소득분위별 연간 유류비 지출액이 1분위 12만원, 10분위 314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류세율 인하에 따른 유류세 감소액 또한 1분위 1.5만원에서 10분위 38.3만원으로 증가
  - ▶ 가구의 유류비 지출액은 차량 소유 등으로 유류비를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 한해 측정되기 때문에 차량소유 비율이 높아 유류소비량이 많은 계층일수록 유류세 인하에 따른 혜택이 큰 것으로 측정
- 유류세율 인하에 따른 유류세 감소액의 총소득 대비 비율은 1분위 0.22%에서 8분위 0.52%까지 증가하다가 9분위부터는 소득 증가율이 유류세 감소액의 증가율을 상회하여 0.43%로 감소하는 역U자 형태로 나타남

다만, 유류세율 인하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생활안정 등의 목표를 함께 고려한 정책이므로 소득분위별 혜택뿐만 아니라 여타 정책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눈에 보는 조세 · 재정지표



# 주요 재정총량 지표

## 재정총량 추이

(단위: 조원)

재정총량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	1~11월
총수입(A)	351.9	356.4	371.8	401.8	430.6	465.3	473.1	478.8	570.5	617.8	625.7	529.2
국세수입	201.9	205.5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400.5	324.2
세외수입	27.3	24.6	23.7	23.5	25.5	26.0	25.3	26.9	30.5	30.8	25.0	24.8
기금수입	122.6	126.2	130.2	135.6	139.5	145.1	154.0	166.2	195.8	190.8	200.3	180.0
세입외	0.0	0.1	0.1	0.1	0.1	0.6	0.4	0.1	0.1	0.3	—	0.1
총지출(B)	337.7	347.9	372.0	384.9	406.6	434.1	485.1	549.9	601.0	682.4	638.7	548.6
예산	239.1	243.7	256.8	264.7	275.2	293.7	329.0	374.4	398.9	439.6	441.1	375.5
기금	98.2	104.0	115.0	119.9	127.3	133.8	144.9	175.2	199.6	231.2	197.7	172.3
세출외	0.3	0.2	0.2	0.3	4.0	6.6	11.2	0.4	2.6	11.6	—	0.8
통합재정수지(A-B)	14.2	8.5	-0.2	16.9	24.0	31.2	-12.0	-71.2	-30.4	-64.6	-13.1	-19.5
관리재정수지	-21.1	-29.5	-38.0	-22.7	-18.5	-10.6	-54.4	-112.0	-90.5	-117.0	-58.2	-64.9
국가채무(중앙정부)	464.0	503.0	556.5	591.9	627.4	651.8	699.0	819.2	939.1	1,033.4	1,101.7	1,109.5
(GDP 대비, %)	(30.9)	(32.2)	(33.6)	(34.0)	(34.2)	(34.3)	(36.4)	(42.4)	(45.6)	(48.1)	(49.0)	—

주: 1. 2022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3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2023년 1~11월은 실적 기준임

2.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함

3.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단순합계 및 단순차감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4년 2월호)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분야별 총지출 추이

(단위: 조원)

16개 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	2024 예산
공공질서 및 안전	15.2	15.8	16.7	17.5	18.3	18.8	20.2	21.1	21.7	22.4	22.9	24.4
과학기술	5.8	6.0	6.5	6.7	7.0	7.0	7.3	8.1	8.9	9.5	9.9	9.3
교육	48.5	50.5	52.5	55.4	59.2	64.3	70.5	70.9	77.4	95.0	96.3	89.8
교통 및 물류	18.2	18.0	20.9	19.1	18.5	15.3	16.3	18.3	21.1	21.7	20.8	22.1
국방	32.9	33.8	35.6	36.8	37.9	41.2	44.9	46.3	49.3	50.4	55.3	57.4
국토 및 지역개발	5.0	4.4	4.5	4.0	3.5	3.7	4.4	4.8	5.1	5.1	4.2	4.4
농림수산	17.8	17.0	19.1	18.7	19.4	19.6	20.4	21.7	22.9	23.2	24.4	25.4
문화 및 관광	5.0	5.2	6.2	6.7	6.9	6.3	7.2	8.1	8.5	9.0	8.6	8.7
보건	8.8	9.2	11.2	10.5	10.3	10.7	11.9	17.4	26.5	32.8	20.0	18.8
사회복지	89.8	98.4	107.0	112.4	121.0	136.0	154.8	181.0	189.6	195.1	206.0	224.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6.4	15.4	17.8	18.5	19.0	18.8	20.6	37.2	46.2	73.7	26.0	28.0
예비비	0.4	0.4	0.5	0.5	0.6	0.6	0.6	0.6	0.6	0.6	4.6	4.2
일반·지방행정	57.1	57.7	57.1	60.9	64.3	68.4	75.4	93.1	98.2	108.1	112.2	110.5
통신	7.3	6.8	6.4	6.2	6.2	6.2	7.0	8.0	8.2	8.7	9.0	9.4
통일·외교	3.1	2.9	3.1	3.8	3.3	3.7	3.9	3.7	4.2	4.5	6.4	7.5
환경	6.1	6.1	6.7	6.9	7.1	7.0	8.5	9.3	10.2	11.0	12.2	12.5

주: 1. 2022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3년 및 2024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임

2. 총지출 중 세입세출외는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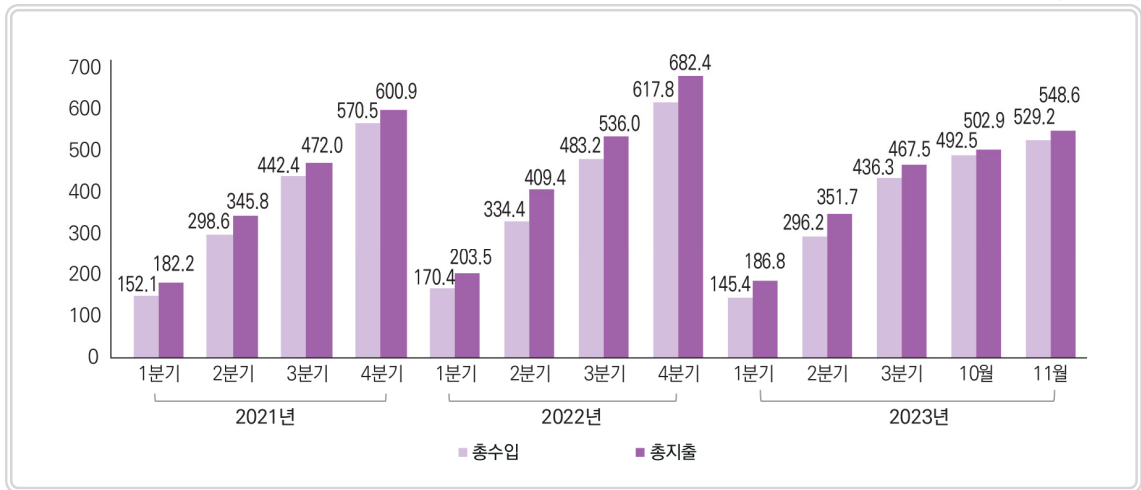
자료: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고은비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9)

## 총수입·총지출(분기별·월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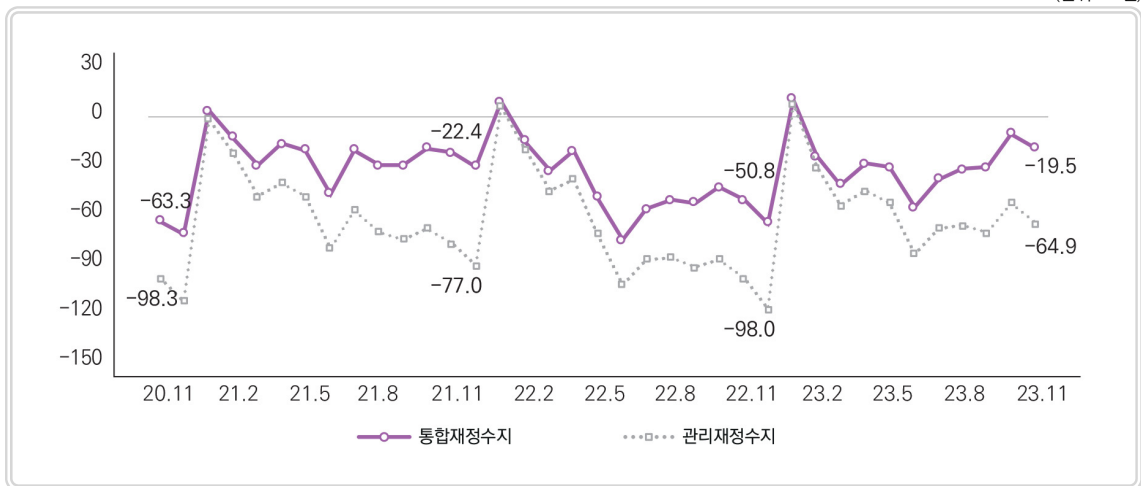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재정수지(월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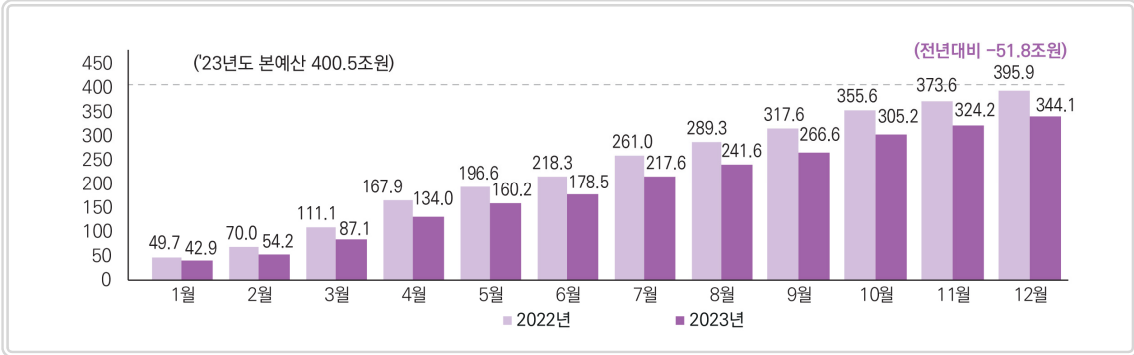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세 실적(월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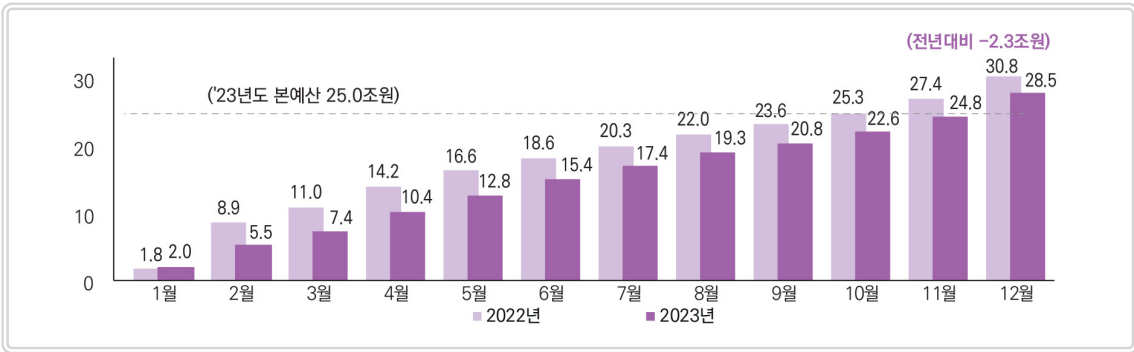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세외수입 실적(월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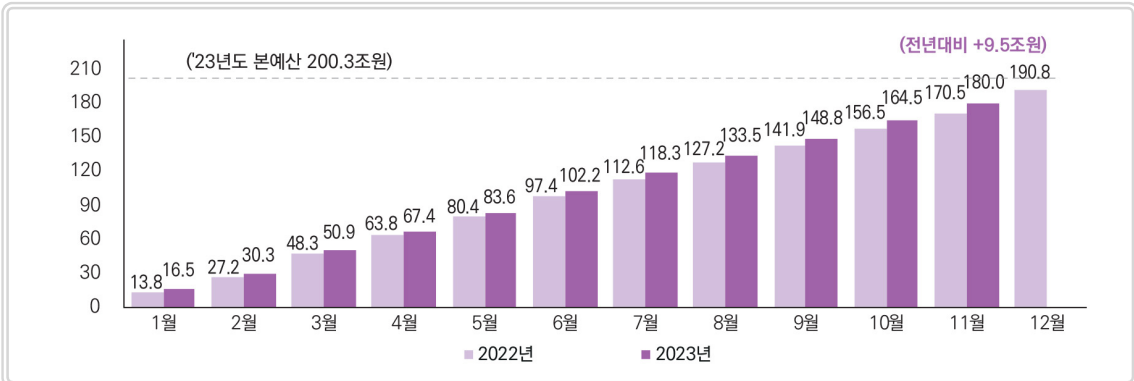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금수입 실적(월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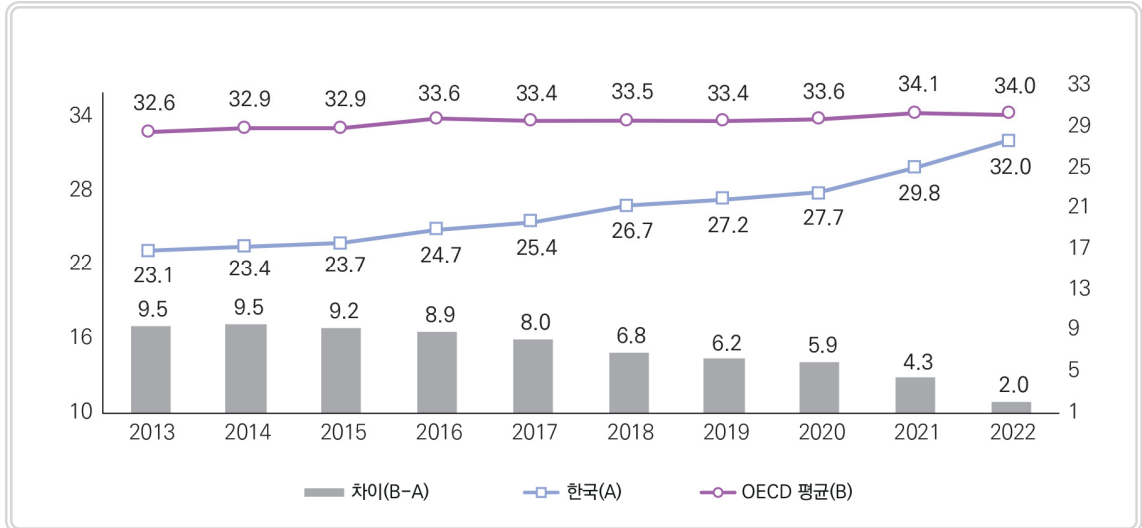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민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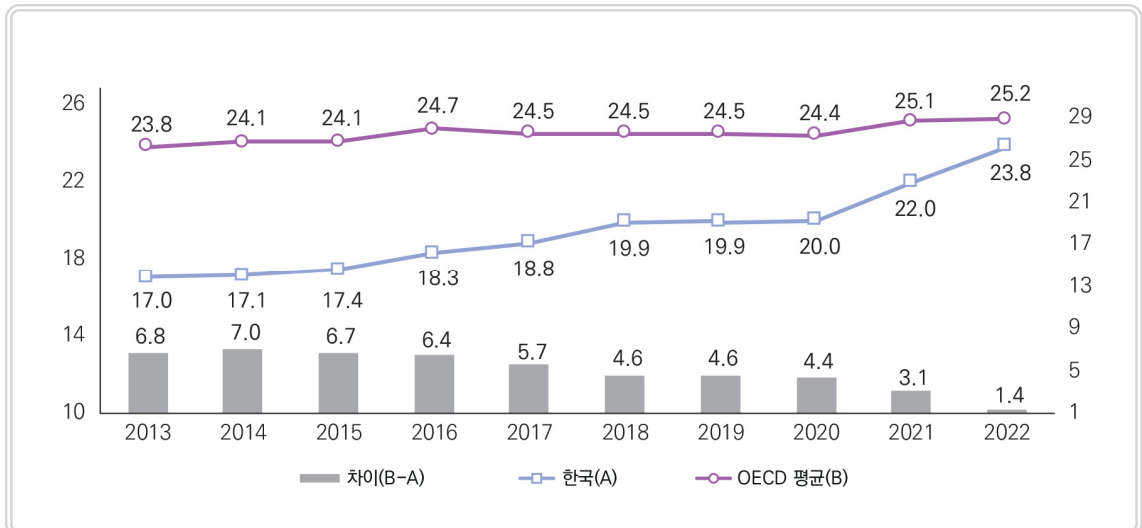
(단위: %)



주: 1) 국민부담률은 명목GDP 대비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합 의 비율  
 2)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한국은행의 확정(2021년)·잠정(2022년) GDP를 반영하여 계산  
 3)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국 기준이며, 2022년 미발표국가(호주, 일본)의 경우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조세부담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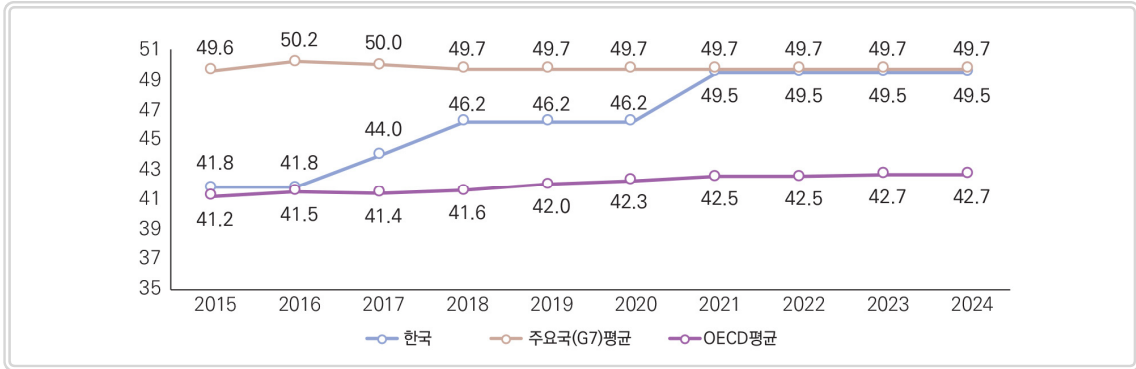


주: 1) 조세부담률은 명목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  
 2)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한국은행의 확정(2021년)·잠정(2022년) GDP를 반영하여 계산  
 3)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국 기준이며, 2022년 미발표국가(호주, 일본)의 경우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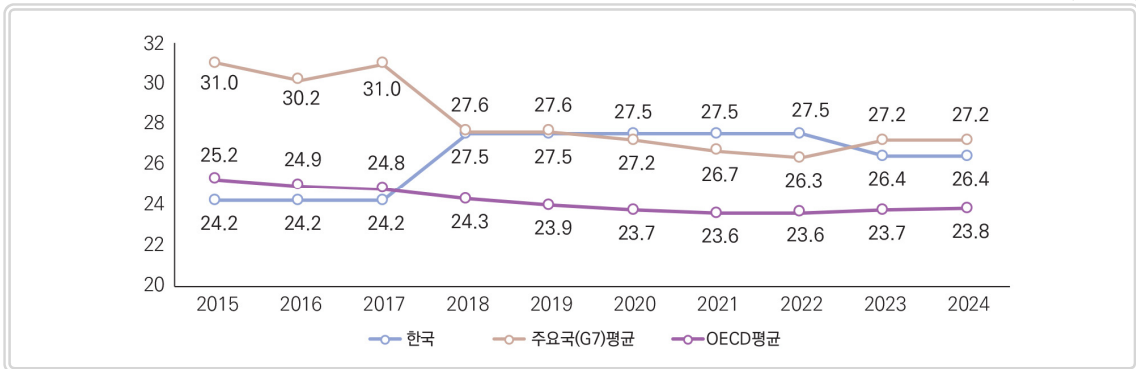
소득세율(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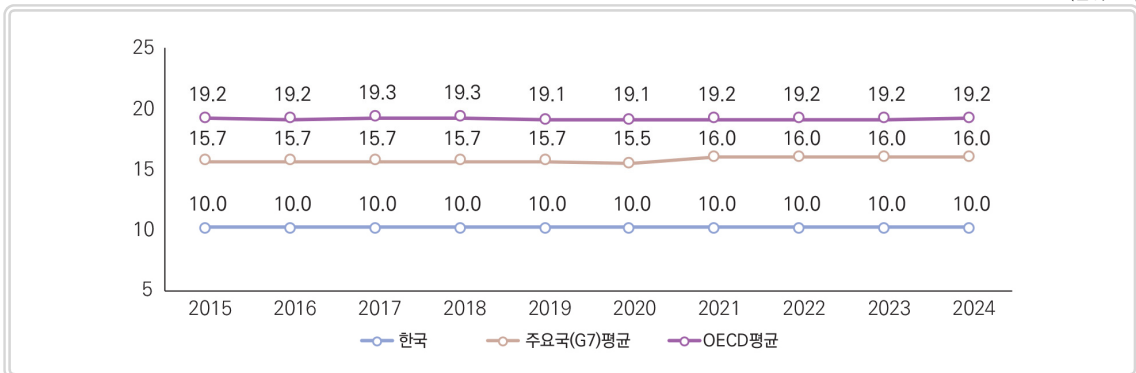
법인세율(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기준)

(단위: %)



부가가치세율(지방세 포함, 표준세율 기준)

(단위: %)



주: 1) 각 세율의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국 기준  
 2)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최고명목세율 기준이며, 지방세(지방소득세) 포함  
 3)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 기준(미국의 판매세는 제외)이며, 지방세(지방소비세) 포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및 IBFD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nabO Fiscal Estimates & Tax Issues

## 재정추계&세제 이슈

---

발행일 2024년 3월 29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유월애(02-859-2278)

---

ISSN 2799-9408

발간등록번호 31-9700489-001941-08

© 국회예산정책처, 2024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http://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89-001941-08

ISSN 2799-9408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